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김은설·강은진·김근진·김대욱·신나리·윤소정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 저 자

김은설, 강은진, 김근진, 김대욱, 신나리, 윤소정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대 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신 나 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 소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04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02-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84-8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우리 사회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보다 일관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교원은 영유아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유보 통합 정책에 발맞추어 영유아 교사 양성 체계의 재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결과물이다. 특히, 학과 개편 방안, 필요 영유아 교사 수 추계, 양성 기관 승인 기준의 정립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정책적·제도적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제언이 담겨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와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유·보 교사를 양성하는 다양한 기관의 대표 단체 및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견해가 표현되고 수합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고려되고 최적의 결과를 제시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분석과 제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기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게 변화되는 체제를 분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며 힘써주신 연구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 결과가 앞으로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 목차

요약	1
<b>I. 서론</b>	<b>13</b>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5
3. 연구 방법	16
<b>II. 연구 배경</b>	<b>23</b>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3
2.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제도 및 현황	26
3. 영유아 교사 양성 기관 현황	31
<b>III.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의견 분석</b>	<b>35</b>
1.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35
2. 양성기관 관계자 집단 면담	38
3. 양성기관 관계자 의견 조사 결과	41
<b>IV.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b>	<b>57</b>
1. 학과 명칭	57
2. 수업연한	59
3.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시 고려 사항	63
4. 학과 개편 실행을 위한 제안	66
<b>V. 영유아교원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b>	<b>73</b>
1. 분석 방향	73
2.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2031)	77
3.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 (2031)	107
4. 영유아교사 수급 예측에 따른 관리방안	118

---

<b>VI.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의 개선</b>	<b>125</b>
1.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현황 .....	125
2.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	136
3. 통합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슈, 쟁점) .....	143
4. 영유아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	150
<b>VII.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b>	<b>159</b>
1. 전문대 영유아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 특례 조항 신설 .....	159
2. 학사학위 운영 및 (가칭)영유아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	176
<b>참고문헌</b> .....	<b>183</b>
<b>부록</b> .....	<b>189</b>
부록 1.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개편 관련 설문 조사 문항 .....	189
부록 2. 영유아 교사 양성 기관 현황(2024년 기준) .....	194

---





## 표 목차

〈표 Ⅰ-3-1〉 양성기관 관계자 면담 .....	17
〈표 Ⅰ-3-2〉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개최 일정 및 참석자 .....	17
〈표 Ⅰ-3-3〉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18
〈표 Ⅰ-3-4〉 연구 내용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내역 .....	19
〈표 Ⅱ-2-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현황(2022년) .....	27
〈표 Ⅱ-2-2〉 2022년 전국 유치원 교원양성기관 학교 수 및 정원(연간) .....	27
〈표 Ⅱ-2-3〉 2022년 전국 보육교사 자격 신규 취득 현황 .....	29
〈표 Ⅱ-2-4〉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현황(2023년) .....	29
〈표 Ⅱ-2-5〉 연도별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취득자 현황 .....	30
〈표 Ⅱ-3-1〉 2023년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기관 현황 .....	31
〈표 Ⅲ-3-1〉 조사 참여자 특성 .....	41
〈표 Ⅲ-3-2〉 양성 방식 및 정원 .....	42
〈표 Ⅲ-3-3〉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 유형 .....	43
〈표 Ⅲ-3-4〉 교직과목 담당자 .....	44
〈표 Ⅲ-3-5〉 (전문대) 4년제 학과로 전환 여부 .....	45
〈표 Ⅲ-3-6〉 (현재 보육교사양성 학과만 있는 경우) 영유아교육과로 학과 개편 의향 여부 .....	45
〈표 Ⅲ-3-7〉 (현재 보육교사양성 학과만 있는 경우) 영유아교육과 미개편 시 현 보육교사 양성 학과 운영 계획 .....	46
〈표 Ⅲ-3-8〉 (보육교사양성과만 있는 경우) 신규 양성 학과로 개편 시 교직과목 설치 조건 대응 방안 (복수 응답) .....	47
〈표 Ⅲ-3-9〉 (보육교사양성과와 유치원교사 양성과 병존 시) 통합하여 일원화 개편 의향 .....	48
〈표 Ⅲ-3-10〉 (보육교사양성 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 병존한 경우) 영유아교육과 미개편시 운영 계획 .....	49
〈표 Ⅲ-3-11〉 (보육교사양성 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가 병존한 경우) 영유아교육과로 통합 개편 시 정원 .....	50
〈표 Ⅲ-3-12〉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담당 교사 양성 학과 명칭 “영유아교육(학)과”	51
〈표 Ⅲ-3-13〉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의 자유전공제 운영에 대한 의견 .....	52
〈표 Ⅳ-1-1〉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 교사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기관(복수응답)	59
〈표 Ⅴ-2-1〉 영유아 인구수: 0세 .....	78

---

〈표 V-2-2〉 영유아 인구수: 1세 .....	79
〈표 V-2-3〉 영유아 인구수: 2세 .....	80
〈표 V-2-4〉 영유아 인구수: 3세 .....	81
〈표 V-2-5〉 영유아 인구수: 4세 .....	82
〈표 V-2-6〉 영유아 인구수: 5세 .....	83
〈표 V-2-7〉 영유아 인구수: 6세 .....	84
〈표 V-2-8〉 영유아 취원율: 0세반 .....	85
〈표 V-2-9〉 영유아 취원율: 1세반 .....	86
〈표 V-2-10〉 영유아 취원율: 2세반 .....	87
〈표 V-2-11〉 영유아 취원율: 3세반 .....	88
〈표 V-2-12〉 영유아 취원율: 4세반 .....	89
〈표 V-2-13〉 영유아 취원율: 5세반 .....	90
〈표 V-2-14〉 영유아 취원율: 2031년 .....	91
〈표 V-2-15〉 취원 영유아수: 2031년 .....	92
〈표 V-2-16〉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2031년 .....	93
〈표 V-2-17〉 통합기관 연장교사수: 2031년 .....	94
〈표 V-2-18〉 통합기관 보조교사수: 2031년 .....	95
〈표 V-2-19〉 어린이집 돌봄교사수 및 비율 .....	96
〈표 V-2-20〉 통합기관 돌봄교사수 및 비율: 2031년 .....	98
〈표 V-2-21〉 통합기관 교사 수요 규모: 2031년 .....	99
〈표 V-2-22〉 유치원 교사수 .....	100
〈표 V-2-23〉 어린이집 보육교사수 .....	101
〈표 V-2-24〉 국공립유치원 신임교사수 .....	102
〈표 V-2-25〉 사립유치원 신임교사수 .....	103
〈표 V-2-26〉 어린이집 신임교사수 .....	104
〈표 V-2-27〉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임교사 비율 .....	105
〈표 V-2-28〉 통합기관 신임교사 수요 규모: 2031년 .....	106
〈표 V-3-1〉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	108
〈표 V-3-2〉 4년제 사범대학·일반대학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	109
〈표 V-3-3〉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	110
〈표 V-3-4〉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	112
〈표 V-3-5〉 신임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 1: 2031년 .....	113
〈표 V-3-6〉 전문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보육교사 배출 규모 .....	115

---

---

〈표 V-3-7〉 4년제 일반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보육교사 배출 규모	116
〈표 V-3-8〉 신임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 2: 2031년	117
〈표 V-4-1〉 신입교사 수요 및 공급: 2031년	119
〈표 VI-1-1〉 5주기 교원양성 지표 총괄표	131
〈표 VI-1-2〉 6주기 교원양성 지표 총괄표	133
〈표 VI-2-1〉 4주기 1차년도 신규평가 결과	137
〈표 VI-2-2〉 2015년 평가대상 기관 교원양성 정원 감축현황	137
〈표 VI-2-3〉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138
〈표 VI-2-4〉 2016년 평가대상 기관 교원양성 정원 감축현황	138
〈표 VI-2-5〉 2017년 교원양성기관평가 평가결과	139
〈표 VI-2-6〉 2017년 평가대상기관 교원양성정원 감축 예상 인원	139
〈표 VI-2-7〉 5주기 2·3차 연도 역량진단 결과	140
〈표 VI-2-8〉 5주기 4차 연도(2021년) 역량진단 결과	141
〈표 VI-2-9〉 5주기(2018~202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정원감축 총괄 현황	142
〈표 VI-2-10〉 교원양성기관 현황 및 정원	142
〈표 VI-2-11〉 최근 3년 간 교원자격증 발급 건수	143
〈표 VI-3-1〉 6주기 교원양성 지표에 대한 의견	144
〈표 VI-3-2〉 대학 유형별 사전인정 방식에 대한 전문가 제안	149
〈표 VI-4-1〉 6주기 평가 일정 및 학과승인 일정	150
〈표 VI-4-2〉 6주기 평가지표 중 교직원 관련 지표	152
〈표 VI-4-3〉 영유아교원을 위한 교직이론 과목 제안	152
〈표 VI-4-4〉 6주기 평가지표 중 산정기준 학생 수	153
〈표 VI-4-5〉 6주기 교원양성 지표 중 사전승인 지표	155
〈표 VII-1-1〉 고등교육법상 (가칭)영유아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159
〈표 VII-1-2〉 교원자격 관련 유아교육법 규정	161
〈표 VII-1-3〉 무시험검정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규정	162
〈표 VII-1-4〉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163
〈표 VII-1-5〉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65
〈표 VII-1-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65
〈표 VII-1-7〉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166

---

---

〈표 VII-1-8〉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	169
〈표 VII-1-9〉 보육교사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규정 .....	169
〈표 VII-1-1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	172
〈표 VII-1-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12조제1항 관련) .....	175
〈표 VII-2-1〉 학점교류 관련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177
〈표 VII-2-2〉 심화과정 관련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179
〈표 VII-2-3〉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 (제58조의2제1항 관련) .....	180

---



## 그림 목차

[그림 II-1-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5대 과제의 현황과 시안 .....	24
[그림 II-1-2]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유보통합 영유아교원 양성 개편 안	26
[그림 V-2-1]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예측 방법 .....	77
[그림 VI-1-1] 수업운영 적정 규모 강좌비율(5주기 지표) .....	131



## 부록 표 목차

〈부표 1〉 유치원 교사 양성 전문대학 .....	194
〈부표 2〉 유치원 교사 양성 4년제 대학 .....	195
〈부표 3〉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대학원 .....	196
〈부표 4〉 보육교사 양성 4년제 대학 .....	197
〈부표 5〉 보육교사 양성 전문대학 .....	198

## 1. 서론

### 가. 연구 목적

-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기관 개편에 관한 총괄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여,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교원 양성 요구에 부응하여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 학과의 4년제 또는 학기 연장 등 개편 방안, 학과의 통합, 양성 정원 책정 방안 등 ‘영유아교원 양성교육 학과’로의 개편을 위한 관련 이슈를 본 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논의함.

### 나. 연구 내용

- 역량있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 학과 개편 방안 개발
- 학과 개편에 따른 영유아교사 양성의 정원을 추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보통합에 따라 개편되는 학과 및 대학에 대해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위한 평가 방안 제안
- 유보통합에 따른 양성 과정 학과 개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방법
  - 기존 유보 교사 양성 관련 통계, 영유아 인구 추계 통계,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방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토
- 관련자 면담 의견 조사
  - 유치원 교사 양성 기관 및 보육교사 양성 기관의 교수 대상 면담 진행
- 교사 양성 기관 대표 협의회 대상 간담회 진행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의 외부 공동연구진으로 활용

## 2. 연구 배경

### 가. 유보통합 정책: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 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예: 영유아교육전공)로 하고 신규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할 예정이며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을 꾀하고자 함.
- 원장 자격을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서 부여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는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교사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출 것, 사이버 대학 등 기존 보육교사 양성 기관으로 역할을 해오던 기관을 더 이상은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통합교원 자격 부여는 대면중심 학교만으로 한정할 것, 학과는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명칭 일원화할 것 등으로 정리가 가능함,
  - 모든 양성기관이 4년제 학사학위 수여 기관으로 변경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 대면중심 학과 또는 전공(기존 비사범계 보육교사 양성 학과에 대해 통합교원 자격 부여 방안)제로 교사를 양성할 때의 문제와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필요함

### 나.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제도

- 유치원교사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신규로 처음 취득하게 되는 유치원교사는 정교사 2급으로, 이는 대학에 설치된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여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라 보육교사 3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1급→원장으로 구분되며,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됨.
-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부여되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도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보육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의 양성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대면교육 양성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총 150개교에서 보육교사자격 양성학과가 개설되어 있음.

### 3.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의견 분석

#### 가.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 영유아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연합 협의체 대표 교수 총 8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 참여 단체는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보육교사양성전문대교수 등임.
- 양성과정 수업연한 4년 확장 관련, 대부분 4년제 변경에 동의함. 전문대의 경우 기존 졸업생에 대해 유예기간 배려 필요. 심화과정 1년 이수 제공.
- 비대면 교육기관의 교원 양성기관 제외 관련, 비대면 기관 배제에 동의하나 소수에 대해 양성인원 제한을 두고 인정 가능.

- 학과제 및 학과 명칭 관련, 전공 학과 하나로 통합 동의
  - 4년제 유아교육과 단체는 관련 학과 10%는 더 이상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4년제 보육학과 10% 관련학과 자격부여 비율은 상향조정 필요 요구
- 양성기관 평가와 승인 방식 관련, 4년제 유아교육과는 현재 교원양성과에서 받는 기관 평가 방식 계속 유지 필요 및 초중등과 같은 평가 틀 유지 필요 의견
  - 4년제 보육과는 전문대 양성기관 평가 기준과 4년제 평가 기준은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일원화할 필요 의견

#### 나. 양성기관 관계자 표적집단 면담

- 전문대 유아교육과, 사범대가 있는 4년제 아동학과, 사범대가 없는 4년제 보육학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수 각 1명 참석하여, 교원 양성기관 평가 관련 쟁점 논의함.
- 비사범계 보육/아동학 전공학과 교원 자격 부여 비율, 양성기관 평가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현행 10%보다 자격 부여 비율을 늘어야 함. (30명 정원 학과에서) 10명 이상은 교원 자격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과목 개설, 수업 운영이 됨. 50%까지 자격 부여 필요. 이전 보육교사 배출 수만큼은 양성되어야 함.
  - 전문대 유아교육과: 입학 경쟁률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50% 허용 반대. 해당 대학은 향후 보육과와 유아교육과 통합하지 않을 예정. 정원충족 어려움.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전환으로 인한 정원 조정 문제는, 교사 수급 문제, 전문대 졸업생의 현장 취업 현황 등 고려하여 입학정원 축소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교직과정 담당 교수의 전공 일치도 관련 유아교육에 적절한 내용의 교직과정 개설.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직과목 필요

#### 다. 양성기관 관계자 의견 조사 결과

- 모집단인 376개 학교 중 137개 학교가 설문에 응하였으며, 대학유형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이 82개로 59.9%, 전문대가 55개 40.1%로 조사에 참여하였고 국공립대는 16개로 11.7%, 사립대가 121개 학교 88.3%인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양성 정원을 조사함. 평균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의 경우 4년제 대학 보육/아동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32.8명을 양성하고 관련 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7.7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 학과 당 평균 53.5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보고함.
-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 사범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사례는 18%,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있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음. 이는 전문대가 포함되어 나온 결과로, 4년제 대학만 고려하면 일반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있는 경우가 52.5%, 사범대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경우는 32.8%임.
-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경우 교직을 담당하는 교수가 어떠한 직위에 있는지를 살펴봄. 과반이 넘는 다수(64.6%)가 학과 내에 교직을 담당하는 전임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대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남.
- 전문대학의 경우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 자격이 학사 학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70%가 전환할 것이라고 답함.
-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만 있는 대학의 경우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학과를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봄. 해당 사례수는 24개였으며, 이 중 54.2%는 개편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33.3%는 개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보임.
-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개편하기 않겠다는 의향을 보인 8개 대학의 경우 희망하는 방식은 62.5%(5개 대학)가 소수인원을 교직이수를 통해 통합교사로 양성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고 특히 4년제 대학은 7개대 중 5개 대에서 교직 운영을 희망함.
-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만 있는 대학의 경우 이를 통합교사 양성 학과로 개편했을 때 교직과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양성 기관으로 승인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라는 질문에서, 84.6%가 교내의 관련 전공교수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4.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

### 가. 학과 명칭의 개편: “영유아교육과”

- 통합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과로 제안함. 영유아교육과는 0~5세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봄하는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임.
- 영유아교육과는 모든 정원에 통합 영유아교사자격증을 부여함. 향후 7주기 이후 교원양성역량진단에서 영유아교사 배출의 적정 규모를 관리할 수 있음.
-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할 학과는 현재 유아교육(학)과와 보육교사 양성 학과로 함. 전환 대상 보육교사 양성 학과는 해당 학과 교원의 세부전공이 영유아교육 전공 절반 이상, 그리고 학과를 전환할 의향이 있는 학과로 함.
- 아동관련학과의 영유아교직이수 운영을 검토함. 현재, 아동관련학과는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희망 학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유치원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는 경우에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음. 현재 아동관련학과에서 정원의 10%에 유치원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은 일반대학 교직과정임. 앞으로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일반대학 교직과정인 영유아교직이수에서 배출하는 영유아교사 규모가 달라지게 됨.

### 나. 수업연한

-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수업연한은 모두 4년임. 4년제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수업연한 조정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음. 영유아교육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일반대학 교직과정)의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2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 특별편입과정으로 3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과목을 고려하여 4년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교육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의 학과 교육과정은 개발된 통합 학과 교육과정을 따름.
-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수업연한은 2~3년임. 2024년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수업연한은 모두 4년 이상으로 상향됨. 이에 따라 2~3년제 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상

향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문대 영유아교육학과에서 신설될 교직과정은 인근 대학의 교직과목을 학점 교류형태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직부나 교직과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다. 영유아교원 추계에 따른 증원

- 실행계획안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0세 1:2, 3~5세 유아반 현원을 1:8로 낮추고, 누리과정 운영시간 4~5시간을 모든 설립유형에 적용시키고 연장교사의 시간을 늘려 확충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영유아교사가 필요하다. 교사 수급은 국가적 과제이며 필요한 만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원양성과정에 따라 현직교사 자격 전환교육을 실시함. 2027년 영유아 교육(학)과 개설과 함께 특별편입과정을 운영하여 2029년부터 영유아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5. 영유아교원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 2027년 시행 예정인 통합학과에서 양성되는 통합기관의 영유아교사(이하 영유아교사)의 자격 취득 시점은 2031년으로, 이때는 기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교사로 자격을 변경하거나 여러 이유로 기존의 자격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교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심화되는 저출생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보통합의 시안 중 교사 양성 및 자격 관련 계획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일별 운영모델 등 교사 배치와 관련한 주요 계획을 조건으로 하여 2031년 이후의 채용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교사 양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임.
- 2031년 신입교사의 수요를 통합기관의 담임교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6,479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연도 양성기관을 졸업하여 배출되는 신입 영유아교사의 수는 약 7,896명으로 예상되어, 18,583명 정도의 신입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됨. 지역별로는 영유아 및 아동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약 7천명의 교사가 부족하였으며, 서울은 2.6천명, 인천과 경남 또한 1천명 이상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 전북과 제주의 경우 부족한 신입교사의

규모가 300명 내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요 규모가 작음.

- 2031년 신입교사의 수요를 통합기관의 담임교사 및 연장교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입교사의 수요는 52,957명으로 부족한 신입교사 수는 45,061명으로 추정됨.
- 2031년 통합기관의 교사수는 출생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 배치기준의 개선으로 인해 현재의 교사수를 초과할 수 있음. 2031년에 배출될 영유아교사의 공급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더욱이 전문대학과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양성학과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의 모든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영유아교사 양성학과로 전환할 것 인지도 불분명하므로, 2031년의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영유아교사 배출이 통합 기관에서의 교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존 교사의 영유아교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안에서 제시하는 교사 처우 개선 계획을 신속히 현실화함으로써 현직 교사의 퇴직 비율을 낮추고 전체 교사 수 대비 신입 교사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됨.
-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교사의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영유아교사의 수급 불균형은 대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히 두드러짐. 따라서 교사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경우 시안에서 제시한 교사 배치 기준을 타 지역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6.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의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기관평가는 초중고등학교가 동일한 지표로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평가받는 체제임. 그러다보니 교내 사범대 여부가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주관 부서, 평가지표, 평가환류 등에 대한 논의가 후속되어야 함. 교원양성기관평가는 기존대로 교원양성연수과가 담당함으로써 초중등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거나, 대학 내 사범대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에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지 않았던 아동관련학과의 영유아교육학과로 신설될 경우 기관평가를 위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함도 큰 관건임.

- 기존 교직과정을 폐지하고 신규분야로 전환하는 경우 교직과정의 승인을 입학 적원의 30% 내 운영으로 허용해 제한적으로 신설을 승인함을 밝히고 있음. 이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로 정원이 10%만 평가받는 아동관련학과의 경우 교사자격통합 양성학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보육교사양성인원만큼의 인원을 승인해 주어 수업운영에 필요한 학생수가 확보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대해, 50%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안도 있었으나, 이와 반대로 전문대학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교 입시경쟁률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함.
-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사양성방안에서는 4년제와 함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교사 외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원격교육을 통해 양성된 바가 없으므로,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인 방송통신대학교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사이버대학교에 신규교원양성인원 승인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 5주기 전문대학 평가지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수업운영의 적절성과 전임교원확보율의 기준 인원이 타 대학(25명 기준)과 다르게 300명을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6주기 지표를 기준으로 질 높은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여 사전 평가인정(가/부)을 한 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음.
- 6주기 평가의 경우 신설, 또는 전환인 경우 평가를 유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승인 후 3년간의 시행을 통해 영유아보육학과에 맞게 정비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영유아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7.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

- 영유아 교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학과 개편 방향은 영유아 교사 양성은 학사 학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임.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육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 영유아교원 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함. 이는 (가칭)영유아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 및 학위

에 관한 특례임.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50조의5(영유아교원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 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유치원 정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유아교육과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아동 또는 보육관련 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명칭을 단일화함. 기존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통합됨.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의 교원 자격 규정은 (가칭)영유아교육법의 교원 자격 규정으로 개정됨.

- 유아교육법 제26조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은 「교원자격검정령」을 말함.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도 「유아교육법」은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개정된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준교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서는 폐지함.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에서는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함.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되고, 영유아교사 자격이 일원화되면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것임.



# I

## 서론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이원화 되어 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즉 유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3-5세 유아의 교육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0-5세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서비스 기관인 어린이집이 맡아오던 이원적 제도를 하나의 부처인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보육으로 올라서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위해 2023년 7월에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동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일원화의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갖추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07.28; 한국교육신문, 2023.12.10).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1단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이후 유보통합의 2단계에서 지방 단위에서 지자체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유보의 관리체계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계획을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23. 07. 28). 또한 2024년 6월에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향후 유보통합에서 이루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06.27).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크게 3개 영역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향평준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리체제 개선 등 3개 주제 과제이다. 각각의 과제 영역은 해당하는 과제를 3~5개씩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통합적 입학방식 마련 및 교사 자격·양성, 처우 개선, 교육과정 개발 및 설립·운영 기준 마련 등 5대 과제가 속해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통합과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 교사 제도, 교육과정,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통합된 교사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에 따른 양성과정의 정비가

가장 우선 필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의 가장 핵심 사안 중 하나라 할, 유보통합 기관에서 근무할 자격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정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에 속하는 직업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1년제 단기교육기관, 2,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학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특정 전공 학과의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필요한 교육을 일정 시간 동안 받고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복지 분야 종사자 국가자격 부여 방식이었다. 이에 비해 유아교육 분야의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또는 교직이수 유아교육전공 과정을 거치고 유치초등학교 교사와 동일선 상의 교육체제 내 교육부 발행 ‘교원’ 자격을 가진 직업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 소속으로 통합되면서 두 가지 직업 모두 이제는 하나의 자격으로 수렴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육부 자격인 ‘교원’으로 일원화될 것이다. 또한 영아와 유아 즉,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명칭 또한 재정립 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영유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보면, 통합 영유아교원 자격양성 개편의 방향은 영유아정교사이든 영아정교사/유아정교사로 구분하든 간에 통합교원 자격을 마련하는 것이고, 통합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요구, 대면 중심 학과 및 전공제(주.비사법계)로 양성 과정 운영,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의 개편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운영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근거에서 확인해내고 유보통합 교사 양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의 학과 개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학과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성 규모의 변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등으로 인적 환경이 한층 높아진 통합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 수의 증가가 어느 정도의 수급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유보통합 이후 통합자격을 가진 교사의 양성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측면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개편되어야 할지에 대해 적절한 모델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로 되는 통합교원 양성의 규모를 예측하여 유보통합 이후 2027년부터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교원의 수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즉, 양성 학과의 개편 방안에 따라 지역별 필요한 학과 정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사 양성 학과를 가진 전국의 각 대학은 2027년부터 해당 학과 신입생 정원을 확정, 예고해야 하므로 연구 결과가 대학 학생 모집 등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학과 개편의 과정에서 영유아교원 교육을 책임지는 각 대학이 양성 기관으로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관 평가 방법과 적용 방안 또한 교원 양성에서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는 이와 같은 평가의 측면도 포함되어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기관 개편에 관한 총괄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교원 양성 요구에 부응하여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 학과의 4년제 또는 학기 연장 등 개편 방안, 학과의 통합, 양성 정원 책정 방안 등 ‘영유아교원 양성교육 학과’로의 개편을 위한 관련 이슈를 본 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역량있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 학과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2, 3년제 전문대의 유아교육 및 교육 관련 학과의 수업 연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4년제를 포함한 유아교육과, 보육과, 아동학과 등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관련 학과를 개편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등의 주제를 비롯해서,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명칭의 개발, 대면 학과 중심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둘째, 학과 개편에 따른 영유아교사 양성의 정원을 추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과 개편의 결과 신규 학과 개설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 학과의 폐쇄 및 통합, 학교 방침에 따른 정원의 조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교사 자격자 배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변화로 인한 교사 채용 수요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통계적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필요로 되는 영유아 교사 수, 양성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교사 양성 정원을 추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양성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유보통합에 따라 개편되는 학과 및 대학에 대해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양성 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아오던 대학도 있겠지만 신규로 대상이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평가 방식의 적용 가능성, 신규 평가 방식의 개발, 양성 기관으로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유보통합에 따른 양성 과정 학과 개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교사 양성과 관련한 기존 법령을 검토하고 유보통합 교사 양성과 학과 개편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도출하여 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 방법이다.

양성교육기관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편 모델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기존 유보 교사 양성 관련 통계, 영유아 인구 추계 통계,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방식에 따른 교사 수요 예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 양성 교원 자격자 수를 추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자료 검토,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결과 도출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둘째, 관련자 면담 조사이다.

영유아 교원 양성 관련학과 교수 등 교직원, 대학 운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대학 현장의 향후의 대응 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주로 기존의 유치원 교사 양성 기관 및 보육교사 양성 기관의 교수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I-3-1〉 양성기관 관계자 면담

일정	참석 전문가	주요 내용
2024. 7. 23.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 4년제 보육학과 교수, 4년제 아동학과 교수, 교육대학원 교수	양성기관 평가 방식 및 지표 개편 방안

셋째, 교사 양성 기관 대표 협의회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지역, 학교 유형, 다양한 학과를 고려하여 타당한 양성 기관 개편 방안 제시를 하기 위해, 4년제 및 전문대 유치원 교사 양성 기관 대표 단체, 4년제 및 전문대 보육교사 양성 기관 대표 단체 또는 기관 대표<sup>1)</sup>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따른 양성 기관 개편의 방식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대표 단체를 통해 각 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한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I-3-2〉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개최 일정 및 참석자

일정	참석 전문가	주요 내용
2024. 6. 17	4년제/전문대 유치원교사 양성기관 협의회 4년제/전문대 보육교사 양성기관 협의회 대표 각 2인씩 총 8인 참석	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 관련 각 협의회 의견 개진
2024. 8. 20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보육교사 양성 사이버 대학 단체의 유보통합 대응 의견 청취
2024. 9. 25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현 보육교사 양성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의견 청취

주) 2024. 8. 한국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의견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함.

넷째, 영유아 교사 양성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 전공, 학부 등 관련 학과 학과장, 전임교수 등 학교 대표자 1인을 대상으로, 현재 학과 운영 현황, 학과 개편 계획, 교직원 운영 방안, 통합 학과의 명칭, 자유전공제 도입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1)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공식적 단체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중 배출 교사자격자 수가 최대인 기관 중 참석이 가능한 학교를 섭외하여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였다.

조사는 2024년 10월 2~3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전체 대상이 되는 교사 양성 대학 376개교 중 137개가 조사에 참여하여 36.4%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위해 각 학교의 교무처에 조사 URL이 제시된 공문을 보내고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에 전달하여 교사 1명씩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조사 문항은 본 보고서 부록2에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선행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과정 및 방법, 양성 규모 산출, 기관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으로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 실행할 교육부 영유아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 진행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표 I-3-3〉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차수	일정	참석자	주요 내용
1	2024. 5. 9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정책과	통합영유아교원 양성 관련 정부 계획 청취
2	2024. 5. 28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정책과	연구 계획 발표, 진행 관련 정부 의견 수렴
3	2024. 7. 12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및 전문가 7인 (교원양성 관련 대학 교수) <sup>주)</sup>	교원 수요 예측 방법 등 논의
4	2024. 8. 1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및 전문가 5인	교원 수요 결과 및 개편 방안 논의
5	2024. 8. 29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및 전문가 6인	교원 양성 개편 방안 논의
6	2024. 9. 26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담당자 및 전문가 5인	교원 양성 개편 방안 및 수급 추계 관련 논의

주: 전문가는 교육부 유보통합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및 관련 연구용역 참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참석함.

여섯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결과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일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교원 양성 대학 운영자,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자 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총 4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영유아 교원 양성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2, 3, 4차는 전문가, 원장,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토록 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표 I-3-4〉 연구 내용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내역

차수	일정	장소	참석자
1차	2024. 10. 17	서울스퀘어	-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토론 패널 6인 - 교육부, 전문가 5인
2차	2024. 11. 12	경상권(경북대학교)	- 토론자 7명 및 해당분야 자유 참석자 150여명
3차	2024. 11. 15	호남권(동신대학교)	- 토론자 7명 및 해당분야 자유 참석자 200여명
4차	2024. 11. 20	충청권(한국교원대학교)	- 토론자 7명 및 해당분야 자유 참석자 200여명

주) 2, 3, 4차 토론회는 교육부 주관 교원양성 개편 관련 타 연구과제와 공동 발제로 개최됨.

일곱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의 외부 공동연구진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대학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1인씩을 전문가 공동연구진으로 포함하여, 각 영역의 대학 집단 의견을 대표적으로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갖고자 하며, 양성기관 개편 및 자격자 양성 규모 추계에 전문적 역량을 반영함으로써 연구 보고서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II

## 연구 배경

- 0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 02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제도 및 현황
- 03 영유아 교사 양성 기관 현황



## II. 연구 배경

###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sup>2)</sup>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교원의 양성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하여 제시한 실행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24년 6월 27일에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통합 영유아교원의 자격·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전략에서는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어진 목표 하에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및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상향평준화 과제에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상향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개선 계획을 제시하였다.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에서는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와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으며,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는 입학방식의 개선,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 교사 관련 내용과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 등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실행할 때 요구되는 요소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다루고 있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통합기준을 확정하며, 기존 기관에는 경과기간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 전체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2) 교육부(2024. 06.27). 보도자료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의 내용을 포괄 인용하여 제시함.

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 일괄 부여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을 보면 통합기관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확정을 2024년에 진행하고 2025년에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이후 세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5대 과제의 현황과 시안

과제	현재	시안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통해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 모집, 점수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 통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li> <li>- 우선모집·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li> </ul> </li> </ul>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교사) 3~5세, 전문대학 이상 (보육교사) 0~5세,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 학습기관 등 학점 이수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원자격) 1안 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정교사-유아정교사로 구분</li> <li>✓ (신규양성)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li> <li>✓ (현직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과정 운영</li> </ul>
교사 처우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전국 동일(월 85만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지역별 상이(월 49~59만원)</li> <li>✓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우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li> <li>✓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li> </ul>
영유아교육 과정개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3~5세 대상, 교육과정 (어린이집) 0~5세 대상, 표준보육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li> </ul>
설립·운영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지자체 및 사인(법인단체, 조합 및 개인 포함)</li> <li>✓ (유치원) 3개 유형 *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 *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li> <li>✓ (유치원) 교사·교직원 소유 의무 (어린이집 민간가정) 임대부채 인정</li> <li>✓ (유치원) 교실 유아 1인당 2.2㎡ (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아당 1인당 2.6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유형(예: 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li> </ul> </li> <li>✓ (유형) 10개의 유형을 5개*로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사립(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li> </ul> </li> <li>✓ (재산요건) 건물·토지 소유, 부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유형(가정형·직장형)에는 임대 제한적 허용, 기존 기관 예외규정 적용</li> </ul> </li> <li>✓ (교실 면적) 교실 영유아 1인당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형에는 기준 완화, 기존 기관은 경과 규정 설정</li> </ul> </li> </ul>

(계속) 설립·운영 기준 마련	✓ (유치원) 내부 벽·천장 (어린이집) 내부 벽·천장·바닥	✓ (불연재사용)내부 벽·천장·바닥 적용 ※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유치원) 모든 유치원 체육장 의무 설치 (어린이집) 정원 50명 이상 기관 의무 설치	✓ (실외놀이터) 모든 통합기관 의무 설치 ※ 일부 기관의 경우, 기존 완화 또는 대체 놀이터 적용
	✓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어린이집) 위험시설과 50M 이상 거리 유지	✓ (입지요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청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 취학 전 (어린이집)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입학대상) 취학전 아동(0~5세) 원칙, 기관 자율 선택으로 연령·학급 운영 가능
	✓ (사립유)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운영 (그외)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무 운영	✓ (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설치 의무
	✓ (유치원) 자체평가, 평가주기 교육청 자율 (어린이집) 3년 주기 의무 평가	✓ (평가·회계) 장학·컨설팅으로 개편, 회계·안전 등은 엄격 관리
	✓ (유치원) 의무 규정 없음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의무	✓ (CCTV)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보통합 실행 계획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 포함된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1안]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2안]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승급체계는 2급→1급→원감→원장의 형태로 통일되게 개편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현행 유치원교사의 승급체계와 다르지 않다.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예. 영유아교육전공)로 하고 신규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할 예정이며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장 자격을 원감 자격 취득 수 3년 이상 경력자에게 부여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입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는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통합기관 원장 자

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실행 계획은 통합교원의 양성과정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하여 다음의 [그림 II-1-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1-2]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유보통합 영유아교원 양성 개편 안

현행		개편(안)
보육 교사	전문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 * 보육교사 3급 양성은 폐지 예정	영유아 교원
유치원 교사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학위) 학사학위 이상①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과개편)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② ※ 비대면·학점제기관은 승급기관으로 운영 검토

-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결과적으로, 교사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출 것, 사이버 대학 등 기존 보육교사 양성 기관으로 역할을 해오던 기관을 더 이상은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통합교원 자격 부여는 대면중심 학교만으로 한정할 것, 학과는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명칭 일원화할 것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양성기관이 4년제 학사학위 수여 기관으로 변경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 대면중심 학과 또는 전공(기존 비사범계 보육교사 양성 학과에 대해 통합교원 자격 부여 방안)제로 교사를 양성할 때의 문제와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이후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제도 및 현황

### 가.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유치원 교원의 자격 기준은 ‘(준교사)→정교사 2급→정교사 1급→(수석교사)→원감→원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현재 양성되지 않는 준교사와 극소수 최고경력자에 해당하는 수석교사는 자격 체계로 보기 어려우므



로, 일반적으로 정교사 2급, 1급, 원장 및 원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고 있는데, 신규로 자격을 처음 취득하게 되는 유치원교사는 정교사 2급으로, 이는 대학에 설치된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승급에 따라 부여되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유치원교사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공대학 등 총 148개교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총 8,925건 발급이 있었다.

〈표 II-2-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현황(2022년)

단위: 건

구분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공대학	계
정교사 2급	2,514	4,818	1,403	39	151	8,92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2022.

그러나 유치원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의 정원을 살펴보면 자격증 발급 현황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II-2-2〉 2022년 전국 유치원 교원양성기관 학교 수 및 정원(연간)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소계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합계	
	수	정원	수	정원	학교 수	정원	수	정원	학교	정원
유아교육 (학과)	69*	2,338	78	4,405	148**	8,633	29	316	177	8,949
	방통대	1,890								

\*교직과정 18개교 64명 포함한 인원

\*\*방송통신대학 포함 학교 수

자료: 김은설 외(202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기준 전국 유아교육(학)과의 교원양성 현황을 정원 규모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전문대 및 한국방송통신대 포함 총 148개교에서 연간 유치원 교사 8,633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29개교 316명을 포함하면 총 8,949명으로 연간 약 9,000명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다(표 III-2-2 참조).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전공과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따르고 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은 72학점이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직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습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나.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라 보육교사 3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1급→원장으로 구분된다. 각 급별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보면,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부여되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도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1급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은 학과제가 아닌, 필수 학점 이수 형태의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확한 양성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보육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의 양성기관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대면교육 양성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총 150개교에서 보육교사자격 양성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보육교사 양성 인원을 자격 취득의 통계를 통해 추계해보면, 2022년 보육교사 2급 자격 신규취득 현황은 24,385건이며 이중 유아교육(학)과에서 취득한 수 8,046건(교육부, 2023)을 제외하면 16,339건이다. 따라서 2022년 보육교사자격 양성학과를 통해 연간 약 16,000여명이 양성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이 인원은 3급 자격자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양성 인원은 이보다 적은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설 외, 2023).

〈표 II-2-3〉 2022년 전국 보육교사 자격 신규 취득 현황

합 계	2급						3급
	소 계	4년제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자격 운영 학교 수	150	59	91				
24,933 (100%)	24,385 (97.8%)	4,379 (17.6%)	8,941 (35.9%)	425 (1.7%)	521 (2.1%)	10,119 (40.6%)	548 (2.2%)

주: '22년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자 수 중 유아교육(학)과를 통해 배출된 수는 8,046건임.  
 자료: 김은설 외(202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급은 총 161,256명이 고, 보육교사 2급은 62,526명이며, 보육교사 3급은 2,037명이었다.

〈표 II-2-4〉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현황(2023년)

단위: 건

구분	어린이집 설립 유형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보육교사 1급	44,795	7,836	3,234	60,542	34,975	432	9,712	161,526
보육교사 2급	17,533	2,985	1,207	21,230	12,882	172	6,517	62,526
보육교사 3급	331	65	33	857	673	4	74	2,037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p234, 237, 240.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보면, 보육교사 2급은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을 통해 양성되며, 보육교사 3급은 보육교사교육원

과정 이수를 통해 양성되는데 자격취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자는 2020년 9월 기준 총 24,413명이었으며, 2·3년제 대학을 통한 자격취득자가 10,6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자는 2020년 9월 기준 총 1,093명(4.5%)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5〉 연도별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취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급					소계	3급 보육교사 교육원	합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2013	6,024 (8.0)	21,743 (28.9)	1,435 (1.9)	2,144 (2.8)	34,400 (45.7)	65,746 (87.3)	9,566 (12.7)	75,312 (100.0)
2014	6,303 (8.0)	19,947 (25.2)	1,455 (1.8)	1,933 (2.4)	41,183 (52.0)	70,821 (89.5)	8,323 (10.5)	79,144 (100.0)
2015	6,255 (12.4)	18,273 (36.1)	1,180 (2.3)	1,520 (3.0)	18,728 (37.0)	45,956 (90.9)	4,613 (9.1)	50,569 (100.0)
2016	6,369 (14.8)	15,053 (34.9)	1,186 (2.7)	1,264 (2.9)	16,617 (38.5)	40,489 (93.9)	2,651 (6.1)	43,140 (100.0)
2017	5,612 (10.9)	14,901 (29.0)	1,122 (2.2)	1,313 (2.6)	26,204 (51.0)	49,152 (95.6)	2,252 (4.4)	51,404 (100.0)
2018	4,615 (15.5)	13,983 (47.1)	629 (2.1)	826 (2.8)	7,918 (26.7)	27,971 (94.2)	1,711 (5.8)	29,682 (100.0)
2019	4,681 (16.5)	12,763 (45.1)	564 (2.0)	629 (2.2)	8,248 (29.1)	26,885 (95.0)	1,422 (5.0)	28,307 (100.0)
2020.9	4,707 (19.3)	10,695 (43.8)	337 (1.4)	591 (2.4)	6,990 (28.6)	23,320 (95.5)	1,093 (4.5)	24,413 (100.0)

자료: 김은설 외(202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보육교사 양성 관련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교과목 영역은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로 구분되며,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사 인성은 2과목 6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보육 지식과 기술 중 필수에서는 9과목 27학점, 선택에서는 4과목(1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보육실습은 2과목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양성에서는 대면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다.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으로 실시한다. 보육실습

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하며,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눠 실시할 수 있다.

### 3. 영유아 교사 양성 기관 현황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2, 3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또는 전공에서 양성되고 있다. 각 양성기관의 수와 기관별로 2023년 기준 학생 정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양성기관(학과) 수를 보면 보육관련 학과는 전국에 전문대 34개, 4년제 69개가 있고 해당 학과의 학생 수 정원은 총 2,898명이다. 유아교육과의 경우는 전문대에 설치된 경우가 72개, 4년제는 71개로 비슷하며, 전체 정원은 5,888명이다. 이러한 통계는 앞 절의 2022년 통계와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3-1> 2023년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기관 현황

	학과 수					학생 수				
	보육 관련학과		유아교육과		계	보육학과 정원		유아교육과 정원		계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서울	4	15	6	10	35	259	429	469	319	1,476
부산	3	5	5	8	21	125	118	165	192	600
대구	2	4	6	3	15	70	146	495	90	801
인천	1	2	2	1	6	30	36	192	20	278
광주	1	4	3	7	15	55	47	137	241	480
대전	0	3	5	3	11	0	67	229	112	408
울산	0	1	2	0	3	0	51	72	0	123
세종	0	0	0	0	0	0	0	0	0	0
경기	13	7	16	5	41	461	167	1,061	244	1,933
강원	0	0	3	4	7	0	0	110	212	322
충북	0	5	3	4	12	0	53	101	98	252
충남	0	7	1	7	15	0	244	35	268	547
전북	2	4	4	2	12	50	93	175	72	390
전남	2	4	3	3	12	113	57	96	89	355
경북	2	2	7	4	15	114	17	222	94	447
경남	2	2	4	6	14	64	26	125	147	362
제주	0	1	2	1	4	0	9	110	20	139
계	34	69	72	71	234	1,343	1,555	3,686	2,202	8,774

자료: 교육부(미발간), 2023년 교원 양성기관현황 내부 자료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35.0%(전체 234개교 중 82개교)가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종이나 울산, 강원, 제주 등에는 양성기관 수가 적다. 본 보고서 부록에는 해당하는 양성기관별 정원 자료를 수록하였다.

# III

---

##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의견 분석

---

- 01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 02 양성기관 관계자 집단 면담
- 03 양성기관 관계자 의견 조사 결과





### III.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의견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전문가 면담, 의견 수렴을 위한 서면 조사 등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 영역의 의견과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이후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주요 쟁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영유아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연합 협의체 대표 총 8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참여한 단체는 4년제 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4년제 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보육교사양성전문대교수<sup>3)</sup> 등이다.

아래에서는 각 쟁점별로 각 단체(이하 ○로 표현)가 가진 의견을 정리하였다.

#### 가. 쟁점1: 양성과정 수업연한 4년 확장

##### ○ 전문대 유아교육과

전문대 유아교육과는 대부분 4년제로 개편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교수 채용, 정원 확정 등 4년제로 변경하는 기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협회 회원 중 소수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3년제나 4년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 ○ 전문대 보육학과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4년제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존 졸업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므

3) 보육교사 양성 전문대를 대표하는 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전문대학 중 보육교사 양성규모가 큰 대표적 학교를 개별 섭외함.

로 심화과정을 1년 이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쟁점 2: 비대면 교육기관의 교원 양성기관 제외

### ○ 전문대 유아교육과 및 전문대 보육학과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발표된 대면 교육기관 학과 중심 교사 양성 안에 동의하며 비대면 기관은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였다.

### ○ 4년제 유아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비대면 중심이지만 어느 정도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약 50명 정도로 양성인원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재교육 정원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다. 쟁점 3: 학과제 및 학과 명칭

### ○ 4년제 유아교육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안에서 제시한 영유아 교육을 전공하는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었다.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지 않는 아동, 보육 관련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10%로 한정하고 더 확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통합 학과의 명칭 또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안에 교원양성과를 둔 구조는 적절치 않고 유치중등과 같이 교원양성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청하였다.

### ○ 4년제 보육학과

영유아교육과로 통합, 전환하지 않는 기존의 아동학 및 보육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교직 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을 주는 비율을 현행 1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현재 제도에서는 졸업자 전원에게 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0%만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결과이므로 해당 학과로 보아서는 너무 손실이 있는 변화라는 것이다.

## 라. 쟁점 4: 양성기관 평가와 승인 방식

### ○ 4년제 유아교육과

현재 교원양성과에서 받는 기관 평가 방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초중등과 같은 평가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사범대와 비사범대 모두 연계성을 가지고 통합기관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영유아만 별도 지표를 두는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대 유아교육과

7주기에는 정량평가로 단순화 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4년제 보육과

전문대 양성기관 평가 기준과 4년제 평가 기준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타 학교 급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마. 쟁점 5: 무전공/ 자유전공 관련**

○ 4년제 유아교육과

만일 제도를 채택한다하더라도 지방 분교까지 간다면 우수한 학생 유치 확률이 낮아지므로, 같은 단대, 같은 캠퍼스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무전공 입학 제도는 사범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 전문대 유아교육과

영유아교육과가 입학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일정 기준을 두고 부합하는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바. 기타 고려 사항**

○ 4년제 보육학과

서울은 입학 정원이 묶여 있으나 경기도는 이미 유아교육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은 인가를 내주지 않아 아동학과, 보육학과는 전환이나 정원에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하다.

○ 전문대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집 실습 가능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며, 현장 실습제로는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양성기관 관계자 집단 면담

양성 학과 개편과 관련한 일반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관 유형에 따라 전문대 유아교육과, 사범대가 있는 대학의 4년제 아동학과, 사범대가 없는 대학의 4년제 보육학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소속 교수 각 1명씩이 참석하는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sup>4)</sup>. 참석자 각자는 주어진 이슈에 대해 각 대학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가. 주제: 교원 양성기관 평가 관련 쟁점 논의

#### 1) 비사범계 보육/아동학 전공학과 교원 자격 부여 비율

##### ○ 사범대가 있는 대학의 4년제 아동학과

일반 대학에 있는 아동학과이더라도 지금까지 받아온 바와 마찬가지로 양성기관 평가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행 10%보다는 교직이수 비율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30-40명 정원인 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3-4명만을 위한 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 사범대가 없는 대학의 4년제 보육학과

교직이수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통합 이전에 보육교사가 배출되었던 수만큼은 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교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 하였다.

##### ○ 전문대 유아교육과

현재 시범에서도 점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육 관련 학과의 교직 비율을 높이게 되면 유아교육과의 입시 경쟁력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입학 경쟁률에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교직이수 50% 허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면담 참석자의 해당 대학은 향후 보육과와

4) 해당 집단 면담은 현재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유형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아교육과를 통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필요한 교원 수에 대한 추계 결과에 근거하여 정원 50%까지 교직이수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2)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전환으로 인한 정원 조정

면담 참석자 중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비롯한 대부분은 현행 제도상 전문대학이 4년제로 전환할 때 “현 입학정원×(기존학제/변경된 학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입학 정원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예를 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학정원 60명인 3년제 전문대의 경우 4년제로 학제변경 시 입학정원은 45명이 되어야 하므로 학교 운영이나 필요 양성 교사 수 등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원활한 수급 문제와 전문대 졸업생의 현장 취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학 정원 축소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교직과정 담당: 교수의 전공 일치도

유아교육에 적절한 내용의 교직과정 개설.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직과목이 필요하며 유아교육 배경의 교육학 전공 교수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편으로는 유·초·중등 연속적 교육 체제 속에서의 교원양성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교원 양성기관 신규 진입 학과에 대한 평가 방식

정식의 양성기관 평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컨설팅 후 3년이 지난 다음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형태 등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초기에는 일정 기준을 두고 양성기관으로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3년 이후 평가하는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성기관으로서 승인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 개설 적절성

- ※ '전공'의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예. 사회복지학과, '아동'심리학과)
-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영유아 전공이 교수 50% 이상 (예. 가족복지과)
- (현행) 유아교육과 승인을 위해서는 실습 연계기관 협력증명서 제출
-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 충족율 기준 정비 필요 (전문대와 4년제 간 지표 차이)
  - ※ 현행 전문대 150%, 4년제 200%
-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개선 계획 포함: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 지도 등
- 승인을 위한 권역별 실사단 구성 필요
- 교육성과 지표는 승인 시에는 적용 불가능.
- 표준교과 개요와 같은 공통 가이드 필요.

#### 5) 평가 지표의 개선 의견

기타 구체적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논의되었다.

첫째, 지표가 초중등 교원 양성에 맞춰져 있어 영유아학과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분화되어 있는 점에서 중등과 비슷하고 초등과는 오히려 다르다. 초등과 비교, 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신입생 충원률 및 중도탈락 학생 비율 지표'에 출석관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 학생 선발 충족률 및 지원 노력 지표는 취업률과 상반되는 지표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학생수업 역량제고 노력 즉, 모의수업 관련 지표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지표이고 모의수업은 학생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비교과과정 운영 지표는 난해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성지표는 제외하고 정량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대의 경우 정성 지표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양성기관 관계자 의견 조사 결과

전체 모집단인 376개 학교 중 137개 학교가 설문에 응하였다. 대학유형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이 82개로 59.9%, 전문대가 55개 40.1%로 조사에 참여하였고 국공립대는 16개로 11.7%, 사립대가 121개 8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8.7%, 강원충청권 19.0%, 영남권 26.3%, 호남제주권 16.1%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17개 시도별로는 세종시만 제외하고 16개 시도에 소재한 대학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응답을 한 교수들은 51.1%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직을 맡고 있었고 19.0%는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학과장이었다. 대학본부 보직자도 5.1% 포함되었다. 해당학과 근무경력 10년 미만인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7.2%였다. 해당학과 근무 20년 이상 교수도 17.5% 포함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자만을 양성하는 경우는 17.5%, 유치원교사 자격자만 양성하는 경우 43.1%, 그리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경우는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37	100.0			
대학유형			응답자		
4년제	82	59.9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70	51.1
전문대	55	40.1	유아교육학과 전임교수	17	12.4
설립유형			보육교사 양성학과장	26	19.0
국/공립대	16	11.7	보육교사 양성학과 전임교수	15	10.9
사립대	121	88.3	대학본부 보직자/경영자	7	5.1
			기타 교직원	2	1.5
시도(17개)			경력		
서울특별시	20	14.6	해당학과 근무 10년 미만	62	45.3
부산광역시	7	5.1	해당학과 근무 10년~20년 미만	51	37.2
대구광역시	7	5.1	해당학과 근무 20년 이상	24	17.5
인천광역시	2	1.5			
광주광역시	10	7.3	양성 교사 유형		
대전광역시	8	5.8	보육 교사	24	17.5
울산광역시	2	1.5	유치원 교사	59	43.1
세종특별자치시	0	0.0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54	39.4

구분	계(수)		구분	계(수)	
경기도	31	22.6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 제주권	53	38.7
강원특별자치도	4	2.9			
충청북도	4	2.9			
충청남도	10	7.3			
전북특별자치도	6	4.4			
전라남도	4	2.9			
경상북도	12	8.8			
경상남도	8	5.8			
제주특별자치도	2	1.5			

### 가. 양성 현황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양성 정원을 조사하였다. 평균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의 경우 4년제 대학 보육/아동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32.8명을 양성하고 관련 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7.7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 학과 당 평균 53.5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경우는 4년제에서는 학과 당 양성이 68.7명으로 나타났고 교직 이수율의 경우는 4.3명, 교육대학원 자격 이수율은 평균 8.2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는 평균 학과 당 62.7명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교육학과의 이러한 평균 수치는 거대 학과라고 볼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를 포함한 수치여서, 일반 대학만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II-3-2〉 양성 방식 및 정원

구분	학과/전공/학부 여부	정원(합계)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보육교사 양성	4년제	보육/아동 OO 학과	1312	32.8 (14.5)	40
		보육/아동 OO 학부	-	-	-
		보육/아동 OO 전공	166	27.7 (13.6)	6
		기타	200	200.0 (0.0)	1
	전문대	보육/아동 OO 학과	1177	53.5 (44.4)	22
		보육/아동 OO 학부	32	32.0 (0.0)	1
		보육/아동 OO 전공	50	25.0 (0.0)	2
유치원교사 양성	4년제	유아교육학과	3917	68.7 (244.4)	57
		교직 이수	52	4.3 (3.1)	12
		교육대학원 자격 이수	41	8.2 (6.2)	5



구분	학과/ 전공 /학부 여부	정원(합계)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3200	62.7 (39.6)	51
	교직 이수	55	27.5 (22.5)	2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 사범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사례는 18%,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있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문대가 포함되어 나온 결과로, 4년제 대학만 고려하면 일반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있는 경우가 52.5%, 사범대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경우는 32.8%였다.

지역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영남이나 호남권에서 비교적 사범대학내 유아교육과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 유형

단위: %, (명)

구분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일반대학 유아교육학과	사범대가 있는 대학 교직이수	사범대가 없는 대학 교직이수	기타	계
전체	18.0	69.4	1.8	4.5	9.0	100.0 (111)
대학 유형						
4년제	32.8	52.5	3.3	6.6	9.8	100.0 (61)
전문대	0.0	90.0	0.0	2.0	8.0	100.0 (50)
$\chi^2$						41.330*** (5)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8	69.2	0.0	10.3	7.7	100.0 (39)
강원, 충청권	13.6	77.3	4.5	0.0	4.5	100.0 (22)
영남권	23.3	66.7	3.3	3.3	13.3	100.0 (30)
호남, 제주권	25.0	65.0	0.0	0.0	10.0	100.0 (20)
$\chi^2$						11.981(15)

\*\*\* p < .001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경우 교직을 담당하는 교수가 어떠한 직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과반이 넘는 다수(64.6%)가 학과 내에 교직을 담당하는 전임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대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30.6%만 학과 내에 교직담당 전임 교수를 두고 있고 다수인 61.6%는 학교 내 교직을 담당하는 학과의 교수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의 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에 비해 전문대학은 91.3%가 학과내 교직 담당 전임

교수를 두고 있었다. 이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제외하면 교직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여서 별도의 교직과를 두고 있지 못하므로 학과 내 인력으로 별도 채용을 하여 교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4〉 교직과목 담당자

단위: %, (명)

구분	학과내 교직 담당 전임 교수	학교 내 교직학과 교수	학과에서 교직 담당 강사 채용	학교 단위 채용 교직 전담 교수	학점교류 타 대학 교직이수	기타	계	
전체	64.6	26.8	4.9	2.4	0.0	1.2	100.0	(82)
대학 유형								
4년제	30.6	61.1	5.6	2.8	0.0	0.0	100.0	(36)
전문대	91.3	0.0	4.3	2.2	0.0	2.2	100.0	(46)
$\chi^2$	40.515***(4)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1.3	35.5	3.2	0.0	0.0	0.0	100.0	(31)
강원, 충청권	52.9	29.4	11.8	5.9	0.0	0.0	100.0	(17)
영남권	71.4	23.8	0.0	4.8	0.0	0.0	100.0	(21)
호남, 제주권	76.9	7.7	7.7	0.0	0.0	7.7	100.0	(13)
$\chi^2$	14.354(12)							
양성 교사								
유치원 교사	66.7	22.2	6.7	4.4	0.0	0.0	100.0	(45)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62.2	32.4	2.7	0.0	0.0	2.7	100.0	(37)
$\chi^2$	4.367(4)							

\*\*\* p < .001

## 나. 학과 개편

### 1) 전문대의 4년제 전환

전문대학의 경우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 자격이 학사 학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70%가 전환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수도권과 호남·제주권에서 전환을 예정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보육교사양성학과보다는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4년제 전환 계획 비율이 75%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본부 보직자/교직원의 경우에는 응답 사례 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3-5〉 (전문대) 4년제 학과로 전환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환	비전환	모름	계
전체	70.9	7.3	21.8	100.0(55)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6.2	4.8	19.0	100.0(21)
강원, 충청권	50.0	12.5	37.5	100.0(8)
영남권	70.6	5.9	23.5	100.0(17)
호남, 제주권	77.8	11.1	11.1	100.0(9)
$\chi^2$	2.817(6)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75.0	6.8	18.2	100.0(44)
보육교사양성 학과	66.7	16.7	16.7	100.0(6)
대학본부/교직원	40.0	0.0	60.0	100.0(5)
$\chi^2$	5.577(4)			
경력				
10년 미만	70.0	10.0	20.0	100.0(20)
10년 이상~20년 미만	73.1	3.8	23.1	100.0(26)
20년 이상	66.7	11.1	22.2	100.0(9)
$\chi^2$	0.899(4)			
양성 교사 유형				
보육 교사	25.0	25.0	50.0	100.0(4)
유치원 교사	78.6	0.0	21.4	100.0(28)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69.6	13.0	17.4	100.0(23)
$\chi^2$	7.909(4)			

2) 보육교사 양성학과만 있는 대학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만 있는 대학의 경우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학과를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해당 사례수는 24개였으며, 이 중 54.2%는 개편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33.3%는 개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보육교사 양성학과만 있는 4년제 대학 중에는 60%가 개편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5%는 현재대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표 III-3-6〉 (현재 보육교사양성 학과만 있는 경우) 영유아교육과로 학과 개편 의향 여부

단위: %, (명)

구분	개편 하겠음	개편 하지 않겠음	모름	계
전체	54.2	33.3	12.5	100.0(24)
대학 유형				
4년제	60.0	35.0	5.0	100.0(20)
전문대	25.0	25.0	50.0	100.0(4)
$\chi^2$	6.254*(2)			

구분	개편 하겠음	개편 하지 않겠음	모름	계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7.1	28.6	14.3	100.0(14)
강원, 충청권	25.0	75.0	0.0	100.0(4)
영남권	60.0	20.0	20.0	100.0(5)
호남, 제주권	100.0	0.0	0.0	100.0(1)
$\chi^2$	4.735(6)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100.0	0.0	0.0	100.0(1)
보육교사양성 학과	52.4	38.1	9.5	100.0(21)
대학본부/교직원	50.0	0.0	50.0	100.0(2)
$\chi^2$	4.073(4)			
경력				
10년 미만	41.7	41.7	16.7	100.0(12)
10년 이상~20년 미만	71.4	28.6	0.0	100.0(7)
20년 이상	60.0	20.0	20.0	100.0(5)
$\chi^2$	2.594(4)			

\* p < .05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개편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인 8개 대학의 경우 희망하는 방식은 62.5%(5개 대학)가 소수인원을 교직이수를 통해 통합 교사로 양성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고 특히 4년제 대학은 7개대 중 5개 대에서 교직 운영을 희망하였다. 학과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전문대 1개 대학은 폐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를 양성하지 않는 일반 학과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한 곳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통합교사를 양성하는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정원의 일부를 교직 이수를 통해 통합교사로 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향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겠다.

〈표 III-3-7〉 (현재 보육교사양성 학과만 있는 경우) 영유아교육과 미개편 시 현 보육교사 양성 학과 운영 계획

단위: %, (명)

구분	비양성 일반학과로 운영	소수인원을 통합교사로 양성(교직 이수)	타 학과와 통합하여 신규학과 운영	폐과 예정	기타	계
전체	0.0	62.5	12.5	12.5	12.5	100.0 (8)
대학 유형						
4년제	0.0	71.4	14.3	0.0	14.3	100.0 (7)
전문대	0.0	0.0	0.0	100.0	0.0	100.0 (1)
$\chi^2$	8.000*(3)					

구분	비양성 일반학과로 운영	소수인원을 통합교사로 양성(교직 이수)	타 학과와 통합하여 신 규학과 운영	폐과 예정	기타	계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0.0	50.0	0.0	25.0	25.0	100.0 (4)
강원, 충청권	0.0	66.7	33.3	0.0	0.0	100.0 (3)
영남권	0.0	100.0	0.0	0.0	0.0	100.0 (1)
호남, 제주권	0.0	0.0	0.0	0.0	0.0	0.0 (0)
$\chi^2$	4.000(6)					
경력						
10년 미만	0.0	80.0	0.0	20.0	0.0	100.0 (5)
10년 이상~20년 미만	0.0	50.0	50.0	0.0	0.0	100.0 (2)
20년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chi^2$	11.520(6)					

\* p < .05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만 있는 대학의 경우 이를 통합교사 양성 학과로 개편했을 때 교직과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양성 기관으로 승인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라는 질문에서, 84.6%가 교내의 관련 전공 교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직 담당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30.8%였고 15.4%는 타학교와 학점 교류를 통해 교직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III-3-8〉 (보육교사양성과만 있는 경우) 신규 양성 학과로 개편 시 교직과목 설치 조건 대응 방안 (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교직 담당 교수 채용	학교내 관련 전공 교수 활용	타 학교와 학점 교류	기타	계
전체	30.8	84.6	15.4	15.4	(13)
대학 유형					
4년제	25.0	91.7	16.7	16.7	(12)
전문대	100.0	0.0	0.0	0.0	(1)
$\chi^2$	8.790(4)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7.5	87.5	25.0	25.0	(8)
강원, 충청권	0.0	100.0	0.0	0.0	(1)
영남권	33.3	66.7	0.0	0.0	(3)
호남, 제주권	0.0	100.0	0.0	0.0	(1)
$\chi^2$	5.180(12)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0.0	100.0	0.0	0.0	(1)

구분	교직 담당 교수 채용	학교내 관련 전공 교수 활용	타 학교와 학점 교류	기타	계
보육교사양성 학과	27.3	81.8	9.1	18.2	(11)
대학본부/교직원	100.0	100.0	100.0	0.0	(1)
$\chi^2$	9.634(8)				
경력					
10년 미만	60.0	100.0	40.0	20.0	(5)
10년 이상~20년 미만	20.0	60.0	0.0	20.0	(5)
20년 이상	0.0	100.0	0.0	0.0	(3)
$\chi^2$	11.884(8)				

### 3) 보육교사 양성 학과와 유아교육학과가 모두 있는 대학

한 대학 내에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모두 있는 경우는 사례 수가 52개였는데, 이들 학교에 대해 두 학과를 통합하여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하나의 학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38.5%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지만 46.2%의 학교는 두 학과를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15.4%는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20%가 개편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개편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여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는 9% 정도만이 개편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59% 이상이 개편하겠다고 하여 전문대는 학과 통합을 예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 중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편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은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육교사양성학과 교수는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6.3%로 나와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4년제 대학에서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응답자가 3명일 뿐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원 모수가 작을 것임을 고려하면서 보면, 대학본부 보직자나 기타 교직원의 경우는 100% 개편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표 III-3-9〉 (보육교사양성학과 유치원교사 양성과 병존 시) 통합하여 일원화 개편 의향

단위: %, (명)

구분	개편 할 예정	개편하지 않을 예정	모름	계
전체	46.2	15.4	38.5	100.0(52)
대학 유형				

구분	개편 할 예정	개편하지 않을 예정	모름	계
4년제	36.7	20.0	43.3	100.0(30)
전문대	59.1	9.1	31.8	100.0(22)
$\chi^2$	2.802(2)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1.1	16.7	22.2	100.0(18)
강원, 충청권	37.5	25.0	37.5	100.0(8)
영남권	28.6	7.1	64.3	100.0(14)
호남, 제주권	50.0	16.7	33.3	100.0(12)
$\chi^2$	6.855(6)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40.0	10.0	50.0	100.0(30)
보육교사양성 학과	47.4	26.3	26.3	100.0(19)
대학본부/교직원	100.0	0.0	0.0	100.0(3)
$\chi^2$	7.561(4)			
경력				
10년 미만	40.0	20.0	40.0	100.0(25)
10년 이상~20년 미만	47.1	17.6	35.3	100.0(17)
20년 이상	60.0	0.0	40.0	100.0(10)
$\chi^2$	2.631(4)			

현재 보육교사 양성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가 모두 있는 대학 중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1개 학교들 중 54.5%는 소수인원을 교직이수를 통해 통합교사로 양성하겠다고 하였고 27.3%는 양성을 하지 않는 일반학과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10〉 (보육교사양성 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 병존한 경우) 영유아교육과 미개편시 운영 계획

단위: %, (명)

구분	비양성 일반학과로 운영	소수인원을 통합교사로 양성(교직 이수)	타 학과와 통합하여 신규학과 운영	폐과 예정	기타	계
전체	27.3	54.5	0.0	0.0	18.2	100.0 (11)
대학 유형						
4년제	25.0	62.5	0.0	0.0	12.5	100.0 (8)
전문대	33.3	33.3	0.0	0.0	33.3	100.0 (3)
$\chi^2$	0.917(2)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0.0	100.0	0.0	0.0	0.0	100.0 (3)
강원, 충청권	50.0	0.0	0.0	0.0	50.0	100.0 (2)
영남권	0.0	100.0	0.0	0.0	0.0	100.0 (1)

구분	비양성 일반학과로 운영	소수인원을 통합교사로 양성(교직 이수)	타 학과와 통합하여 신규학과 운영	폐과 예정	기타	계
호남, 제주권	40.0	40.0	0.0	0.0	20.0	100.0 (5)
$\chi^2$	6.417(6)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50.0	0.0	0.0	0.0	50.0	100.0 (4)
보육교사양성 학과	14.3	85.7	0.0	0.0	0.0	100.0 (7)
대학본부/교직원	0.0	0.0	0.0	0.0	0.0	0.0 (0)
$\chi^2$	8.119*(2)					
경력						
10년 미만	28.6	57.1	0.0	0.0	14.3	100.0 (7)
10년 이상~20년 미만	25.0	50.0	0.0	0.0	25.0	100.0 (4)
20년 이상	0.0	0.0	0.0	0.0	0.0	0.0 (0)
$\chi^2$	0.196(2)					

\* p < .05

현재 보육 관련 학과와 유아교육학과가 모두 있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로 통합할 경우 정원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물었을 때 통합 전보다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54.2%로 높았고 증원이 될 것으로 보는 경우는 16.7%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 본부 보직자의 경우는 3명 중 2명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전문대 교수들은 감원될 것을 예상하는 비율이 4년제보다 훨씬 높았다. 4년제 대학은 상대적으로 현행 유지나 증원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3-11〉 (보육교사양성 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가 병존한 경우) 영유아교육과로 통합 개편 시 정원

단위: %, (명)

구분	통합 전 정원 유지	통합 전보다 증원	통합 전보다 감원	계(수)
전체	29.2	16.7	54.2	100.0(24)
대학 유형				
4년제	36.4	27.3	36.4	100.0(11)
전문대	23.1	7.7	69.2	100.0(13)
$\chi^2$	2.920(2)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6.4	0.0	63.6	100.0(11)
강원, 충청권	33.3	0.0	66.7	100.0(3)
영남권	0.0	50.0	50.0	100.0(4)
호남, 제주권	33.3	33.3	33.3	100.0(6)
$\chi^2$	8.178(6)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33.3	16.7	50.0	100.0(12)



구분	통합 전 정원 유지	통합 전보다 증원	통합 전보다 감원	계(수)
보육교사양성 학과 대학본부/교직원	33.3 0.0	11.1 33.3	55.6 66.7	100.0(9) 100.0(3)
$\chi^2$	1.795(4)			
경력				
10년 미만	40.0	10.0	50.0	100.0(10)
10년 이상~20년 미만	25.0	37.5	37.5	100.0(8)
20년 이상	16.7	0.0	83.3	100.0(6)
$\chi^2$	5.506(4)			

### 다. 학과 명칭

유보통합을 통해 양성되는 영유아 교사를 교육하는 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학)과’로 정하는 것에 대해 74.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2%는 반대의 의사를 보였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반대가 30%로 전문대 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이나 호남·제주 권역 대학에서 해당 명칭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육교사 양성학과 및 유치원교사 양성학과 간에는 응답 차이 없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3-12〉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담당 교사 양성 학과 명칭 “영유아교육(학)과”

단위: %, (명)

구분	동의	반대	계(수)
전체	74.8	25.2	100.0(123)
대학 유형			
4년제	69.9	30.1	100.0(73)
전문대	82.0	18.0	100.0(50)
$\chi^2$	2.319(1)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2.9	27.1	100.0(48)
강원, 충청권	60.0	40.0	100.0(25)
영남권	80.6	19.4	100.0(31)
호남, 제주권	89.5	10.5	100.0(19)
$\chi^2$	5.727(3)		
양성 교사 유형			
보육 교사	77.3	22.7	100.0(22)
유치원 교사	71.7	28.3	100.0(53)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77.1	22.9	100.0(48)
$\chi^2$	0.475(2)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73.1	26.9	100.0(78)

구분	동의	반대	계(수)
보육교사양성 학과	76.9	23.1	100.0(39)
대학본부/교직원	83.3	16.7	100.0(6)
$\chi^2$	0.448(2)		
경력			
10년 미만	71.7	28.3	100.0(53)
10년 이상~20년 미만	76.1	23.9	100.0(46)
20년 이상	79.2	20.8	100.0(24)
$\chi^2$	0.554(2)		

### 라. 자유전공제의 도입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 자유전공제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1.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에 대한 구체적 이유로는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부적절한 방안임, 교육과정 특성상 불가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수 곤란, 전문성과 교육의 질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비해 18% 정도가 자유전공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찬반 간 비율 차이가 컸다.

〈표 III-3-13〉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의 자유전공제 운영에 대한 의견

주요 내용	빈도	%
자유전공제 반대	62	51.2%
단순 반대	17	14.0%
교원 양성기관에서 부적절	13	10.7%
교육과정 특성상 불가	8	6.6%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수 어려움	6	5.0%
전문성과 교육의 질 때문에	4	3.3%
교육의 질을 위해	3	2.5%
유보통합 취지에 맞지 않음	3	2.5%
혼란	2	1.7%
교원양성기관 평가진단 기준에 맞지않음	1	0.8%
기타	1	0.8%
불필요	1	0.8%
유보통합 시기에는 안됨	1	0.8%
전문대에서는 무리임	1	0.8%
확실한 교육과정 개편이 선행되어야	1	0.8%
자유전공제 개념 불분명, 응답 어려움	11	9.1%
조건부 찬성	11	9.1%

IV.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

주요 내용	빈도	%
자유전공제 찬성	10	8.3%
의견없음	8	6.6%
대학자율에 맡겨야	1	0.8%
일부 자유전공제 불가피	1	0.8%
기타	17	14.0%
계	121	100.0%



# IV

---

##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

---

- 01 학과 명칭
- 02 수업연한
- 03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시 고려 사항
- 04 학과 개편 실행을 위한 제안



## IV.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

### 1. 학과 명칭

#### 가. 통합학과 명칭: 영유아교육과<sup>5)</sup>

##### 1) 통합학과 명칭

앞서 제시된 양성대학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과로 제안하고자 한다. 사범대학 소속은 영유아교육과, 사범계열은 영유아교육학과, 전문대는 영유아교육학과로 할 수 있다. 영유아교육과는 0~5세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봄하는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영유아교육과는 학과 내에서 영유아교육전공교과목, 교직과목,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운영한다.

##### 2) 통합학과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영유아교육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졸업자에 영유아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향후 7주기 이후 교원양성역량진단에서 영유아교사 배출의 적정 규모가 계속 관리될 것이다.

##### 3) 통합학과 전환 대상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 대상이 되는 학과는 현재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이며, 학교의 전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전환 대상 보육교사 양성 학과는 해당 학과 교원의 세부전공이 영유아교육전공

---

5) 영유아교육과는 대학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교육학과로 명칭할 수도 있음. 의견조사 과정에서 영유아가 모두 포함된 의미의 '유아교육과'로 칭할 것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가 동의한 영유아교육과로 제안함.

절반 이상, 그리고 학과를 전환할 희망이 있는 학과로 한다. 교원의 영유아교육전공은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전공과 아동학전공으로 한다.

## 나. 아동/보육 관련학과의 교직 이수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아동/보육 관련학과에 대해 영유아교사 자격을 위한 교직이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동/보육 관련학과에서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희망 학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육 관련학과에서 유치원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는 경우에 정원의 10%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과정 부여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한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직이수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 간담회 결과에서 보듯이 상호 다른 입장과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 다. 교육대학원의 영유아교육전공

### 1)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을 운영한다. 해당 대학에 전환된 영유아교육과가 있을 때 영유아교육과에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을 운영하며,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를 영유아교육과 소속 교원으로 한다. 영유아교육과가 없을 때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를 최소한 1명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을 운영한다. 해당 대학에 전환된 영유아교육과가 있을 때는 영유아교육과에서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를 둔다. 해당 대학에 전환된 영유아교육과가 없을 때는 교육대학원 내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를 반드시 1명 이상 두고 운영하도록 한다.



## 2. 수업연한

### 가. 4년제로의 상향

#### 1) 수업연한에 대한 부모 의견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적정 자격을 살펴보았는데, 부모들은 4년제 대학 교사양성 학과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문대학 교사양성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 교사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기관(복수응답)

단위: %, (명)

	4년제 대학 교사 양성 학과	전문대 교사 양성 학과	4년제/전문대 자격 취득 학점 이수	사이버 대학 교사 양성 학과	방송통신대학 교사 양성 학과	온라인 학점은행 (평생교육원 포함)	보육 교사 교육원	사례수
전체	77.1	42.9	18.3	7.7	11.1	5.5	8.3	(1000)
유치원부모	89.6	30.6	10.4	2.6	5.8	1.6	3.6	(500)
어린이집부모	64.6	55.2	26.2	12.8	16.4	9.4	13.0	(500)
영아 부모	67.5	52.4	21.8	11.5	13.9	8.3	9.1	(252)
유아 부모	80.3	39.7	17.1	6.4	10.2	4.5	8.0	(748)

자료: 김은설 외(202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2) 수업연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2023년 7월 24일 2시에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전문가 포럼이 개최되었다(손승희, 손혜숙, 이승하, 김대욱, 신나리, 황성원, 이병래, 정효정, 임혜성, 조운주, 2023). 참석단체는 10개 단체로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아동학회(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단체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였다.

자격기준으로 적정 수업 연한은 4년(한국아동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에서 4년제 학과개편방안을 제시하여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단체가 4년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포럼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영유아교원 자격이 상향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교사 양성에서 4년제 대학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3) 선행연구에 의한 근거

수업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서는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영유아 교사 교육 4년 수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4년의 수업 기간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예비교사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만을 이수하는 것이 아닌 교과와 비교과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나가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김지영 등(2021)은 예비교사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정영근(2013)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양과목이 직업교육의 측면이 강조된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교사가 직업적 성숙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기반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교육학적 사유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자로서의 인성 함양 교육 기간으로서의 필요성이다. 장영환(2018)은 사범대 4학년 학생이 1학년에 비해 교직인성 중 윤리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보여주고, 예비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수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교직인성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4년의 수학 연한을 통해 단순히 전공지식과 교직소양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교직인성, 윤리의식,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와 같은 폭넓고 깊이있는 교사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과의 교육 연계성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4년 학위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서는 4년의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전공 및 교직 필수 72~75학점(교육부 기준은 72학점) 이상에 더하여 학교에 따라 45~50학점 이상의 전공 심화, 교양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기당 약 18학점씩 수강 학점 제한을 두기도 하여 4년간의 수학과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할 때 영유아교육에서도 4년 학위과정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계열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영유아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영유아-초-중등 교사의 교육 계열성이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김대욱, 2024).

## 나. 4년제와 전문대의 수업연한

### 1)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과, 영유아교직이수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수업연한은 모두 4년이다. 4년제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수업연한 조정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다. 영유아교육(학)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일반대학 교직과정)의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2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 특별편입과정으로 3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과목을 고려하여 4년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교육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의 학과 교육과정은 개발된 통합 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을 운영하는 대학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학생 숫자를 순증하여 학사 7학기과 석사 3학기를 포함하여 졸업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신설하거나 증원할 수 있다.

### 2)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수업연한은 2~3년이다. 2024년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수업연한은 모두 4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3년제 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상향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영유아교사 양성 기능이 있는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은 지금과

동일하게 학위과정으로 5차 학기 이상으로 운영한다.

#### 다. 전문대학 영유아교육학과를 4년제로 상향

##### 1)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4년으로 상향

###### 가) 기존 사례의 참조: 간호학과 모델 적용

고등교육법(제50조의 3)에 전문대 간호학과는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문대의 학과이지만 4년 수학 기간의 중요성, 전환의 필요성 논의와 법 개정을 거쳐 모든 간호학과가 4년제로 운영되게 된 선행 사례와 과정을 참조하여 영유아교육과와 영유아교직이수 운영에서 이를 적용,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심화전공 운영과 전환

현행 제도 내에서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지만 졸업 후 1년 동안 '심화전공'을 이수하면 4년 졸업과 동등하게 학사학위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전문대 유아교육학과는 58개 대학에서 이미 4년제 학사학위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3년제인 전문대 유아교육과에서 4년제로 학과를 전환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다) 전문대 영유아교육과의 교직 과목 운영

전문대 신설 영유아교육과에서 교직과정 전담 교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인근 대학의 교직과목을 학교 간 양해 협정을 통해 학점교류 형태로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동일 전문대학 내에 간호학과가 있고 학과 내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근 대학과의 교직과목 학점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시 교직 중 일부 과목 및 학점에 한정해서 온라인 방식(예, 사이버대학 등)의 수강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교직 과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논의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2)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의 정원 관련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관련 교원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2~3년제 학과가 4년제 학과로 전환될 경우 학과 소속 총 학생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1개 학년에 속한 학생의 숫자를 35~40% 정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영유아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전체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년제 학과가 4년제 학과로 전환되더라도 학생수 감소없이 전환하도록 한다.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시 고려 사항

### 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 및 정원 감원

대학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폐과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4년제 유아교육과가 69개교에서 67개교로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을지대 유아교육과가 폐과되었다. 3년제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폐과는 더 빨라지고 있다. 경민대 아동보육과의 경우 폐과가 되고 소속 교원을 같은 대학 교양학부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폐과되는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숫자와 정원을 지역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수치를 포함하여 영유아교육과 혹은 영유아교육전공 양성인원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천대와 인천시립대가 통합되면서 아동학과 정원이 45명이 줄어들고 아동학과 소속 교원 2명만 유아교육과 전환 배치되었다. 인천지역 영유아교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인천지역 최대 정원인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 인천 동부지역에 있어서 입학/ 졸업생들이 인천으로 취업하지 않고 경기지역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유들이 모여서 인천지역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보통합에 이은 교원양성기관개편을 앞두고 경기지역 신구대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과가 유아교육과 정원만 남기고 통합되는 사례가 있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 양성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정비법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부족한 영유아교사를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통합에서 소외되는 유아교육과나 아동관련학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강원대-삼척대 통합에서 사범대 총 정원제로 인해 삼척대 유아교육과가 사범대에 배치받지 못하였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질 높은 영유아교사를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학 내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과 구조조정의 지침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 나. 대학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한 영유아교육(학)과 및 전공 입시 경쟁력 부족 현상,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 제외 필요

입학자원감소로 인해 의대 등 특수 인기학과를 제외한 일반학과의 경우 학과경쟁력보다 대학경쟁력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향이 있다. 17개 시도별 균형있게 유아교육과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담당 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학내 보직발령 등 업무의 증가로 영유아교사 양성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향후 대학 입학자원 부족으로 영유아교육(학)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의 입시 자원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다.

사범대학에 소속된 유아교육과도 있지만, 사범계열 유아교육학과는 단과대학 차원의 충분한 교원양성 관련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가 사범대 총 정원제로 인해 사범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에 소속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대학 통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유아교육학과가 사범대학 소속이 안되는 경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다. 지역수요에 적절한 영유아교사 양성의 필요성

지역 수요에 맞는 예비영유아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지역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입학자원 절벽현상으로 인해 지역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미충원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되고 있다. 향후 지역에서 광역시도 중 입학 여력이 충분한 지역 대학 중심으로 학생이 모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 입학자원 감소로 인해 사립대학 영유아교육과나 영유아교직이수의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역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비 교원에 대한 양성방안이 없다. 지방대학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에서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현재 학생 이탈이 많고, 지금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의 경우 지역 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4년제 1개교, 3년제 2개교만 있는 상황이다. 세종은 지역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전무하다. 지역사회에서 영유아교원수급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 라. 부족한 수도권 영유아교사 양성규모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의 영유아교사 양성을 증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영유아교사는 이미 부족한 상황이다. 어떻게 부족한 수도권 영유아교사 양성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하여야 한다.

## 마.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자유전공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직이수는 어떤 단과대학과 묶어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과 달리, 영유아교사는 영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만 교원으로 근무 가능하므로 융통성 있는 교원 수급까지 고려한다면 자유전공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바. 대규모 정원의 영유아교육과 개설

유아교육과 증원,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 통합 등으로 인한 단일대학 영유아교육과가 100명 이상 되는 학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년제 유아교육과에 100명이 넘는 학과는 경동대학교만 있다. 개별 대학의 예비 영유아교사의 수급이 우려된다. 개별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 통합하여 모두 합반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수업받을 공간 부족하다. 의대 교수들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통합 학

과의 공간 분리로 서로 다른 건물에서 서로 다른 교수진에게 교육받을 가능성 있다. 단일 대학에서 캠퍼스가 다른 상태에서 학과만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유아교사 양성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사.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우려

비대면 교육으로 양성되는 영유아교사의 질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방식의 영유아교사 양성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영유아교사의 숫자만큼 정원 규모를 적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아.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세계최고로 지향하는 유보통합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도 중요하다. 향후 지역기반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같이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석사 연계 과정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의 일부 정원에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4. 학과 개편 실행을 위한 제안

### 가.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 지원

유보통합법 제정이후 학과개편을 통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려는 모든 학과들은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고 이 때 이들에 대한 양성기관으로서의 승인과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심사 절차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원양성역량진단의 구조 틀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각 대학에서는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목적 교원 양성기관으로서 영유아교육과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에 2개 이상의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관련 학과가 있는 경우 이를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측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나. 영유아교육과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제외 필요

사범대에 소속된 영유아교육과의 경우 유보통합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양성정원 관리에 대한 여러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일정 기간 제외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범대학은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는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교원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유아교사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업무시간 감축 등으로 교사 수요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범대학 내에 있더라도 사범대학 전체 정원 관리와는 분리하여 입학 정원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즉,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를 일정 기간 제외하여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다. 1대학 1캠퍼스 1단과대학 1영유아교육과 설치

대학교 간 통합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학과개편 이후에 같은 학과가 한 대학 안에서 서로 다른 캠퍼스와 다른 단과대학에 소속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1대학 1캠퍼스 1단과대학 통합학과를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즉 동일 대학 안에서 영유아교육과는 단일한 캠퍼스내 1개 단과대학에 배치되도록 하며, 사범대학이 있으면 사범대학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과대학 편제뿐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동일 캠퍼스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학과를 만들 때,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과 구성원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영유아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는 모두 1개의 동일한 학과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다. 만일 대학 내 아동/보육 관련학과만 있는 경우 대학 본부와 사범대학과 협조, 학내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범대학 소속 영유아교육과의 이동, 일반대학 내 영유아교육과의 전환, 혹은 전환이 불가할 시 일반대학 영유아교직이수 가능 범위 검토 중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영유아교육과 입학 시 자유전공 제외

영유아교육과는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과 같이 사범대학(사범계열)로 교육부 관리정원에 포함됨에 따라 입학 시 자유전공 가능학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 마. 대면중심 교육 강화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시되었고, 양성기관 간담회나 선행연구(김은설 외, 2023) 등에서 여러 단체가 동의하였던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대면중심 교육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면중심으로 양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은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등 대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나 1,800명이 넘는 전공학과 학생 수를 가진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비대면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어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포함되는 양태이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비대면 중심 원격 교육기관에서도 양성되고 있어 대면기관 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양성과정은 교육 대상의 특성과 그들을 대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신혜원, 2024).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동일한 계열성을 가진 교육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대면 중심 교사양성 교육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대면교육 방식으로도 양성되고 있는 교육 체제는 대면교육 교육기관 중심 양성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비대면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향후 역할에 대해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은, 현직 교사 등을 위한 재교육, 보수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는 교사 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므로, 양성을 통한 자격자의 배출보다는 초중등 교사와의 일관적 계열성 등을 고려할 때 재교육 중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관의 재교육 내용,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안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사 수급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면교육 방식 수업 비중을 확대하여 방송대 등 원격교육 기관이 양성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 질 제고의 측면과 대면 중심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각 과목당 대면 수업 비율을 70% 수준으로 높일 수 있고 교사 양성 기관 평가를 통과하여 양성기관으로서 승인을 받는 조건에 이를 수 있다면 양성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면교육 중심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준수하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한시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 바. 영유아 교직이수 교원자격 수여 비율 조정

현재 일반대학 아동/보육 관련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에서 교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원 숫자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에 아동관련학과 영유아교육전공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운영할 시 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서 보면, 아동관련학과에서 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정원 대비 비율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현행과 같이 10% 이내로 제한하자면 교과목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능하므로 비율을 50%까지 늘려서 자격 이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게 영유아교육과 졸업으로 학과중심 자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일반대학 영유아/아동 관련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한 영유아교원자격 취득 가능 비율로 4가지의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1안은 영유아교육과로 교원 자격 부여 범위를 제한하여, 일반대 교직이수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둘째, 2안은 현행의 10% 이내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이다.

셋째, 3안은 학과내 교과목 개설 가능성 등 운영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보다 교직이수 비율을 50%이내까지로 확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V

## 영유아교원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 01 분석 방향
- 02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2031)
- 03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 (2031)
- 04 영유아교사 수급 예측에 따른 관리방안



## V. 영유아교원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2027년 시행 예정인 통합학과에서 양성되는 통합기관의 영유아교사(이하 영유아교사)의 자격 취득 시점은 2031년으로, 이때는 기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교사로 자격을 변경하거나 여러 이유로 기존의 자격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교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심화되는 저출생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보통합의 시안 중 교사 양성 및 자격 관련 계획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일별 운영모델 등 교사 배치와 관련한 주요 계획을 조건으로 하여 2031년 이후의 채용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교사 양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사 양성 시기를 기준으로 영유아교사의 채용 규모를 산정하고, 영유아교육보육 현장과 양성학과가 모두 지속가능한 수준의 규모로 운영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분석 방향

#### 가. 시계열 또는 모델링이 아닌 정책요인 중심의 수요 규모 산정

##### 1) 활용가능한 자료의 한계

채용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통계 모델 개발은 기본적으로 시계열을 이용한 예측을 의미한다. 시계열은 과거의 변동 경향을 기초로 미래의 경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축적된 관련 자료의 확보를 기본 전제로 한다. 시계열을 이용한 수요 예측으로는 박진아 외(2015)가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별, 유형별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시계열로 수요를 전망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적정 수준의 양성정원 추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채용 규모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자료는 현재 생성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방법상의 한계

이재희 외(2023)는 수요 예측에 있어서 시계열 방식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짐을 비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유의미한 예측 변인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률을 예측하는 상위 5개 변인 중 4개는 연령별 아동수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윤충식과 정승렬(2022) 또한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예측한 초등돌봄 수요는 실제 돌봄수요에 상당히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한 변수가 통계청, 행안부, 공동주택관리 시스템 등에서 확보한 총 292종에 달하며, 실제 분석에 사용한 지역은 신규 공동주택이 개발된 1개 기초단체에 제한되어, 전국 수준의 추계가 아닌 사례연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3) 정책변수 중심의 수요 예측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학과 개편 이후 영유아교사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일지를 예상하여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정원, 즉 공급 규모를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사 수요는 통합기관을 이용할 영유아의 수, 통합기관에서 적용할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운영모델을 적용한 전체 교사 수, 현직 교사 중 통합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격 전환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교사 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나. 분석 자료의 특성과 정책 변수 활용을 위한 가정

### 1) 기본 가정

첫째, 채용 규모를 산정하는 지역별 단위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광역에 해당하는 시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세종시의 경우 교원양성대학이 부재하므로<sup>6)</sup>, 교사 수요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예측하되, 교사 공급은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6) 현재 세종시에는 4년제 대학으로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전가톨릭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2·3년제 대학으로는 한국영상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를 양성하지 않음.



둘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셋째, 정책변수는 2024년 6월 28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하 시안)’ 및 2024년 8월 20일에 발표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내용을 기초로 투입하였다. 단, 시안에서 명확하게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급 규모 산출시 노이즈를 발생하여 산출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시안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합기관에서의 교사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자격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은 오류의 여지가 많으므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제시된 영아교사/유아교사 구분안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② 보조교사의 경우 0-2세 2학급당 1명의 배치만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누리보조교사 등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시안에서 정한 유아반 교사배치기준이 1:8로 매우 낮은바, 기본운영 8시간의 교사 배치기준을 1인의 담임교사와 1인의 연장과정 교사로 보고, 1일 기준 학급당 필요 교사의 수를 2인으로 교사 수요를 산출하였다.

단, 보조교사의 경우 영아반 2학급 기준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영아반의 배치 교사의 50%를 영아반 보조교사의 수로 산출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규모를 확인하였으나, 기관별로 영아반의 수가 홀수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산출 가능한 보조교사 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영아반 보조교사의 수는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되, 교사 수요 추계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돌봄교사의 경우 시안에서 기본운영시간 외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그 규모를 파악하였으나, 교사 수요 추계에서는 제외하였다.

③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의 배출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교사교육원은 제외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 등의 원격대학 또한 시안에서 제시한 대면교육에 부분적으로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출규모가 상당히 커서 자격배출자 수치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현재의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통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중복취득하고 있으나, 이후 영유아교사 자격의 경우 1개의 자격만이 취득가능하다. 이에 보육교사 양성학과에서 유아교육학과는 제외하였다.

넷째, 교사의 수요 추정은 일반교사의 수요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즉, 장애영유아, 다문화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사 수요에 대한 산출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방학 및 휴일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와 대체교사 또한 통합기관에서 별도로 임용하는 수요가 아닌 바, 수급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 정원충족률 및 폐원율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학급당 영유아수가 법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을 못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높지 않으면 교사 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현재의 정원충족률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폐원율은 기관수의 감소가 실제 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활용 변수 관련 사항

첫째, 영유아 인구수는 교사 수요 예측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장래인구추계 중 저위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교육통계의 경우 현재 조사기준일(4월 1일) 통계와 하반기 통계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월 기준의 교육통계를 사용하였다.

셋째, 교사자료의 경우 교육통계의 유치원 교사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 2종으로 구분되어 그 수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sup>7)</sup>, 보육통계에서는 담임교사 외 11종의 다양한 직급의 보육교사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기존 교사 규모 산출 시 유치원 교사는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교사 수치에 모두 포함하였으며, 보육교사는 전체 보육교사 수치와 담임교사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넷째, 양성과정의 교사수 중 유치원교사는 학과의 정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육대학원이나 연도별로 정원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격증 취득자수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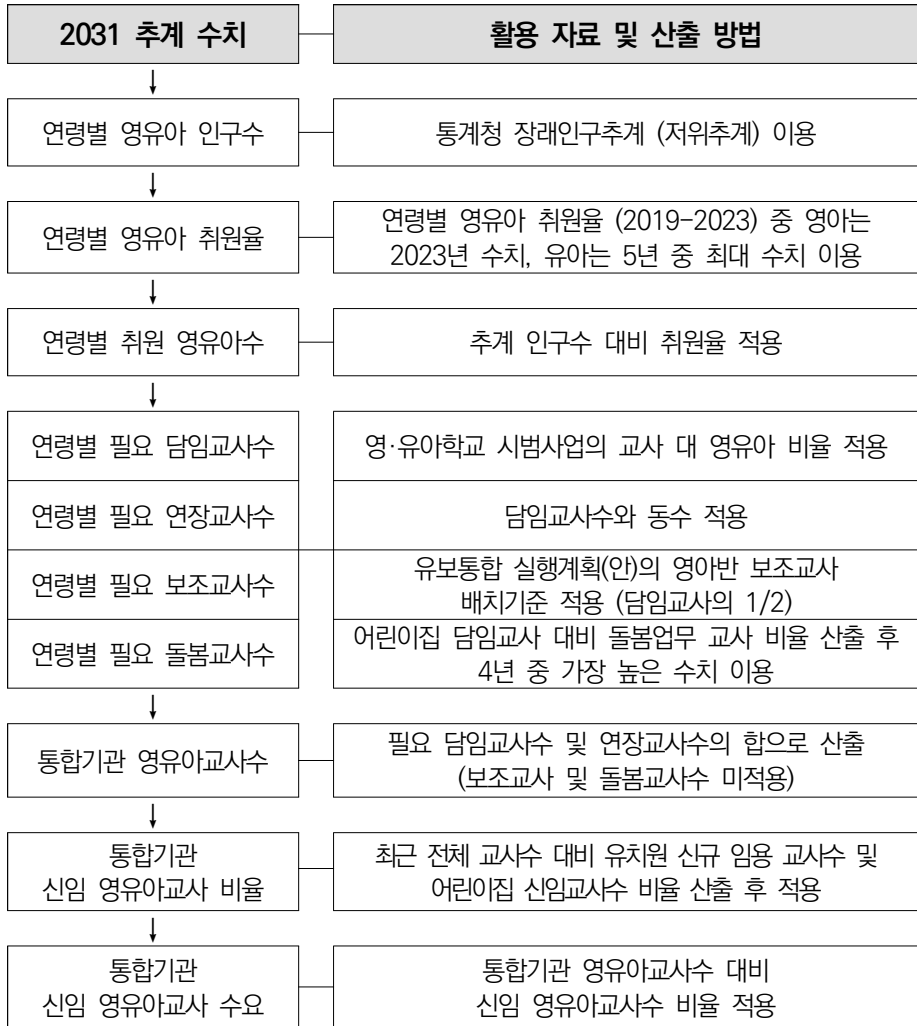
---

7)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 외의 교사는 수석교사와 보직교사가 있음.

## 2.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2031)

본 연구에서 2031년도에 요구되는 영유아교사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와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V-2-1]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예측 방법



## 가. 영유아 인구수

지난 5년간의 영유아인구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0세의 경우 광주와 대전 및 세종에서 2021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1년에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재보다 0세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세종에서는 202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V-2-1〉 영유아 인구수: 0세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51,145	45,165	43,410	40,742	37,771	34,974
부산	16,478	14,785	14,112	13,792	13,518	10,629
대구	12,896	10,935	10,408	9,994	9,752	8,394
인천	17,616	15,253	14,603	14,617	14,568	13,044
광주	8,189	7,147	7,819	7,333	7,020	6,149
대전	8,221	7,303	7,342	7,651	7,590	6,507
울산	7,324	6,375	5,926	5,275	5,146	4,140
세종	3,657	3,344	3,445	3,100	3,016	3,215
경기	82,540	76,810	74,799	74,114	72,555	65,550
강원	8,229	7,736	7,258	7,240	7,151	6,340
충북	9,051	8,399	8,030	7,337	7,228	7,071
충남	13,064	11,733	10,759	10,106	9,845	9,746
전북	8,703	7,947	7,296	6,912	6,837	6,017
전남	10,614	9,445	8,242	7,713	7,701	6,550
경북	14,148	12,555	11,755	11,097	10,899	8,994
경남	18,856	16,327	15,087	13,704	13,453	10,915
제주	4,401	3,828	3,655	3,523	3,437	3,052
전체	295,132	265,087	253,946	244,250	237,487	211,287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1세 인구의 경우 2019년 이후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의 경우 충북에서 소폭의 증가가 있었으며, 2023년에는 부산과 인천, 경기에서 1세 인구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2031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세 영아의 수가 2023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V-2-2〉 영유아 인구수: 1세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54,779	50,482	44,904	43,950	41,087	32,665
부산	19,173	17,149	15,294	14,862	14,937	10,561
대구	14,564	13,326	11,371	11,014	11,059	8,388
인천	19,351	17,615	15,994	15,716	15,777	12,891
광주	9,440	8,656	7,798	8,099	8,012	6,110
대전	9,361	8,488	7,668	7,924	7,891	6,410
울산	8,129	7,398	6,415	6,071	5,974	4,136
세종	4,043	3,807	3,526	3,611	3,513	3,106
경기	94,410	88,101	81,421	79,007	79,078	64,844
강원	8,617	8,636	8,081	7,610	7,571	6,331
충북	10,712	9,382	8,730	8,312	8,256	7,000
충남	14,555	13,382	12,061	11,191	11,081	9,613
전북	10,107	9,047	8,197	7,584	7,501	5,992
전남	11,094	10,725	9,418	8,492	8,378	6,546
경북	16,036	14,495	12,910	11,985	11,830	8,941
경남	21,689	19,365	16,812	15,534	15,055	10,973
제주	4,910	4,597	4,033	3,826	3,753	3,046
전체	330,970	304,651	274,633	264,788	260,753	207,553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2세 인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시도에서 연도별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31년에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감소의 폭이 커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2031년의 2세 규모가 2019년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2031년의 인구가 2019년 인구의 반수에 못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표 V-2-3〉 영유아 인구수: 2세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59,128	53,099	48,900	44,177	43,013	30,766
부산	21,401	19,312	17,336	15,580	15,302	10,467
대구	16,408	14,626	13,434	11,667	11,509	8,366
인천	20,869	19,126	17,905	16,671	16,591	12,773
광주	10,660	9,663	8,976	7,980	8,027	6,064
대전	10,659	9,347	8,640	7,922	7,882	6,253
울산	9,158	8,022	7,310	6,433	6,285	4,140
세종	4,383	4,174	3,952	3,655	3,638	3,053
경기	102,974	96,802	90,332	82,889	82,335	63,955
강원	9,269	8,752	8,683	8,222	8,042	6,241
충북	11,445	10,742	9,352	8,689	8,545	6,879
충남	15,829	14,425	13,317	12,188	11,983	9,445
전북	11,496	10,130	9,143	8,302	8,181	5,940
전남	11,924	10,884	10,423	9,299	9,032	6,470
경북	17,534	15,853	14,369	12,838	12,426	8,824
경남	24,394	21,667	19,376	16,885	16,516	11,003
제주	5,369	4,982	4,672	4,132	4,076	3,053
전체	362,900	331,606	306,120	277,529	273,383	203,692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3세 유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지역과 연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서울에서 2023년에 유일하게 다소간 인구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31년의 3세 인구수는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2019년 대비 반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서울, 부산, 경북, 경남의 경우 2019년 인구의 절반에 크게 못 미쳐, 감소폭이 매우 두드러졌다.

〈표 V-2-4〉 영유아 인구수: 3세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65,734	57,331	51,445	48,120	43,637	29,066
부산	24,411	21,565	19,420	17,495	17,062	10,330
대구	18,791	16,445	14,643	13,672	13,238	8,299
인천	23,781	20,685	19,411	18,560	18,032	12,593
광주	12,333	10,801	9,872	9,120	8,928	5,979
대전	12,064	10,596	9,301	8,752	8,461	6,044
울산	10,584	9,069	7,939	7,279	7,038	4,127
세종	4,814	4,566	4,345	4,114	4,008	3,011
경기	117,921	105,278	98,341	91,427	89,101	62,612
강원	10,538	9,396	8,832	8,789	8,618	6,094
충북	12,786	11,439	10,745	9,355	8,992	6,725
충남	17,864	15,791	14,392	13,386	13,103	9,243
전북	12,877	11,469	10,147	9,190	8,940	5,861
전남	13,371	11,764	10,781	10,342	10,027	6,367
경북	20,150	17,312	15,876	14,248	13,738	8,661
경남	27,970	24,279	21,601	19,332	18,497	10,980
제주	6,029	5,464	5,066	4,794	4,644	3,049
전체	412,018	363,250	332,157	307,975	278,050	199,041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주민등록상 4세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3세반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2023년 세종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인구수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 모든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31년 예상되는 4세의 수를 2019년과 비교하여 보면 반수를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2019년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발생하는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으나, 4세의 인구 감소가 2031년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표 V-2-5〉 영유아 인구수: 4세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70,013	64,404	55,879	50,630	47,506	27,332	
부산	26,500	24,563	21,616	19,543	18,972	10,140	
대구	20,148	18,868	16,501	14,875	14,535	8,196	
인천	25,940	23,641	20,841	19,985	19,888	12,320	
광주	13,310	12,503	10,884	9,967	9,655	5,862	
대전	13,119	11,950	10,520	9,364	9,273	5,807	
울산	11,322	10,471	8,934	7,907	7,687	4,086	
세종	5,101	5,010	4,730	4,484	4,500	2,966	
경기	127,335	119,777	106,691	98,890	97,050	60,889	
강원	11,236	10,689	9,517	8,899	8,786	5,932	
충북	13,533	12,815	11,395	10,697	10,368	6,546	
충남	19,270	17,742	15,865	14,440	14,097	9,010	
전북	14,360	12,905	11,469	10,220	9,867	5,762	
전남	14,272	13,216	11,699	10,770	10,548	6,247	
경북	21,529	19,846	17,224	15,681	15,350	8,470	
경남	30,643	27,882	24,228	21,504	20,762	10,905	
제주	6,471	6,147	5,620	5,192	5,131	3,031	
전체	444,102	412,429	363,613	333,048	323,975	193,501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2019년 이후 4세반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5세 유아의 수는 2020년에 다수의 시도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는 다시 인구수의 감소세가 뚜렷하여 2031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5세의 인구수가 2019년 인구수의 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V-2-6〉 영유아 인구수: 5세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69,139	68,808	62,987	55,088	50,291	27,065
부산	26,130	26,588	24,566	21,678	21,129	10,390
대구	20,044	20,143	18,951	16,661	16,255	8,441
인천	25,667	25,731	23,768	21,355	20,935	12,514
광주	13,487	13,394	12,545	10,974	10,696	5,984
대전	12,880	12,950	11,841	10,555	10,172	5,820
울산	11,305	11,231	10,345	8,892	8,656	4,189
세종	4,839	5,307	5,209	4,889	4,881	3,020
경기	126,091	128,940	121,200	107,169	105,008	61,531
강원	11,207	11,374	10,782	9,611	9,566	5,990
충북	13,411	13,562	12,848	11,414	11,209	6,609
충남	19,035	19,205	17,707	15,899	15,474	9,105
전북	14,509	14,398	12,917	11,491	11,137	5,890
전남	14,268	14,266	13,208	11,689	11,425	6,350
경북	21,145	21,326	19,725	17,028	16,478	8,587
경남	30,796	30,544	27,823	24,076	23,469	11,235
제주	6,530	6,600	6,317	5,729	5,621	3,123
전체	440,483	444,367	412,739	364,198	352,402	195,843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6세 인구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일부 시도에서 다소 오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2031년에는 대부분 2019년 6세 인구의 반에 못 미치며, 2023년 인구수의 과반 정도의 수준이 예측되었다.

〈표 V-2-7〉 영유아 인구수: 6세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31
서울	69,031	68,085	67,581	62,376	55,100	28,473
부산	25,864	26,220	26,603	24,621	21,787	11,122
대구	20,047	20,147	20,216	19,272	17,059	9,082
인천	25,631	25,361	25,827	24,242	21,797	13,238
광주	13,813	13,631	13,547	12,717	11,144	6,405
대전	13,143	12,755	12,805	11,861	10,571	6,061
울산	11,101	11,203	11,101	10,262	8,836	4,484
세종	4,905	5,109	5,539	5,383	4,939	3,237
경기	125,332	127,560	130,040	121,360	107,355	64,867
강원	11,481	11,283	11,523	10,843	9,546	6,298
충북	13,593	13,403	13,551	12,844	11,335	6,938
충남	19,371	18,957	18,131	17,762	15,932	9,625
전북	14,934	14,538	14,435	12,900	11,487	6,274
전남	14,653	14,124	14,159	13,139	11,496	6,708
경북	21,299	20,855	21,185	19,423	16,593	9,088
경남	30,570	30,731	30,492	27,690	23,952	12,085
제주	6,594	6,748	6,820	6,467	5,811	3,364
전체	441,362	440,710	443,555	413,162	364,740	207,349

주: 2031년 인구수는 장래인구 저위추계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 나. 담임교사 수요

2031년 담임교사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취원율을 기준으로 2031년의 취원율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취원 영유아수를 산출한 후 교사수를 예측하였다.

### 1) 영유아 취원율 (2019-2023)

0세반의 취원율은 2019년 이후 모든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급여 정책이 시작된 2023년의 경우 취원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부 시도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시도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 이에 0세의 취원율은 2022년과 2023년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표 V-2-8〉 영유아 취원율: 0세반

구분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18.39	19.34	20.92	23.34	24.67
부산	14.96	15.39	17.57	19.55	20.04
대구	15.50	16.51	19.04	22.72	23.39
인천	17.67	18.78	20.96	23.00	24.63
광주	25.19	24.27	26.46	28.45	26.30
대전	23.50	22.85	23.99	24.84	24.24
울산	15.16	16.05	18.56	23.12	21.81
세종	19.69	20.30	21.14	24.66	24.55
경기	21.34	21.27	23.12	25.11	25.25
강원	21.79	20.16	21.99	23.73	23.59
충북	20.41	20.00	23.10	25.96	25.19
충남	21.01	20.62	24.00	26.53	25.73
전북	26.08	25.77	29.11	30.52	29.64
전남	18.40	20.06	23.04	26.55	25.16
경북	21.82	21.65	24.50	25.63	23.82
경남	22.35	22.59	25.74	28.36	25.62
제주	25.34	27.32	29.28	31.61	30.17

주: 연도별 0세 및 1세의 어린이집 0세반 이용률에 해당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1세반의 취원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2023년까지 지속되었다. 광주,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2023년의 1세반 취원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V-2-9〉 영유아 취원율: 1세반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77.09	76.07	79.03	83.24	86.12
부산	77.44	76.47	79.87	83.74	85.70
대구	80.78	80.52	84.47	89.58	91.44
인천	78.49	76.55	79.81	84.40	87.95
광주	90.44	89.80	91.73	95.83	94.57
대전	87.73	86.38	87.88	89.16	90.36
울산	82.97	81.25	82.76	87.38	88.61
세종	79.10	80.21	81.88	85.47	89.80
경기	79.90	77.14	80.73	85.00	86.40
강원	83.76	81.74	81.53	84.40	82.50
충북	82.34	81.32	86.55	89.93	91.30
충남	85.63	81.84	84.92	88.32	88.22
전북	85.09	83.22	87.16	89.26	85.39
전남	81.42	79.29	83.76	84.51	83.96
경북	81.83	81.11	84.00	86.52	84.48
경남	84.38	83.30	87.17	89.76	85.20
제주	92.33	92.25	90.63	93.25	91.81

주: 연도별 2세의 어린이집 1세반 이용률에 해당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지난 5년간의 2세반 취원율은 서울과 충북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세반의 대상 연령은 부모급여 등의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추세가 정책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23년의 취원율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전망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취원율이 향후 급락하는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표 V-2-10〉 영유아 취원율: 2세반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87.22	84.11	87.04	88.79	90.25
부산	89.73	87.85	89.48	91.52	84.82
대구	93.25	90.88	94.15	95.08	88.77
인천	92.05	87.74	89.93	92.28	90.63
광주	97.26	95.17	97.57	98.95	91.91
대전	94.18	92.25	94.69	95.26	89.91
울산	93.41	91.79	93.49	94.23	87.44
세종	87.54	86.75	89.64	91.98	87.45
경기	90.05	85.67	88.88	92.31	88.55
강원	93.59	91.61	93.47	91.39	86.86
충북	93.23	91.36	94.20	96.97	94.75
충남	94.95	93.50	94.50	95.88	91.79
전북	93.78	92.41	93.64	94.17	89.73
전남	89.47	88.83	90.46	91.35	84.72
경북	93.25	91.95	93.35	94.76	86.89
경남	94.52	92.70	94.64	95.79	88.08
제주	95.09	95.33	95.80	96.27	87.42

주: 연도별 3세의 어린이집 2세반 이용률에 해당함.

-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반 취원률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80% 후반에서 90%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모든 시도에서 2021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취원율은 충남의 92.81%이며, 그 외 90%를 상회하는 지역은 광주와 강원에 불과하다.

〈표 V-2-11〉 영유아 취원율: 3세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84.66	83.36	83.00	83.13	83.46
부산	87.04	85.89	86.44	86.09	81.46
대구	91.81	89.54	90.19	90.68	87.76
인천	89.97	88.76	89.98	89.42	87.97
광주	94.55	92.57	93.15	93.09	90.01
대전	91.90	90.14	90.63	91.11	86.29
울산	89.60	88.63	88.95	89.33	84.83
세종	86.83	86.45	86.45	87.60	83.42
경기	88.95	87.18	87.77	89.07	85.81
강원	93.65	91.73	91.67	92.00	90.77
충북	94.49	91.94	92.90	93.07	85.46
충남	95.58	93.98	95.42	95.72	92.81
전북	94.46	93.13	93.56	93.34	88.82
전남	91.54	91.79	92.10	91.39	89.76
경북	93.36	93.27	93.89	92.84	85.95
경남	92.86	90.85	92.41	92.63	87.14
제주	93.40	92.86	93.17	92.37	88.38

주: 연도별 4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3세반 이용률에 해당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6)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main.do>). 내부자료

4세반의 취원율은 또한 2021년에 일부 시도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난 5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취원율이 90%를 상회하는 지역에 충남과 충북이 해당하며, 서울은 80% 미만으로 하락하여, 4세반의 취원율은 시도별로 편차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12〉 영유아 취원율: 4세반

구분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81.94	80.84	80.05	78.98	78.74
부산	88.25	87.31	87.64	86.87	80.42
대구	92.42	90.75	90.88	91.09	85.52
인천	91.90	90.63	90.84	91.04	89.13
광주	95.71	94.06	93.20	93.81	89.38
대전	94.22	92.53	92.23	91.95	85.04
울산	90.77	89.06	89.31	89.74	81.83
세종	87.23	86.28	86.14	86.05	81.44
경기	89.82	87.27	88.41	88.70	84.52
강원	93.99	93.11	93.03	92.39	86.68
충북	94.66	93.29	94.22	94.42	90.16
충남	96.45	95.40	96.15	96.94	90.88
전북	94.82	94.17	94.37	94.45	86.71
전남	93.92	92.49	94.42	93.58	87.33
경북	95.01	94.72	94.24	94.97	89.06
경남	94.11	92.73	93.77	93.93	85.88
제주	92.57	92.36	91.70	92.58	85.39

주: 연도별 5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4세반 이용률에 해당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6)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main.do>). 내부자료

5세반의 취원율은 유아반 중 가장 높아, 2023년의 경우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를 제외하면 모두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은 98% 이상으로 6세의 대부분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반면, 서울은  
80% 미만으로 나타나, 시와 도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에 2023년의 취원율이  
낮은 서울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의 5세반 취원율은 감소나 증가의 추세 없이 큰  
변동은 없었다.

〈표 V-2-13〉 영유아 취원율: 5세반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82.75	80.02	80.15	78.69	78.01
부산	90.02	88.15	88.92	88.70	89.04
대구	93.61	93.19	92.90	92.74	92.93
인천	92.54	91.31	91.12	91.33	92.89
광주	95.63	95.36	95.44	95.09	95.76
대전	94.26	93.75	93.67	93.08	92.70
울산	93.21	92.40	92.33	92.81	93.14
세종	86.01	86.91	84.22	86.38	86.66
경기	90.19	87.48	88.32	89.15	89.57
강원	95.27	94.18	94.07	94.83	94.65
충북	95.87	93.59	95.34	94.94	95.55
충남	97.45	96.15	102.05	97.71	98.09
전북	97.98	97.41	97.63	98.02	97.92
전남	97.85	96.15	96.88	97.53	97.69
경북	98.24	97.66	97.39	98.31	98.70
경남	95.86	95.19	95.50	96.51	96.96
제주	94.63	93.49	93.27	93.15	93.50

주: 연도별 6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5세반 이용률에 해당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6)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main.do>). 내부자료



## 2) 영유아 취원률 및 영유아수 예측치(2031)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시도별 취원율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며, 연도별, 연령별로도 상이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취원율은 코로나19 발생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부모급여 제도 시행이라는 정책변수가 발생하여 이례적인 추이의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취원율은 정책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2023년 수치를, 유아의 취원율은 지난 5년간 시도별로 가장 높았던 취원률을 2031년도에 운영될 통합기관의 취원율로 보고, 시도별, 연령별로 표 V-2-14에 제시하였다. 단, 충남 5세반의 경우 2021년 취원율이 100%를 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로 대체하였다.

〈표 V-2-14〉 영유아 취원율: 2031년

단위: %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서울	24.67	86.12	90.25	84.66	81.94	82.75
부산	20.04	85.70	84.82	87.04	88.25	90.02
대구	23.39	91.44	88.77	91.81	92.42	93.61
인천	24.63	87.95	90.63	89.98	91.90	92.89
광주	26.30	94.57	91.91	94.55	95.71	95.76
대전	24.24	90.36	89.91	91.90	94.22	94.26
울산	21.81	88.61	87.44	89.60	90.77	93.21
세종	24.55	89.80	87.45	87.60	87.23	86.91
경기	25.25	86.40	88.55	89.07	89.82	90.19
강원	23.59	82.50	86.86	93.65	93.99	95.27
충북	25.19	91.30	94.75	94.49	94.66	95.87
충남	25.73	88.22	91.79	95.72	96.94	100.00
전북	29.64	85.39	89.73	94.46	94.82	98.02
전남	25.16	83.96	84.72	92.10	94.42	97.85
경북	23.82	84.48	86.89	93.89	95.01	98.70
경남	25.62	85.20	88.08	92.86	94.11	96.96
제주	30.17	91.81	87.42	93.40	92.58	94.63

주: 통합기관의 이용률 예측치에 해당함

2031년 취원율 예측치를 이용하여, 2031년 연령별 인구수 기준 취원 영유아수를 산출하였다. 2031년 연령별 인구수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중 저위추계 수치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연령의 경우 0세반은 1세 이하, 1세반은 2세, 2세반은 3세, 3세반은 4세, 4세반은 5세, 5세반은 6세이며, 입학유예 아동의 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0세반은 약 10만명, 1세~4세반은 17.7만명, 5세반은 19만명 가량이 통합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V-2-15〉 취원 영유아수: 2031년

단위: 명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서울	16,688	26,497	26,233	23,140	22,176	23,561
부산	4,246	8,970	8,762	8,826	9,170	10,012
대구	3,925	7,650	7,367	7,524	7,801	8,502
인천	6,388	11,234	11,413	11,084	11,501	12,250
광주	3,225	5,735	5,495	5,542	5,728	6,125
대전	3,131	5,650	5,434	5,336	5,484	5,713
울산	1,805	3,668	3,609	3,661	3,803	4,179
세종	1,552	2,742	2,633	2,575	2,634	2,784
경기	32,918	55,256	55,444	54,158	55,266	58,501
강원	2,989	5,149	5,294	5,555	5,630	6,000
충북	3,544	6,281	6,372	6,186	6,256	6,652
충남	4,981	8,333	8,484	8,612	8,782	9,625
전북	3,560	5,072	5,259	5,443	5,585	6,147
전남	3,295	5,432	5,394	5,719	5,964	6,564
경북	4,272	7,455	7,526	7,907	8,158	8,928
경남	5,608	9,374	9,672	10,126	10,573	11,584
제주	1,840	2,803	2,666	2,831	2,891	3,183
전체	103,967	177,301	177,057	174,225	177,402	190,310

주: 통합기관의 연령별 취원아수 예측치에 해당함.

## 3)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예측치(2031)

통합기관의 담임교사 배치기준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시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아의 경우 1:8의 비율을 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수 추계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0세 2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3명, 4세 15명, 5세 18명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에 시범사업의 교사배치기준을 적용하여 2031년 예상되는 취원 영유아수 대비 담임교사의 수를 연령별로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0세반 5.2만명, 1세반 3.5만명, 2세반 2.5만명의 필요하다. 반면 유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은 3세반의 경우 1.3만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한 데 반해 4세반은 1.1만명, 5세는 1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담임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2-16〉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2031년

구분	단위: 명						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서울	8,344	5,299	3,748	1,780	1,386	1,309	21,866
부산	2,123	1,794	1,252	679	573	556	6,977
대구	1,962	1,530	1,052	579	488	472	6,083
인천	3,194	2,247	1,630	853	719	681	9,324
광주	1,612	1,147	785	426	358	340	4,668
대전	1,566	1,130	776	410	343	317	4,542
울산	902	734	516	282	238	232	2,904
세종	776	548	376	198	165	155	2,218
경기	16,459	11,051	7,921	4,166	3,454	3,250	46,301
강원	1,495	1,030	756	427	352	333	4,393
충북	1,772	1,256	910	476	391	370	5,175
충남	2,490	1,667	1,212	662	549	535	7,115
전북	1,780	1,014	751	419	349	342	4,655
전남	1,647	1,086	771	440	373	365	4,682
경북	2,136	1,491	1,075	608	510	496	6,316
경남	2,804	1,875	1,382	779	661	644	8,145
제주	920	561	381	218	181	177	2,438
전체	51,982	35,460	25,294	13,402	11,090	10,574	147,802

주: 담임교사 배치기준을 0세 2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3명, 4세 16명, 5세 18명으로 산출한 수치임.

## 다. 비담임교사 수요

### 1) 통합기관 연장교사수 예측치(2031)

통합기관의 경우 기본운영시간 8시간을 모두 운영하게 되므로, 연장교사는 모든 학급에 배치되는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이에 연장교사의 수는 담임교사수와 동일한 수로 산출 가능하다. 이에 14.7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장교사의 수요가 예측되었다.

〈표 V-2-17〉 통합기관 연장교사수: 2031년

단위: 명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계
서울	8,344	5,299	3,748	1,780	1,386	1,309	21,866
부산	2,123	1,794	1,252	679	573	556	6,977
대구	1,962	1,530	1,052	579	488	472	6,083
인천	3,194	2,247	1,630	853	719	681	9,324
광주	1,612	1,147	785	426	358	340	4,668
대전	1,566	1,130	776	410	343	317	4,542
울산	902	734	516	282	238	232	2,904
세종	776	548	376	198	165	155	2,218
경기	16,459	11,051	7,921	4,166	3,454	3,250	46,301
강원	1,495	1,030	756	427	352	333	4,393
충북	1,772	1,256	910	476	391	370	5,175
충남	2,490	1,667	1,212	662	549	535	7,115
전북	1,780	1,014	751	419	349	342	4,655
전남	1,647	1,086	771	440	373	365	4,682
경북	2,136	1,491	1,075	608	510	496	6,316
경남	2,804	1,875	1,382	779	661	644	8,145
제주	920	561	381	218	181	177	2,438
전체	51,982	35,460	25,294	13,402	11,090	10,574	147,802

## 2) 통합기관 보조교사수 예측치(2031)

유보통합 시안에 따르면 보조교사의 경우 영아반에 한해 2개 학급당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통합기관 영아반 담임교사 수의 50%로 보조교사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산출 방식은 기관당 영아반의 수가 홀수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 보조교사 수의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안에 제시된 영아반 보조교사 외 현재의 누리보조교사와 같이 다양한 보조교사가 배치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산출방식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예측되는 보조교사 수요는 56,366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V-2-18〉 통합기관 보조교사수: 2031년

구분	단위: 명				
	0세반	1세반	2세반	영아반 담임교사수	보조교사수
서울	4,172	2,650	1,874	17,391	8,695
부산	1,062	897	626	5,169	2,584
대구	981	765	526	4,545	2,272
인천	1,597	1,123	815	7,071	3,536
광주	806	573	393	3,544	1,772
대전	783	565	388	3,472	1,736
울산	451	367	258	2,152	1,076
세종	388	274	188	1,700	850
경기	8,230	5,526	3,960	35,431	17,715
강원	747	515	378	3,281	1,640
충북	886	628	455	3,939	1,969
충남	1,245	833	606	5,369	2,684
전북	890	507	376	3,546	1,773
전남	824	543	385	3,504	1,752
경북	1,068	745	538	4,702	2,351
경남	1,402	937	691	6,060	3,030
제주	460	280	190	1,861	931
전체	25,992	17,728	12,647	112,737	56,366

주: 영아 2개 학급당 배치되는 보조교사 수치임.

### 3) 통합기관 돌봄교사수 예측치(2031)

유보통합 시안에 따르면 기본운영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 외에 아침과 저녁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유치원의 돌봄 이용 영유아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수치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수 대비 돌봄업무 담당 교사수 비율을 우선적으로 산출하였다.<sup>8)</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통계에는 교사의 유형이 담임교사, 대체교사, 연장교사, 24시간교사, 야간연장교사(월급여형, 단시간형), 보조교사(일반, 누리과정), 대체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돌봄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는 24시간교사, 야간연장교사 및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합산한 수로 보았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돌봄교사의 수는 2021년 약 2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2만명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교사수 비율로 산출하면 2020년 이후 12.49%에서 13.88%까지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20%를 상회하여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교사수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제주는 8%를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대체로 13% 내외의 비율로 산출되어,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V-2-19〉 어린이집 돌봄교사수 및 비율

단위: %, 명

구분	돌봄교사수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교사수 비율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서울	3,272	3,403	3,284	3,385	11.36	12.30	12.15	12.72
부산	1,103	1,129	1,053	1,055	11.79	12.54	12.10	12.57
대구	708	988	926	923	9.36	13.66	13.24	13.57
인천	1,213	1,228	1,209	1,268	12.40	12.76	12.74	13.16
광주	727	770	700	697	13.03	14.23	13.37	14.11
대전	986	996	926	919	19.18	20.41	19.80	20.49

8) 2019년 보육통계에서는 교사의 유형 분류가 상세하지 않아, 돌봄교사 수의 산출이 불가하였음.

구분	돌봄교사수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교사수 비율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울산	486	480	460	422	11.42	12.01	11.97	11.64
세종	251	252	253	262	11.85	11.95	11.73	12.35
경기	6,782	6,941	6,796	7,255	13.62	14.14	14.03	15.22
강원	559	539	515	529	11.53	11.18	10.79	11.60
충북	716	761	699	705	12.31	13.40	12.83	13.36
충남	798	816	793	767	10.42	11.00	11.08	11.02
전북	934	957	827	820	15.61	16.75	15.38	16.14
전남	780	827	717	696	12.89	13.77	12.33	12.44
경북	996	1,024	978	922	11.59	12.32	12.57	12.88
경남	1,414	1,641	1,459	1,496	12.14	14.74	14.14	15.94
제주	275	282	245	240	8.84	9.38	8.43	8.73
전체	22,000	23,034	21,840	22,361	12.49	13.46	13.14	13.88

주: 2019년 보육통계에서는 야간연장 교사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다음으로 2031년의 돌봄교사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교사수 비율은 지난 4년간 시도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4년간 수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담임교사 수 대비 돌봄교사수 비율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2031년 영유아교사 중 담임교사의 예측치(표 V-2-16 참조)를 기준으로 2031년의 돌봄교사수는 전국적으로 2만명을 상회하는 정도로 예상되었다. 궤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7천명 이상의 돌봄교사가 필요하며, 서울, 경남, 인천의 순으로 예상되는 돌봄교사의 규모가 컸다.

〈표 V-2-20〉 통합기관 돌봄교사수 및 비율: 2031년

단위: %, 명

구분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교사수 비율	돌봄교사수 예측치
서울	12.72	2,781
부산	12.57	877
대구	13.66	831
인천	13.16	1,227
광주	14.23	664
대전	20.49	931
울산	12.01	349
세종	12.35	274
경기	15.22	7,047
강원	11.60	510
충북	13.40	693
충남	11.08	788
전북	16.75	780
전남	13.77	645
경북	12.88	814
경남	15.94	1,298
제주	9.38	229
전체	-	20,737

주: 돌봄교사의 합은 전국 수준의 돌봄교사수 비율을 이용한 수치가 아니며, 산출된 시도별 돌봄교사수의 합에 해당함.

## 라. 통합기관 교사 수요 (2031)

이상과 같이 산출된 통합기관의 담임교사, 연장교사, 보조교사 및 돌봄교사는 모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자들로, 이들의 합산이 통합기관 운영에 요구되는 교사 수요이다. 특히 이 수치는 누리보조교사나 대체교사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교사 수요의 최대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시안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역할을 모두 포함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기관의 영유아교사 수요를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12만명에 이



르는 교사가 요구되며, 가장 수요 규모가 작은 세종의 경우에도 5.6천명 이상의 교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약 37만명 이상의 영유아 교사가 통합기관에서 재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3년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 교사수(46,179명)와 보육교사수(226,134명)의 합산인 272,313명을 상당히 상회하는 규모이다(표 V-2-22~23 참조).

다만, 통합기관의 신입교사 수급 측면에서 볼 때 학급 담당 교사의 수요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에 담임교사와 연장교사를 합산한 수를 통합기관의 교사 수요로 간주하면, 전국적으로는 295,604명으로 예상되어, 2023년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사의 합산을 다소 상회하였다.

〈표 V-2-21〉 통합기관 교사 수요 규모: 2031년

단위: 명

구분	학급당 교사			보조교사	돌봄교사	계
	담임교사	연장교사	소계			
서울	21,866	21,866	43,732	8,695	2,781	55,208
부산	6,977	6,977	13,954	2,584	877	17,415
대구	6,083	6,083	12,166	2,272	831	15,269
인천	9,324	9,324	18,648	3,536	1,227	23,411
광주	4,668	4,668	9,336	1,772	664	11,772
대전	4,542	4,542	9,084	1,736	931	11,751
울산	2,904	2,904	5,808	1,076	349	7,233
세종	2,218	2,218	4,436	850	274	5,560
경기	46,301	46,301	92,602	17,715	7,047	117,364
강원	4,393	4,393	8,786	1,640	510	10,936
충북	5,175	5,175	10,350	1,969	693	13,012
충남	7,115	7,115	14,230	2,684	788	17,702
전북	4,655	4,655	9,310	1,773	780	11,863
전남	4,682	4,682	9,364	1,752	645	11,761
경북	6,316	6,316	12,632	2,351	814	15,797
경남	8,145	8,145	16,290	3,030	1,298	20,618
제주	2,438	2,438	4,876	931	229	6,036
전체	147,802	147,802	295,604	55,435	20,737	372,707

주: 합급당 교사 소계는 담임교사와 연장교사의 합, 합계는 담임교사, 연장교사, 보조교사 및 돌봄교사의 총합임.

## 마. 통합기관 신임교사 수요

### 1) 교사 규모(2019-2023)

지난 5년간 담임교사와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인 유치원 교사수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시도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세종, 경기, 충북, 충남과 같이 교사수가 증가한 지역과 서울, 부산과 같이 감소한 지역이 상존하여, 교사수가 등락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유치원 교사수는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2000명 가량의 유치원 교사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V-2-22〉 유치원 교사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6,530	6,517	6,391	6,446	6,492
부산	3,519	3,467	3,428	3,410	3,523
대구	2,928	2,828	2,938	2,879	2,954
인천	2,853	2,920	2,891	2,909	3,042
광주	1,884	1,963	1,925	1,826	1,925
대전	1,921	1,933	1,915	1,947	1,916
울산	1,186	1,208	1,187	1,167	1,150
세종	861	940	964	1,034	1,057
경기	13,852	13,757	13,839	14,247	14,543
강원	1,474	1,468	1,424	1,384	1,480
충북	1,529	1,619	1,669	1,689	1,875
충남	2,477	2,510	2,555	2,623	2,944
전북	2,358	2,437	2,370	2,298	2,408
전남	2,321	2,379	2,337	2,293	2,408
경북	3,160	3,198	3,140	3,147	3,257
경남	4,097	4,080	4,051	3,981	4,245
제주	412	427	433	416	418
전체	53,362	53,651	53,457	53,696	55,637

주: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합한 수치임.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교육통계연보 유치원현황 직위별 교원수(2024. 7. 1. 인출).

한편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규모는 2022년 경기, 2021년 인천, 세종, 충남, 전남, 2022년 세종에서 소폭 커졌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보육교사의 수는 모든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연도와는 무관하게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사수의 감소는 없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교사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약 1.4만명의 보육교사수 감소가 있었다.

〈표 V-2-23〉 어린이집 보육교사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39,731	38,954	38,436	37,667	37,063
부산	12,613	12,373	12,142	11,739	11,391
대구	10,082	9,791	9,681	9,398	9,198
인천	13,304	13,276	13,312	13,262	13,409
광주	7,687	7,498	7,431	7,221	6,891
대전	7,737	7,616	7,479	7,281	6,958
울산	5,720	5,647	5,448	5,301	5,002
세종	2,609	2,830	2,992	3,049	3,008
경기	68,032	68,266	68,195	68,154	68,095
강원	6,547	6,611	6,652	6,641	6,434
충북	7,685	7,624	7,571	7,349	7,165
충남	10,443	10,322	10,171	9,973	9,788
전북	8,225	8,117	7,937	7,429	7,124
전남	7,747	7,916	8,019	7,724	7,506
경북	11,699	11,444	11,255	10,751	9,970
경남	15,871	15,504	15,231	14,373	13,260
제주	4,241	4,177	4,133	3,992	3,872
전체	239,973	237,966	236,085	231,304	226,134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 2) 신입교사 규모(2019-2023)

연도별로 유치원에 신규 임용된 신입교사의 규모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국공립 유치원의 신입교사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급감하여 전국적으로는 1,391명에서 401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 2024년 국공립 유치원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290명에 불과하며, 서울의 경우 모집인원이 없는 실정이다. 단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386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예년 수준은 아니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표 IV-2-24〉 국공립유치원 신입교사수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229	103	90	42	10	0	15
부산	67	64	50	46	24	10	0
대구	59	22	12	9	3	4	12
인천	35	15	52	65	32	31	30
광주	24	35	17	4	2	3	10
대전	52	20	6	2	2	1	1
울산	10	28	35	11	9	6	6
세종	28	7	22	9	9	9	5
경기	386	379	423	100	47	66	84
강원	25	54	43	21	14	27	32
충북	65	75	15	14	16	9	26
충남	44	61	60	36	32	35	19
전북	62	74	94	24	21	18	54
전남	59	64	69	36	55	20	49
경북	74	41	50	44	46	21	20
경남	140	119	104	75	68	20	10
제주	22	12	19	8	11	10	13
전체	1,391	1,173	1,161	546	401	290	386

주: 2025년은 모집공고 인원이며, 그 외는 신규교사 선발 인원에 해당하며, 선발 인원 중 연도별 최종 발령 인원은 선발 인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2024a).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선발 및 발령 현황. 내부자료

사립유치원에 신규로 임용된 교사수를 사학연금에 신규 가입한 교사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2022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3년 기준 사립유치원 신입교사 수는 약 6,6천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이 2023년의 사립유치원 신입교사 수가 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나타난 현상이나, 강원과 경남에서는 2021년 이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세종의 경우 지역내 유치원 대부분이 국공립이므로, 신입교사수 또한 거의 없었다.

〈표 V-2-25〉 사립유치원 신입교사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1,070	1,054	975	1,119	960
부산	653	606	580	534	549
대구	547	519	517	518	504
인천	434	475	422	484	455
광주	308	269	228	266	223
대전	329	337	323	345	311
울산	174	175	139	146	120
세종	0	2	1	3	0
경기	1,909	1,964	1,887	1,982	1,892
강원	135	134	133	125	145
충북	120	127	116	132	97
충남	267	270	226	281	243
전북	215	237	196	191	180
전남	147	156	136	117	123
경북	405	397	313	363	304
경남	583	519	431	457	527
제주	57	47	20	33	24
전체	7,353	7,288	6,643	7,096	6,65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4). 사립유치원 연도별 신규가입자 및 퇴직자 수 현황. 내부자료

한편 어린이집 신입교사의 경우, 지난 5년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감소 추이는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지역 규모와는 무관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2019년 5.1만명에 달하던 신입교사가 2023년 4.3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신입교사수의 감소는 전체 보육교사수의 감소와 연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26〉 어린이집 신입교사수

구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8,178	7,758	7,448	7,211	6,948
부산	2,824	2,566	2,450	2,342	2,220
대구	2,117	1,870	2,018	1,895	1,774
인천	2,762	2,739	2,672	2,686	2,689
광주	1,665	1,535	1,516	1,373	1,236
대전	1,702	1,643	1,529	1,437	1,273
울산	1,227	1,169	1,091	1,090	925
세종	724	683	689	645	584
경기	14,831	14,091	13,705	14,201	13,710
강원	1,501	1,351	1,347	1,403	1,216
충북	1,624	1,526	1,493	1,409	1,352
충남	2,192	2,146	2,026	1,961	1,906
전북	1,638	1,695	1,510	1,311	1,244
전남	1,482	1,618	1,576	1,352	1,327
경북	2,566	2,403	2,300	2,214	1,817
경남	3,393	3,328	3,204	2,923	2,508
제주	820	719	708	648	692
전체	51,246	48,840	47,282	46,101	43,421

자료: 교육부(2024b). 어린이집 신규교사 선발 및 발령 현황. 내부자료

## 3) 신입교사 비율(2021-2023)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중 신규로 임용된 교사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국공립 유치원 선발인원, 유치원 신입교사수 및 어린이집 신입교사수가 전체 교사수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신규로 임용된 신입교사 비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교사 중 각각 19.03%, 18.86%, 17.91%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현직 교사의 약 18%가 신입교사 임을 알 수 있다.

〈표 V-2-27〉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입교사 비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서울	18.99	18.98	18.18
부산	19.78	19.29	18.73
대구	20.18	19.73	18.77
인천	19.42	20.00	19.31
광주	18.82	18.16	16.57
대전	19.78	19.33	17.87
울산	19.07	19.28	17.13
세종	18.00	16.09	14.59
경기	19.52	19.76	18.94
강원	18.86	19.30	17.37
충북	17.58	17.21	16.21
충남	18.17	18.09	17.13
전북	17.46	15.69	15.16
전남	17.20	15.02	15.18
경북	18.50	18.86	16.38
경남	19.39	18.82	17.73
제주	16.36	15.63	16.95
전체	19.03	18.86	17.91

주: 전체 신입교사 비율은 전국의 교사수 대비 신입교사의 비율에 해당함.

#### 4) 신입교사 수요 규모 예측치(2031)

앞서 산출된 신입교사의 비율을 이용하여, 2031년 통합기관 영유아교사 중 담임교사 예측치(표 V-2-21 참조)를 기준으로 2023년 신입교사 비율을 적용하여 2031년에 필요한 신입교사수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이때 통합기관 영유아교사의 수는 담임교사수와 연장교사수까지 포함한 전체 교사수를 모두 사용하여, 2중으로 신입교사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통합기관의 신입교사 수요는 적게는 2.6만명에서 많게는 5.3만명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V-2-28〉 통합기관 신입교사 수요 규모: 2031년

단위: 명

구분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기준		통합기관 담임교사 및 연장교사수 기준	
	교사 수요 예측치 1	신입교사 수요 규모 1	교사 수요 예측치 2	신입교사 수요 규모 2
서울	21,866	3,975	43,732	7,950
부산	6,977	1,307	13,954	2,613
대구	6,083	1,142	12,166	2,284
인천	9,324	1,800	18,648	3,600
광주	4,668	774	9,336	1,547
대전	4,542	812	9,084	1,624
울산	2,904	498	5,808	995
세종	2,218	324	4,436	647
경기	46,301	8,768	92,602	17,536
강원	4,393	763	8,786	1,527
충북	5,175	839	10,350	1,677
충남	7,115	1,219	14,230	2,438
전북	4,655	706	9,310	1,411
전남	4,682	711	9,364	1,422
경북	6,316	1,035	12,632	2,070
경남	8,145	1,444	16,290	2,888
제주	2,438	413	4,876	826
전체	147,802	26,479	295,604	52,957

주: 1) 2022년 시도별 신입교사 비율을 적용한 수치임.  
 2) 전체에 해당하는 수치는 시도별 신입교사 수요의 합산임.



### 3.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 (2031)

2031년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는 해당 연도 2월에 양성기관인 대학을 졸업하여 자격을 부여받는 신입교사 규모에 해당한다. 2031년의 경우 학과제를 통한 영유아교사 배출이 예상되므로,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학과의 정원을 중심으로 유치원교사의 배출 규모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들어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폐과, 정원조정 등 대학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무전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학별 입학 전형 안내에 대한 3년 예고제에 따라 2026년도 정원을 분석의 범위로 포함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확보 가능한 양성기관 정원을 살펴보았다.

#### 가.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유치원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양성기관은 크게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일반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으로 구분된다. 이 중 4년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와 일반대학 유아교육과는 학과제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유아교육과, 4년제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각 양성과정의 정원을 기준으로 배출 규모로 살펴보았다.

##### 1)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가장 먼저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지난 2022년의 정원은 전국적으로 5,116명으로 5천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은 4,268명으로 800명 이상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2024년 정원 또한 3,794명으로 474명의 정원이 줄어들어,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현재 계획된 2025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정원 또한 3,425명으로, 369명이 줄어든 수치인 전문대 유아교육과의 정원 감소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2026년의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정원은 3,437명으로 일부 학교의 변화를 제외하면 2025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6년 정원의 경

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달의 4개월 전까지인 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을 고려하여 볼 때, 각 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향후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정원 감소는 유아교육과를 운영 중인 전문대학이 소재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모두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26년의 정원이 2022년 정원 규모의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경남, 경북, 충남, 부산 등도 반수 정도의 정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제주, 인천, 대구의 경우 감소하는 배출 규모가 2022년의 정원의 20%대 이하로, 상대적으로 감소 규모가 작았다.

〈표 V-3-1〉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서울	579	539	419	389	389
부산	302	240	215	186	186
대구	545	515	495	469	475
인천	192	192	192	140	140
광주	153	141	71	71	71
대전	252	208	189	145	145
울산	115	93	72	85	85
세종	0	0	0	0	0
경기	1,250	1,175	1,127	979	977
강원	129	119	110	77	85
충북	167	101	101	101	101
충남	222	135	125	115	115
전북	253	203	175	175	175
전남	280	148	96	86	86
경북	412	234	222	222	222
경남	141	105	75	75	75
제주	124	120	110	110	110
전체	5,116	4,268	3,794	3,425	3,437

주: 해당연도 학과 정원에 해당함.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22, 2023),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내부자료(2024, 2025, 2026)

## 2) 4년제 사범대학·일반대학 유아교육과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교의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 유아교육과의 정원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다소 감소는 있으나 2.1천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대부분 압도적으로 규모가 가장 컸던 경기와 서울이 4년제 유아교육과 정원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경기, 충남, 광주, 강원, 서울의 순으로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가 200명 이상이었으며, 경북, 경남, 대전, 충북의 4년제 유아교육과 정원도 약 150명 또는 그 이상이었다. 한편 광역시 중 대구와 인천의 유아교육과 정원은 20명 가량으로 제주의 배출 규모와 유사하였으며, 울산의 경우 세종과 마찬가지로 4년제 유아교육과가 없었다.

〈표 V-3-2〉 4년제 사범대학·일반대학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서울	206	200	218	218	218
부산	172	172	174	174	172
대구	22	22	20	20	20
인천	20	20	20	20	20
광주	241	241	228	228	228
대전	158	151	138	138	138
울산	0	0	0	0	0
세종	0	0	0	0	0
경기	260	258	293	283	283
강원	212	212	212	212	212
충북	141	141	138	138	138
충남	242	242	242	242	242
전북	72	72	71	71	71
전남	89	74	74	74	74
경북	194	194	194	191	219
경남	167	162	162	162	162
제주	20	20	20	0	0
전체	2,216	2,181	2,204	2,171	2,197

주: 1) 해당연도 학과 정원에 해당함.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출자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22, 2023),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내부자료(2024, 2025, 2026)

### 3)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교원자격이 취득 가능한 과정으로, 해당 일반학과 정원의 10%에 한해 교직과정 선발이 가능하다. 유치원교사 2급 자격은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한 교원자격으로,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80명이 교직이수자로 선정 가능한 규모이다. 따라서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규모가 유치원교사 공급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전공제 등으로 인한 일반대학의 학과별 정원이 감축되는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학과의 정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문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유지하던 1개 학과가 교직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일반대학 교직과정 정원은 7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교직과정을 운영 중인 22개 학과의 교직이수자 정원이 2023년 기준 3.4명에 불과하였다. 현재는 이들 학과에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여, 소수의 교직이수자를 위한 일부 교과목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통합 영유아교사만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직과목을 제외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전공과목은 교직이수자만이 수강하게 되므로, 3.4명의 교직이수자만을 위해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전공과목 폐강 기준에 대부분 해당되게 된다. 이에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부 교과목이 전공과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별도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우 정원 대비 교직이수자의 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배출 규모조차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V-3-3〉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구분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서울	22	22	22	22	22
부산	8	8	8	7	7
대구	2	2	2	2	2
인천	0	0	0	0	0
광주	0	0	0	0	0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전	0	0	0	0	0
울산	0	0	0	0	0
세종	0	0	0	0	0
경기	11	11	8	8	8
강원	0	0	0	0	0
충북	2	2	2	2	2
충남	22	18	18	18	16
전북	4	4	4	4	4
전남	0	0	0	0	0
경북	9	9	9	7	7
경남	0	0	0	0	0
제주	0	0	0	0	0
전체	80	76	73	70	68

주: 1) 해당연도 학과 교직이수자 정원에 해당함.

2) 2022년과 2023년은 전문대학 1개교의 교직이수자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22, 2023), 한국전문대학교육교과교육과교수협의회(2024, 2025, 2026)

#### 4)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의 정원은 각 대학에서 총정원으로 관리되므로, 유치원교사의 배출 규모가 연도별로 유동적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배출 규모는 2022년 자료로, 해당 연도에 교육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유치원교사는 전국적으로 316명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유치원교사 공급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으며, 50명의 유치원교사가 배출된 경기도가 그 다음에 해당하였다. 도 지역에서는 전북이 22명으로 배출 규모가 컸으며, 경남과 경북, 충남에서도 10명 이상의 유치원교사가 배출되어, 지역별로 소재한 양성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확보 가능한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을 통한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가 2022년 자료에 제한되는바, 향후에도 300명가량의 교사가 교육대학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배출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표 V-3-4〉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단위: 명

구분	2022
서울	177
부산	5
대구	12
인천	9
광주	3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50
강원	0
충북	2
충남	11
전북	22
전남	0
경북	11
경남	14
제주	0
전체	316

주: 해당연도 졸업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해당함.  
 자료: 교육부(2024c), 유아교육과 정원, 내부자료

### 5) 신입교사 공급 규모 예측치 1 (2031)

기존 유치원교사 양성 규모에 근거하여 2031년 배출 가능한 영유아교사의 배출 규모를 예상하였다. 신입교사 공급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한 수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유아교육과 및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우 2031년에 가장 가까운 202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까지 4년제로 운영되는 경우 2030년에 배출되는 정원에 해당하므로, 2031년 배출 규모가 2030년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또한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을 통한 배출자의 규모

는 2022년이 유일한 수치인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31년 2월에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전공을 전신으로 하는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신입 영유아교사는 전국적으로 6천명을 가까스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806명, 대구 509명, 경북 459명 순이었다. 특히 울산은 4년제 이상에서 배출되는 영유아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 신입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 1: 2031년

단위: 명

구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유아교육과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계
서울	389	218	22	177	806
부산	186	172	7	5	370
대구	475	20	2	12	509
인천	140	20	0	9	169
광주	71	228	0	3	302
대전	145	138	0	0	283
울산	85	0	0	0	85
세종	0	0	0	0	0
경기	977	283	8	50	1,318
강원	85	212	0	0	297
충북	101	138	2	2	243
충남	115	242	16	11	384
전북	175	71	4	22	272
전남	86	74	0	0	160
경북	222	219	7	11	459
경남	75	162	0	14	251
제주	110	0	0	0	110
전체	3,437	2,197	68	316	6,018

주: 1)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2022년 배출자 수, 그 외는 2026년 입학 정원을 그대로 입력한 수치에 해당함.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배출하는 유치원교사는 제외된 수치임.

## 나. 보육교사 배출 규모

현재 보육교사는 개방형 양성체제에 해당하여, 전공 및 학과와 무관하게 보육교사 자격 2급 취득을 위한 기준을 대학등에서 만족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이후 학과제를 통해 영유아교사 양성이 계획된다, 그간 보육교사를 주로 양성한 학과의 정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보육학과 등 13개 학과를 보육교사자격 관련학과로 정한바 있다. 이후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도입됨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자 수 추정을 위해 송태민 외(2005: 116)는 보육교사자격에 있어 관련학과와 핵심학과를 구분하고, ‘아동’, ‘보육’ 또는 ‘유아교육’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를 핵심학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를 ‘아동’ 또는 ‘보육’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를 보육·아동관련학과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신입 영유아교사 추정 시 유아교육과를 전신으로 하는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유아교육’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학과는 전수가 포함된다, 중복되는 유아교육과는 제외한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 이후 강화된 영유아교사 양성기관 기준 중 대면교육이 포함되므로, 원격대학의 핵심학과는 보육·아동관련학과에서 제외하였다.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정원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한 학과명과 정원을 사용하였다. 즉, 협의회에 보고된 전국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의 학과들 중 핵심학과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보육’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학과를 추출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해당 학과 정원을 확보하여,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정원 규모가 실제 보육교사의 공급 규모와 어느 정도 편차가 발생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2023년 보육교사 2급 자격자 배출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3년 보육교사 2급을 2명 이상 배출한 학과 중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후 모두 추출하고, 각 학과에서 배출한 보육교사의 수를 확보한 후, 시도별 배출 현황을 산출하였다. 이에 2023년 보육교사 공급 규모에는 보육·아동관련학과 외에 사회복지학과와 같은 학과가 다수 포함되었다.



1) 전문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2023년 기준 전문대학을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2천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24년 전문대학의 보육·아동관련학과 정원은 1,341명에 불과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수를 핵심학과로 제한할 때 그 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에 보육·아동관련학과 정원은 800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의 경우 정원이 다시 842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이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2026년의 학과별 정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문대학의 보육·아동관련학과 정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4년에 이미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제주에서는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신입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전문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보육교사 배출 규모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서울	273	259	214	214
부산	152	125	65	125
대구	162	70	60	60
인천	120	30	0	0
광주	98	55	67	67
대전	44	0	0	0
울산	20	0	0	0
세종	0	0	0	0
경기	705	461	252	252
강원	34	0	0	0
충북	54	0	0	0
충남	17	0	0	0
전북	22	50	50	30
전남	95	113	30	30
경북	183	114	0	0
경남	68	64	62	64
제주	9	0	0	0
전체	2,056	1,341	800	842

주: 2023년은 2인 이상의 보육교사를 배출한 학과의 자격취득자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2022,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5, 2026)

## 2) 4년제 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4년제 대학의 경우 2023년 배출된 보육교사 자격자가 1,311명인데 반해 2024년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정원은 1,577명으로 산출되었다.<sup>9)</sup> 이는 보육·아동관련학과 학생들 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을 시사한다.

한편 2024-2026년 보육·아동관련학과 정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1,07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6년에 1,289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의 경쟁력 감소로 인한 폐과와 무전공제 등으로 인한 입학 정원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2026년 자료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3-7〉 4년제 일반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보육교사 배출 규모

구분	단위: 명			
	2023	2024	2025	2026
서울	251	436	299	339
부산	115	152	142	152
대구	12	40	36	40
인천	17	27	22	27
광주	49	0	0	0
대전	111	90	40	90
울산	46	0	0	0
세종	0	0	0	0
경기	193	275	184	160
강원	11	0	0	0
충북	62	64	52	64
충남	156	160	130	160
전북	63	122	92	100
전남	45	30	20	30
경북	139	144	24	90
경남	34	37	37	37
제주	7	0	0	0
전체	1,311	1,577	1,078	1,289

주: 2023년은 2인 이상의 보육교사를 배출한 학과의 자격취득자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2022,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5, 2026)

9) 관련학부(예: 소비자·아동학부, 아동·사회복지학부)의 경우 보육·아동관련 전공의 정원만 사용하였음.

## 3) 신입교사 공급 규모 예측치 2 (20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아동관련학과 정원의 경우 무전공제 등의 폐지를 통해 종전의 정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2026년의 정원은 2025년 정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5년의 정원이 보육·아동관련학과의 향후 정원에 가장 가까운 수치로 판단된다. 2025년 입학생의 경우 4년제는 2029년 졸업생에 해당하므로, 이 정원이 3년간량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31년 2월 보육·아동관련학과를 전신으로 하는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신입 영유아교사는 전국적으로 1,878명으로 추정된다.

〈표 V-3-8〉 신입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 2: 2031년

단위: 명

구분	전문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4년제 일반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계
서울	214	299	513
부산	65	142	207
대구	60	36	96
인천	0	22	22
광주	67	0	67
대전	0	40	4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252	184	436
강원	0	0	0
충북	0	52	52
충남	0	130	130
전북	50	92	142
전남	30	20	50
경북	0	24	24
경남	62	37	99
제주	0	0	0
전체	800	1,078	1,878

주: 2025년 입학 정원을 그대로 입력한 수치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2022,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5, 2026)

## 4. 영유아교사 수급 예측에 따른 관리방안

### 가. 영유아교사 양성에 따른 수급 예측

영유아교사 수요를 유보통합 시안에 따른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기초하여 2031년에 요구되는 담임교사수와 학급당 교사수(담임교사 + 연장교사)로 구분하고, 각각을 추정치 1과 추정치 2로 보았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공급은 원격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2026년 유아교육과 정원 및 2025년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정원을 교사 배출 규모로 보았다. 이에 시도별 교사 수급의 예측치는 각 수요 추정치 대비 공급 규모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2031년 신입교사의 수요를 통합기관의 담임교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6,479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연도 양성기관을 졸업하여 배출되는 신입 영유아교사의 수는 약 7,896명으로 예상되어, 18,583명 정도의 신입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는 영유아 및 아동수가 가장 많은 경기의 경우 약 7천명의 교사가 부족하였으며, 서울은 2.6천명, 인천과 경남 또한 1천명 이상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전북과 제주의 경우 부족한 신입교사의 규모가 300명 내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요 규모가 작았다.

다음으로 2031년 신입교사의 수요를 통합기관의 담임교사 및 연장교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입교사의 수요는 52,957명으로 부족한 신입교사 수는 45,061명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는 1.5만명 이상의 신입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에서 배출 가능한 신입교사의 약 9배가 더 요구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의 추가 수요는 6.6천명으로 2031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교사의 5배 가량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천과 경남 또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수요가 예측되었으며,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1천명 내외의 신입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4-1〉 신입교사 수요 및 공급: 2031년

단위: 명

구분	신입교사 수요		신입교사 공급	신입교사 추가 수요	
	추정치 1	추정치 2		추정치 1 기준	추정치 2 기준
서울	3,975	7,950	1,319	2,656	6,631
부산	1,307	2,613	577	730	2,036
대구	1,142	2,284	605	537	1,679
인천	1,800	3,600	191	1,609	3,409
광주	774	1,547	369	405	1,178
대전	812	1,624	323	489	1,301
울산	498	995	85	413	910
세종	324	647	0	324	647
경기	8,768	17,536	1,754	7,014	15,782
강원	763	1,527	297	466	1,230
충북	839	1,677	295	544	1,382
충남	1,219	2,438	514	705	1,924
전북	706	1,411	414	292	997
전남	711	1,422	210	501	1,212
경북	1,035	2,070	483	552	1,587
경남	1,444	2,888	350	1,094	2,538
제주	413	826	110	303	716
전체	26,479	52,957	7,896	18,583	45,061

주: 추정치 1은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추정치 2는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및 연장교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 나. 영유아교사 양성에 따른 관리방안

### 1) 현재의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배출 규모 상향 조정

현재 신규로 배출되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총합은 원격대학과 중복 자격 취득자를 제외할 경우 약 1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간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그간 원격대학을 통해 배출된

교사로 인해 현장이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31년 통합기관의 교사수는 출생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 배치기준의 개선으로 인해 현재의 교사수를 초과할 수 있다. 2031년에 배출될 영유아교사의 공급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전문대학과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학과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의 모든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영유아교사 양성학과로 전환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2031년의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4년제 대면교육에 기초한 양성과정을 통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현재의 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 이상의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교사 배출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의 배출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배출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양성과정별로 살펴보면, 1) 유아교육과 정원 확대, 2)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자 규모확대, 3)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양성학과 전환 독려, 4) 미전환 보육·아동관련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 비율 상향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대학의 자율전공/무전공제 확산과 편입학제도 관련 규제 완화,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 총정원제 등의 기존 교육부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과도 연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 감소 중인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학과 및 학과정원의 추세를 고려할 때, 각 대학 및 학과의 정원이 상향조정되어도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배출 규모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2031년 배출되는 신규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자 전수가 통합기관의 교사로 근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출 규모의 상향조정은 다양한 양성기관에 걸쳐 일괄적이기보다는 맞춤형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입학자원 유입과 지역별 영유아교수 수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기존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교사 자격 전환을 적극 추진

신규 영유아교사 배출이 통합 기관에서의 교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존 교사의 영유아교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

안에서 제시하는 교사 처우 개선 계획을 신속히 현실화함으로써 현직 교사의 퇴직 비율을 낮추고 전체 교사 수 대비 신입 교사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 3) 지역별로 다른 교사 배치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교사의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영유아교사의 수급 불균형은 대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교사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경우 시안에서 제시한 교사 배치 기준을 타 지역에 비해 증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종과 울산의 경우 지역 내 양성기관의 부재로 인해 부족한 영유아교사의 수는 크지 않지만, 수급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과소 추정된 세종시의 신입 영유아교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근 대전, 충북, 충남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영유아교사 배출이 필요하다.

### 4) 통합기관 영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

본 연구에서는 연장과정 담당 교사의 수를 담임교사 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였다. 그러나 시안에 따르면 외부강사 배치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저하게 개선하기 위해 연장과정 담당 교사를 학급별로 배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돌봄교사가 2031년 이후 배출되는 영유아교사 자격 소지자로 요구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돌봄교사의 역할과 근무 여건이 담임교사와 동일하지 않지만, 통합기관에서의 일과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자격을 요구할 경우, 기존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전환 과정에서 개별 교사가 소지하는 자격에 따라 서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교사를 자격 전환하지 않은 기존 보육교사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교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체교사, 누리보조교사, 특수교사 등의 수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 방향이 확정된 이후 교사 수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5)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교육의 공교육 체계 확립

지난 5년간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급격하게 작아져, 2019학년도에 1,346명 모집에서 2024학년도는 25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17개 시도 중 특별시 및 광역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는 35명에 그친다. 이에 향후 영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강화의 정책기조가 구현된다면 영유아교사 수요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2024년 계획보다 향후의 신규 임용 규모가 커질 것인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공교육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라는 목표를 설정해왔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이후 지정형 설립유형으로 변화하면, 통합 기관 중 국공립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중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의 규모는 국공립 확충과 이에 따른 공교육 체계 확립의 기초와는 배치된다.

국공립 확충은 인구 변화와 이에 따른 기관의 정원 충족률 하락, 사립 기관의 운영 문제, 공사립 상생 등 여러 고려사항이 맞물려 있다. 이에 덧붙여본 연구 결과는 국공립 확충이 교사 수급 측면에서도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즉, 영유아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에 해당하는 영유아교사 배출은 향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대학 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과 무관하며,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양질의 진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 교원은 영유아교사의 진로 중 가장 양질의 진로로 인식되므로, 향후 국공립 확충 논의에서 교사 수급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VI

##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의 개선

- 01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현황
- 02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 03 통합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슈, 쟁점)
- 04 영유아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 VI.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의 개선

### 1.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현황

#### 가. 국내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변화

##### 1)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의 목적 및 연혁

한국의 교원양성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실행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센터가 만들어져 모든 교원양성평가를 전담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첫째,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둘째,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확보 셋째,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 넷째, 교직원망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다(이영학, 2010; 김보림, 2015: 397 재인용).

평가제도는 평가인정제와 평가인증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평가인증제란, 양성기관의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나누어 그 수준과 결과를 공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기준에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 조직이 판정·인정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소영·정제영, 2021: 63). 반면 평가인정제는 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양성기관에 한해 교원자격증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에 미달되는 교원양성기관은 교사자격증 발급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박소영·정제영, 2021: 62-63)하는 것으로 인정/불인정과 같이 교원양성기관의 질과 개선을 위해 일정기준 충족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박소영·정제영, 2021: 63)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와 자율적 발전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영역을 통해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 왔다. (1주기) 1998~2002, (2주기) 2003~2009, (3주기) 2010~2014, (4주기) 2015~2017, (5주기) 2018~2021이며, 현재는 6주기 평가를 앞두고 관련 지

표가 공지된 상황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홈페이지).

1주기(1998~2002년) 및 2주기(2003~2009년) 평가는 시범적 성격으로 진행되었고,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취약한 상황에서 평가 결과 활용에 애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3주기는 2010년부터 평가모형을 새롭게 설정해, 평가 결과를 행·재정 조치와 연계하는 등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틀을 구체화하였다고 보여진다(박소영·정재영, 2021: 62). 3주기(2010~2014년) 부터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4주기(2015~2017년) 평가를 거치며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주기(2018~2022)는 평가 결과에 따라 A와 B등급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유지, C등급은 30%, D등급은 50% 정원을 감축하며, E등급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목적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질 관리와 진단 결과 공개를 통한 자료 제공, 양성기관의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지닌다.

각 주기별 평가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컨설팅 중심의 시범평가 성격을 띠었던 1주기 평가는 1998년부터 4년제 대학 중 사범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을 시작으로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2002년까지 실시되었다. 이어서 2주기 평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실시되었는데, 4년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과정별로 실시되었다. 1~2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기관의 질 점검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원양성과정 개선을 위해 대학의 자발적 재정투자와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홈페이지).

3주기 평가는 대학 내에 설치된 모든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기본 방향과 모형,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2009년 7월)를 통해 평가지표 체계를 단순화, 최소화하며, 정량적 평가지표 비중을 강화하고, 수업실연 평가방식 등

10) 이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홈페이지. <https://necte.kedi.re.kr/history.do#> (2024. 9. 1. 인출)의 연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홈페이지).

4주기는 3주기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관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재평가를 폐지하였고, 다양한 정성지표를 도입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 간소화로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5주기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았다면, 정책명 변경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역량진단’으로 수정하고,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을 고려한 양성규모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주기가 불안정하고 평가결과 환류가 미흡했다는 시적에 따라 진단주기를 대학의 수업연한인 4년으로 일치하고, 평가결과 C, D 및 희망기관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자율기술 지표를 도입하였으며, 현장의 예측성 확보를 위해 지표 사전 예고제를 통해 현장의 예측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대, 교원대, 교육대학원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 2 ①) 자체평가에 대한 규칙 제32조의 자체평가로 같음하도록 하였다(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홈페이지). 5주기는 평가결과 하위 등급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고, 후속조치로서 정원감축 외에도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평가에서 진단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자 하였다(허은정·김현수, 2019: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기관평가가 진단 대상 대학에게 고부담 평가(허주외, 2019)이며 질 관리보다는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보다는 외적인 투입 여건과 성과를 진단(신현석·김상철·장아름, 2020) 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하였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본래 취지대로 ‘관리’와 ‘제재’가 아니라 ‘조성’과 ‘조정’이 되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의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어 미리 질 제고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더하여 동일주기 내에서도 각 차년도마다 진단 대상 기관이 상이해 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단 기준의 전면 개편보다는 점증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박소영·정제영, 2021: 83-84). 그러므로 지표확정→대학 자체 진단→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진단결과 피드백 제공→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대학의 자체개선 노력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진단준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마

지막으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지표 및 진단 준거를 구성할 때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검증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박소영·정제영, 2021: 84).

마지막으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5주기 평가지표의 틀은 유지하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지표에 진단요소 추가하도록 수정되었다. 특히, ‘대학별 발전계획 지표 내 거버넌스’에서 (외부 협력체계) 교육청, 연수원, 협력학교, 타 대학, 연구기관 등, (내부 운영체계)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대학 내 기관 간 자원 공유 등을 제시하였으며, ‘전임교원 확보율 및 전임교원 연구실적 충족률’ 등 지표 내에서 교수자 현장성 제고로 현장 교원 강의참여, 교수자 현장 연구 장려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교과 교육과정 편성·수업 운영의 적절성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실적’ 등 지표 내 미래소양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해, 디지털, 기후·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예비교원 미래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적 점검을 추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4년에는 교육대학교(교원대 포함) 11개교, 25년에는 일반대학 146개교: 사범대학 설치 대학(45개교),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101개교), 26년에는 (‘26년) 전문대학 및 실기교사 양성학과 102개교가 역량진단 대상 대학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홈페이지).

## 2) (유치원)교원양성기관 지표 변화

교육부는 2022년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2021. 12.)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미래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교원의 역할은 협력자, 기획자, 소통·중재자, 혁신가로서 기대되지만, 현재 무시험 검증 과정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 및 변화에 신속·충실한 반영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교육부, 2021: 3).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지향점 역시 ‘미래소양 함양, 현장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다층적 적·인성 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미래소양을 위해 교직과목, 필수교양에 미래소양관련 내용 편성,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시 인적·물적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과정 제공을

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6주기 역량진단 지표에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소양 교육과정 운영’ 지표 신설이 검토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규제 및 자율정원통제 기제를 마련할 계획이다(교육부, 2021: 17). 둘째, 학교 현장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해, 교직과목, 교과교육론 등은 현장교사를 겸임·초빙교수로 위촉, 교육실습 내실화와 실습학기제 도입하고, 셋째, 다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학부 양성과정과 현직교원(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연계해 융합전공을 이수해, 소속 학교급과 연결되는 학제의 교육과정·학생 발달단계에 대한 필수 과목을 편성해 유치원교사가 초등저학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교사가 유치원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초등교원의 경우 기본이수과목(13과목) 조정, 심화과정은 현행 18점에서 9학점으로 축소하며, 핵심전공(30학점)을 신설해 현직교원 연수 시직무연수와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함으로써 현장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하는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것이 제안되었다(교육부, 2021: 19).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지표는 크게 3개 영역(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11개 항목, 13개 준거, 26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정량지표 12개, 정성지표 9개, 혼합지표 5개로 이루어져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2025년 시행될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는 크게 ‘기본, 교원,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및 학생지도, 적·인성, 교육환경, 교육성과’ 7개 준거를 기초로 24개 지표(1,000점)로 구성된다. 이중 정량지표는 12개, 정성지표 9개, 혼합지표 3개이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5주기 지표 중 전문대학지표는 106개 전문대학과 1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량지표를 DB에 입력한 후, 가결과를 확인해 수용·미수용 여부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정성지표는 양성기관 자체 진단보고서에 대해 서면진단후 역량진단위원이 현장방문 하여 증빙자료 확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실시한다. 점수산출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하여 가결과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진단결과를 최종확정해 결과를 통보하는 형태이다. 5주기 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 중 유아교육과는 3개 영역, 11개 항목, 13개 준거, 28개 지표로 총 1,000점 만점의 지표로 역량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대학 유형과 차별화된 점은 교육여건 영역에서 1.2.1.7 교육기관 또는 전공관련기관(산

업체)근무경력을 가진 전공과목 전임교원 비율(정량)(배점 30점)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교육과정영역 2.3.1.1 교직 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은 지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반면 유치원교사 양성학과의 경우는 교육여건 영역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표에서 제외되었는데, 전공과목 전임교원이란 교원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교과내용학 과목, 교과교육학 과목 포함)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전임교원 1인으로 산정한다. 단,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학생 300명당 전임교원 1인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평가에서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직이론과목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을 의미하는데, 대학당 최소 2인으로 하되 학생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1인 더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이론과목 교수자의 전공임치도는 박사학위명이 아니라, “최종학위가 교육학 박사학위인자(교육학 전공), 교육학 석사학위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 이거나 유(어린이집)·초·중등학교 현장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인 자(휴직 기간 제외)), 교수자의 전공이 교수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학위 취득 후 최근 3년간\* 교수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 이 있는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대학 양성기관평가 시에는 정량지표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공관련기관(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전공과목 전임교원 비율을 평가하는데, “① 유(어린이집)·초·중·고 교사(전일제로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교사 포함), ② 교육행정(전문)직(교육행정직 공무원, 연구사(관), 장학사(관) 등), ③ 학교교육 활동에 관련성이 높은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 연구기관포함)이나 대학 연구소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연구원, ④ 전공 관련 산업체 전임직”이 이에 해당된다.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에서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의 경우 연구실적을 3년 내 150%으로 두고 있는 점도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2.2.1.1 수업규모의 적절성에서는 전공과목과 교직이론 과목 및 교직소양과목에서 적정 규모 강좌 비율을 학과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방



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본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해당 정적규모 강좌비율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1-1] 수업운영 적정 규모 강좌비율(5주기 지표)

<b>전공과목 적정 규모 강좌비율</b>	$\text{적정규모 강좌 비율}(G) = \frac{(25\text{명 이하 강좌 수})+(26\sim 30\text{명 강좌 수}\times 0.7)+(31\sim 35\text{명 강좌 수}\times 0.5)+(36\sim 40\text{명 강좌 수}\times 0.3)+(41\text{명 이상 강좌 수}\times 0.1)}{\text{총 개설 강좌 수}} \times 100$
<b>교직이론과목 및 교직소양과목 적정규모 강좌 비율</b>	$\text{적정규모 강좌 비율}(G) = \frac{(30\text{명 이하 강좌 수})+(31\sim 35\text{명 강좌 수}\times 0.7)+(36\sim 40\text{명 강좌 수}\times 0.5)+(41\sim 45\text{명 강좌 수}\times 0.3)+(46\text{명 이상 강좌 수}\times 0.1)}{\text{총 개설 강좌 수}} \times 100$

<표 VI-1-1> 5주기 교원양성 지표 총괄표

진단 영역	진단항목	진단 준거	진단 지표	유형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전문대학
					전체	학과	전체	학과	전체	학과	
1. 교육 여건 영역	1.1 발전계획	1.1.1 발전계획의 적합성	1.1.1.1 발전계획(특성화 포함)	정성	●			●			●
	1.2 교원	1.2.1 교원 확보의 적절성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		●			● (유아교육과)
			1.2.1.2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
			1.2.1.3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		●		●		●
			1.2.1.4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		●	●			●
			1.2.1.5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				
			1.2.1.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		●		●		●
			1.2.1.7 교육기관 또는 전공관련 기관(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전공과목 전임교원 비율	정량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진단 영역	진단항목	진단 기준	진단 지표	유형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전문대학
					전체	학과	전체	학과	전체	학과	
2. 교육과정 영역	1.2.2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	1.2.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정량	●		●		●		●	
			정량	●		●		●		●	
			정성			●				●	
	1.3 행·재정 운영의 적절성	1.3.1 행·재정 운영의 적절성	1.3.1.1 교육비(장학금 등) 환원율	정량	●			●			●
			1.3.1.2 행정지원의 충실성	정량			●				●
			정성	●		●		●			
	1.4 수업환경 적절성	1.4.1 수업환경의 적절성	1.4.1.1 시설 활용의 적절성	정성	●		●		●		●
			1.4.1.2 장애 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정량	●		●				●
			정성	●		●					
	2.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2.1.1.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정량		●		●		●	●
			2.1.1.2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		●		●		●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		●		●		●
2.1.1.4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정성	(교육대학원 지표)							
2.2 수업	2.2.1 수업의 충실성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	●	●	●	●	●	●	●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량		●		●		●		●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정량	●			●	●			●
		정성	●			●	●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성	정성	●							
2.3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	2.3.1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	2.3.1.1 교직 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	정성					●		●(유치원교사양성학과)	
		2.3.1.2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정성	●		●		●		●(유아교육과)	
		2.3.1.3 학생 성품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정성	●		●		●		●	
2.4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	2.4.1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	2.4.1.1 교육실습체제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정성	●		●		●		●	

진단 영역	진단항목	진단 준거	진단 지표	유형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전문대학
					전체	학과	전체	학과	전체	학과	
3. 성과 영역	3.1 운영성과	3.1.1 학생 유지 성과	3.1.1.1 신입생 충원률 및 중도탈락 학생 비율	정량		●		●		●	●
	3.2 교육성과	3.2.1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	3.2.1.1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정량		●		●		●	●
					3.2.2 교육만족도	3.2.2.1 재학생 만족도	정량	●		●	●
	3.3 환류성과	3.3.1 환류 노력	3.3.1.1 환류 노력	정성	●			●	●		●

〈표 VI-1-2〉 6주기 교원양성 지표 총괄표

진단 준거	지표	특성	배점	5주기 지표 비교	지표 적용 대상			고려점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일반대 교직과	교육 대학원	
I. 기본	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정량	P/F	유사(영역이동)	○	○	○	전 환 학 과 고려
	2. 발전계획	정성	60	대내외 네트워크 협력체계 포함 /40→60	○	○	○	
II. 교원	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50	교원확보율	○	×	○	
	2.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30		○	○	○	
	3.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40		○	○	○	
	4.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정량	50	현장교육과정연구 50% 이상 포함/40→50	○	○	○	
	5. 교과교육교육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30	전공/교과교육/교직이론 통합	○	○	○	관 련 연 구 200%
	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30		○	○	○	관 련 연 구 200%
	7. 교수자 역량개발 지원의 총실성	정성	60	강의만족도 및 강의평가 포함/ 혼합→정성		○		
III. 교육 과정	1.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정성	90	전공, 교직, 교양 학점 부여 과정	○	○	○	개편 교육 과정 연계
	2. 수업 운영의 적절성	정량	40	수업규모의 적절성 포함	○	○	○	방통대어려움
정성		30						

진단 준거	지표	특성	배점	5주기 지표 비교	지표 적용 대상			고려점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일반대 교직과	교육 대학원	
	3.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sup>11)</sup>	정성	70/ 50	학점 미부여교육과정/ 미래 소양 교육과정 포함	○	○	○	
IV. 실습형 교육 및 학생 지도	1. 교육실습체계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80	실습학기제 도입 준비 포함/70→80	○	○	○	실습지: 어린이집포함 여부
	2.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정량 정성	20 40	10→20 30→40	○	○	○	
	3.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개선 계획 <sup>12)</sup>	정성	30/ 40	65→감소	○	○	○	
V. 적·인정	1. 교직 적격자 검증을 위한 노력	정성	30 40	검증 노력 및 개선보완 계획 추가	○	○	○	
	2. 성인지 교육 계획 및 운영 실적	정성	20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에서 변경	○	○	○	
VI. 교육 환경	1. 교육비 환원율	정량	10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포함 (20→10)	○	○	○	
	2. 행정지원의 충실성	정량	20	혼합→정량	○			
	3. 시설확보 및 활용의 적절성	정성	20	배점확대 (5→20)	○	×	○	
	4. 장애 학생 선발 충족률 및 지원노력	정량 정성	10 <sup>13)</sup> 10	배점확대 (정량0→5/정성 5→10)	○	×	○	
VII. 교육 성과	1. 신입생 충원률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	정량	30	-	○	○	○	
	2.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정량	70	매년 조사 검토	○	○	○	방통대 어려움
	3. 재학생 만족도	정량	40	-	○	○	○	

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일반대학용).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작성함.

다음으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미래형 양성체제로 전환하도록 자율개선기반 마련과 지원체계를 구축(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3)하고자 개선하였으며, 신설·전

11) 정성평가로 사범대, 교육과, 교육대학원은 70점, 교직과정은 50점

12) 정성평가로서 사범대, 교육과는 30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40점

13) 가산점임.

환·통폐합 등으로 역량진단 실시년도에 편제완성 후 3년이 미도래하는 양성과정의 경우는 진단유예가 가능하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5). 정량진단은 진단 위원 2인이 교차 확인, 정성진단은 7명이 한팀으로 각각 정성지표를 개별 진단 후 팀별 간 종합논의하도록 진단방식을 개선하였다. 정량진단은 5주기 지표가 11등급이었던 것을 6등급으로 조정하였다.

6주기에는 5주기와 달리 영역과 진단항목 구분이 사라지고, 준거를 기준으로 지표가 재편성 되었다. 기존 총 26개 지표에서 24개 지표로 감소하였으며, 혼합지표가 5개에서 3개로 감소되었다. 5주기 지표 중 혼합지표였던 1.2.2.2 강의 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영의 적절성, 2.2.1.2 수업운영의 현장성, 3.3.1.1 환류노력 지표는 삭제되었으며, 6주기 지표에서는 ‘V. 적·인성’ 기준이 강화되며, ‘교직 적격자 검증을 위한 노력’ 지표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교과교육 교수자의 전공일치도를 교과교육과목 교수자의 전공이 실제로 담당할 과목화 일치하는 수업 비율로, 박사학위 세부전공이 학문분야와 동일하거나, 박사학위논문이 교과교육을 주제로 작성되었거나, 강의시점기준 최근 3년간 교수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보도록 조정되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44-45). 교직이론과목 교수자의 전공 일치도 역시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수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거나, 학교현장 교원 교수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자로 현재 학교 현장에 재직 중이며, 세부전공이 교수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거나, 박사학위 세부전공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강의시점 기준 최근 3년간 교수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47-48).

다음으로 5주기에서 평가되었던 강의만족도는 6주기에는 ‘교수자 역량개발 지원’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교과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서는 전공과목, 교직과목, 교양과목에서 예비교원이 갖추어야 할 교과교육내용으로서 디지털, 기후·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의 미래 소양 강화 반영 정도를 포함하고, 교직 적·인성 함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으로서 미래 소양 강화, 한교·교실 등 실제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확보, 교직 적·인성 함양 등에 대

한 충실도와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법과 저라 등을 포함해 평가한다. 6주기 평가지표에서 강조된 것은 'IV. 실습형 교육 및 학생지도'라 할 수 있는데, 교육실습체제와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의 운영체제와 함께 학생 모의수업 실시를 통한 학생수업역량 제고 노력, 학생의 학습, 진로, 적·인성에 대한 지도 및 상담체제를 평가한다.

## 2. (유치원)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 가. 4-5 주기 평가 결과

3주기의 1차(2010)에는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45개교), 교육대학(10개교), 2차(11년)에는 일반대학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54개교), 재평가 대학(35개교), 3차(12년)에는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설치 대학(61개교), 재평가 대학(24개교), 4차(13~14년) 전문대학 등(136개), 재평가 대학(54개교)를 실시하였다.

간략히 4-5주기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4주기

1차(15년): 사범대학 설치 대학교 및 교육대학교(62개교, 206개 기관, 2차(16년)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교 등 107개교에 설치된 285개, 3차(17년) 일반대학 8개교(14개 기관) 및 전문대학 등 118개교(193개 기관)가 평가 대상이었다.

#### 가) 1차(15년): 사범대학 설치 대학교 및 교육대학교(62개교, 206개 기관)

4주기 평가에는 신규평가와 3주기 평가의 재평가 대상도 포함하였는데, 2014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3주기 평가) 결과 C등급 이하 교원양성기관(유아교육과, 보건교사 양성학과) 또는 F등급 교원양성기관(실기교사 양성학과) 5개교(7개 교원양성기관)을 재평가 하였다. 신규평가에서는 사범대학 기준 22개 지표로(☞제4주기 평가지표 적용), 교직과정 19개, 교육대학원(양성) 22개, 교육대학원(재교육) 14개, 교육대학교 20개를 평가하였으며, 재평가는 유아교육과 기준 31개 지표로(☞

제3주기 평가지표 적용) 평가 진행하였다.<sup>14)</sup>

신규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15)</sup>

〈표 VI-2-1〉 4주기 1차년도 신규평가 결과

구분	평가대상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사범대학	45	16 (36%)	23 (51%)	5 (11%)	1 (2%)	0 (0%)
일반대학 교육과	5	2 (40%)	1 (20%)	2 (40%)	0 (0%)	0 (0%)
교직과정	51	0 (0%)	4 (8%)	26 (51%)	19 (37%)	2 (4%)
교육대학원(양성)	39	0 (0%)	7 (18%)	24 (62%)	8 (20%)	0 (0%)
교육대학교	11	5 (45%)	6 (55%)	0 (0%)	0 (0%)	0 (0%)

주: 교육대학원(재교육)은 55개교 중 B등급 7개교(13%), C등급 21개교(38%), D등급 25개교(45%), E등급 2개교(4%)

〈표 VI-2-2〉 2015년 평가대상 기관 교원양성 정원 감축현황

구분	평가 대상	교원양성 정원 (A)	감축 정원 (B)	감축 후 교원양성 정원 (A-B)
사범대	45개교	10,476명	396명(4%)	10,080명
일반대 교육과	5개 학과	182명	22명(12%)	160명
교직과정	51개교	4,932명	1,368명(28%)	3,564명
교육대학원(양성)	39개교	5,940명	1,434명(24%)	4,506명
총계		21,530명	3,220명(15%)	18,310명

14) 교육부(2013. 8. 30). 2013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광주보건대 간호학과 등 A등급, 2015학년도 교원양성정원 1,220명 감축 예정

15) 교육부(2016. 3. 23).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 교원양성 정원 3,220명 감축 예정.

나) 2차(16년):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교 등 107개교에 설치된 285개 기관<sup>16)</sup>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 교원양성 정원 2,509명 추가 감축 예정을 발표하였다.

〈표 VI-2-3〉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단위 : 기관

구분	평가대상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일반대학 교육과	97	24 (25%)	50 (51%)	20 (21%)	3 (3%)	0 (0%)
일반대학 교직과정	95	3 (3%)	11 (11%)	32 (34%)	35 (37%)	14 (15%)
교육대학원(양성)	32	3 (9%)	7 (22%)	13 (41%)	7 (22%)	2 (6%)
사범대학교	1	1 (100%)	0 (0%)	0 (0%)	0 (0%)	0 (0%)

※ 교육대학원(재교육)은 60기관 중 A등급 1기관(1%), B등급 7기관(12%), C등급 16기관(27%), D등급 20기관(33%), E등급 16기관(27%)

〈표 VI-2-4〉 2016년 평가대상 기관 교원양성 정원 감축현황

구분	평가대상 (기관)	양성 정원(A)*	감축 정원(B)		감축 후 정원 (A-B)
				%	
일반대학 교육과	97	3,206명	263명	8%	2,943명
일반대학 교직과정	95	3,831명	1,488명	39%	2,343명
교육대학원(양성)	32	3,427명	758명	22%	2,669명
사범대학교	1	118명	0명	0%	118명
총계	225(60**)	10,582명	2,509명	24%	<b>8,073명</b>

\* 교원양성 정원은 '17학년도 기준임. / \*\* 교육대학원(재교육) 기관수임.

다) 3차(17년): 일반대학 8개교(14개 기관) 및 전문대학 등 118개교(193개 기관)

제4주기 평가('15~'17년)의 3차년는 전문대학 108개교 및 일반대학 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sup>17)</sup>.

16) 교육부 보도자료(2017. 1. 24).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4주기 2차):



〈표 VI-2-5〉 2017년 교원양성기관평가 평가결과

구분		전체	평가 등급				
			A (800점 이상)	B (700점 이상)	C (600점 이상)	D (500점 이상)	E (500점 미만)
전문 대학	유아교육과	91	36 (40%)	41 (45%)	13 (14%)	0 (0%)	1 (1%)
	보육과 (교직과정)	2	2 (100%)	0 (0%)	0 (0%)	0 (0%)	0 (0%)
	간호학과 (교직과정)	45	5 (11%)	27 (60%)	12 (27%)	1 (2%)	0 (0%)
실기교사 양성학과 (전문대·일반대 모두 포함)		34	16 (47%)	11 (32%)	6 (18%)	1 (3%)	0 (0%)
일반 대학	교육과	5	2 (40%)	3 (60%)	0 (0%)	0 (0%)	0 (0%)
	교직과정	3	0 (0%)	1 (33%)	1 (33%)	1 (33%)	0 (0%)
	교육대학원 (재교육)	3	0 (0%)	0 (0%)	2 (67%)	0 (0%)	1 (33%)

〈표 VI-2-6〉 2017년 평가대상기관 교원양성정원 감축 예상 인원

(단위: 명)

구분		평가대상기관 교원양성 정원* (A)	감축 인원 (B)	감축 후 정원 (A-B)
전문 대학	유아교육과	6,951	363	6,588
	간호학과	605	49	556
실기교사 양성학과		5,063	352	4,711
일반 대학	교육과	2,835	0	2,835
	교직과정	22	6	16

주: 교육대학원(재교육)은 교원양성 기능이 없으므로 정원감축 제외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은 50% 감축하고, E등급은 폐지할 계획이다.

## 2) 5주기

가) 2-3차년도(19-20년): 4년제 대학(교대·교원대 제외) 총 154개교를 대상<sup>18)</sup>

17) 교육부 보도자료(2018. 3. 21).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우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기관 역량 강화 -

18)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22).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교원양성기관 자율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양성 정원 감축 등에 기여.

19년은 사범대학 설치대학교, 20년은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영역에서 배점을 상향(4주기, 30% → 5주기, 50%) 하고, 지표를 확대·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였다. 역량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2-7〉 5주기 2·3차 연도 역량진단 결과

구 분	기관 수	역량진단 등급				
		A	B	C	D	E
사범대학	45	11 (25%)	33 (73%)	1 (2%)		
일반대학 교육과	105	28 (27%)	65 (62%)	11 (10%)	1 (1%)	
일반대학 교직과정	126	1 (1%)	27 (21%)	64 (51%)	31 (25%)	3 (2%)
교육대학원(양성*)	68	3 (4%)	19 (28%)	33 (49%)	12 (18%)	1 (1%)
교육대학원(재교육**)	101	4 (4%)	17 (17%)	49 (49%)	30 (30%)	1 (1%)
향후 조치		부총리표창	현행유지	양성 정원 30% 감축	양성 정원 50% 감축	폐지

- 주: 1)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일반인 대상 교원자격증 발급 등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
- 2)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직교원 대상 재교육 중심의 역량향상 과정
- 3) 교육대학원(재교육)은 정원 감축·폐지 미실시하되, 전공 신설 제한 등 조치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다. 양성정원 감축 규모는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 명, 교직과정\* 1,8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교직과정은 2022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3년에 감원 적용된다. 진단대상 양성정원 총 26,000여 명의 12%인 3,200여 명 감축 될 예정이다.

나) 4차 연도(21년도): 교육대학,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등 총 114개교(174개 기관)

21년도는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실기교사 양성과정(일반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I-2-8〉 5주기 4차 연도(2021년) 역량진단 결과

구 분		기관 수	역량진단 등급				
			A	B	C	D	E
교육대학, 사범대학		11	3 (27%)	8 (73%)			
교육대학원(양성*)		1		1 (100%)			
교육대학원(재교육**)		12		4 (33%)	6 (50%)	2 (17%)	
전문 대학 등	유아교육과 <sup>19)</sup>	80	9 (11%)	49 (61%)	18 (23%)	4 (5%)	
	유치원교사 <sup>20)</sup> 양성학과(교직과정)	2		1 (50%)	1 (50%)		
	보건교사 양성학과(교직과정)	42	6 (14%)	26 (62%)	8 (19%)	2 (5%)	
	실기교사 양성학과	26		19 (73%)	6 (23%)	1 (4%)	
행정 조치		174	부총리 표창	현행 유지	양성정원 30% 감축	양성정 원 50% 감축	폐지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일반학부 졸업생 대상 교원자격증 발급 등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

\*\*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직교원 대상 재교육 중심의 역량향상 과정

5주기 평가는 객관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정원을 조정(4,450여 명 감축 예정)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임용경쟁률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19) 전문대학 등 유아교육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포함되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5주기 평가결과 C 등급을 받아 양성정원 30%가 감축됨.

20) 여주대, 동남보건대가 해당됨.

〈표 VI-2-9〉 5주기(2018~202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정원감축 총괄 현황

구 분	정원감축 규모				
	소계	C (30% 감축)	D (50% 감축)	E(기관 폐지)	
사범대학/교육과	138명	124명 (12개 기관)	14명 (1개 기관)	-	
교직과정	1,831명	899명 (64개 기관)	787명 (31개 기관)	145명 (3개 기관)	
교육대학원(양성)	1,290명	751명 (33개 기관)	439명 (12개 기관)	100명 (1개 기관)	
전문대학 등	유치원교사	1,164명	1,070명 (19개 기관)	94명 (4개 기관)	-
	보건교사	30명	25명 (8개 기관)	5명 (2개 기관)	-
총계	4,453명	2,869명	1,339명	245명	

\* 주: 대학의 자율 정원 감축, 정원 감축비를 적용 연도 등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나. 5 주기 역량진단 정원감축 결과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조정되었으며,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양성정원이 대폭 삭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양성하던 방통대가 5주기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음에 따라 정원이 1,89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대학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 결과이다.

〈표 VI-2-10〉 교원양성기관 현황 및 정원

구분	교원양성정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범대 <sup>21)</sup>	565	565	565	562	560	561	561	587
일반 대교 육과	4,519	4,519	4,507	4,405	3,569	3,533	3,500	3,500
방통대	(2,700)	(2,700)	(2,700)	(2,700)	(1,890)	(1,890)	(1,890)	(1,890)
일반대 교직	86	86	85	77	73	73	70	68
전문대학	5,865	5,840	5,423	5,056	4,207	4,035	3,905	3,755
총 유치원	11,035	11,010	10,580	10,100	8,409	8,202	8,036	7,910

주: 1) 2022년과 2023년 양성정원 차이 : 일반대 교육과, 전문대학 양성정원 감축 조정  
 2) 교육대학원(28개)은 총 정원으로 관리되므로 연도별 교원양성정원이 유동성이어서 제외됨.  
 자료: 교원양성정원 : 학년도별 기준 (출처: 정기승인시스템)

21) 국립안동대학교에 2026년 양성인원이 28명으로 증가함.

최근 3년간 교원자격증 발급 건수를 정리하면, 2021년 9,742명이었으나, 2023년은 8,082명으로 교사양성기관 정원과 함께 졸업을 통한 유치원교사 자격발급 건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2-11〉 최근 3년 간 교원자격증 발급 건수

구분	최근 3년간 교원자격증 발급 건수		
	2021	2022	2023
유치원	9,742	9,175	8,082

자료: 나이스(<https://www.neis.go.kr/nxuiPortal/index.html>). 교원양성정원: 년도별 기준

### 3. 통합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슈, 쟁점)<sup>22)</sup>

가. 교원양성기관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초중등과 통일 vs. 영유아교육학과 특성 반영,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지표 차별화?

현재의 교원양성기관평가는 초중고등학교가 동일한 지표로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평가받는 체제이다. 그러다보니 교내 사범대 여부가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문대 유아교육과: 7주기 정량평가로 단순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
- 4년제 유아교육과: 양성 기관 평가는 교원 양성과에서 받는 기관 평가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음. 초중등과 같은 평가의 틀을 유지하되 영유아 통합학과의 경우는 문항조정 필요. 초중등 평가와 같은 양식의 같은 루트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거라고 생각함. 축소화된 통합학과의 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 (보완지표관련) 사범대나 비사범대 모두 연계성을 가지고 통합기관 평가 기준이 나오면 좋겠음. 영유아만 따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점이 있음.
- 4년제 아동보육학과: 전문대 양성기관 평가 기준의 차이 4년제 양성기관 평가 기준 차이가 있음. 이런 부분까지 맞춰야 한다는 의견. / (보완지표관련) 다른 학교급에 맞추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22) 해당 절은 전문가자문회의의 결과를 기초로 정리함.

영유아교원 양성학과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주관 부서, 평가지표, 평가환류 등에 대한 논의가 후속되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기존대로 교원양성연수과가 담당함으로써 초·중등과 동일한 평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나, 대학 내 사범대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에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지 않았던 아동관련학과가 영유아교육학과로 신설될 경우 기관평가를 위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함도 큰 관건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협의회에서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정량평가로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전문대 유아교육과의 평가지표와 일반대학의 평가지표에 차이가 있는데, 교사자격 통합 시 교사자격요건을 4년제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와 일반대학의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가야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일례로 전임교원연구실적의 경우 전문대학은 150%, 4년제 대학교는 2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지표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신 전문대학교 평가의 경우 정량평가로 어려운 부분은 정성평가로 기술하도록 하는 요구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교사자격 통합 양성기관평가의 지표가 초중고등학교 체계에 맞춰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육학과(안)에 맞게 지표도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6주기 지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각 지표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지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정리한 표이다.

〈표 VI-3-1〉 6주기 교원양성 지표에 대한 의견

진단준거	지표	개선 및 특이 사항
I. 기본	2.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없음
	2. 발전계획	
II. 교원	2.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영유아전공이 50%는 되도록 해야할 것임
	2.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3.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4.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5. 교과교육교육 교수자 전공 일치도	

진단준거	지표	개선 및 특이 사항
	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7. 교수자 역량개발 지원의 충실성	
III. 교육 과정	2.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2. 수업 운영의 적절성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은 수업운영의 적절성 기준이 학생 25명이 기준이나, 방송통신대학은 300명 기준으로 책정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3.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sup>23)</sup>	지표 충족이 어려움
IV. 실습형 교육 및 학생 지도	2. 교육실습체계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2.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모의수업하는 학생 자체의 역량을 학생수업역량 제고 노력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3.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개선 계획 <sup>24)</sup>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문제가 있음. 복수전공학생에 대한 지도체계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고려 필요
V. 적·인정	2. 교직 적격자 검증을 위한 노력	
	2. 성인지 교육 계획 및 운영 실적	
VI. 교육 환경	2. 교육비 환원율	
	2. 행정지원의 충실성	
	3. 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절성	
	4. 장애 학생 선발 충족률 및 지원 노력	영유아교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VII. 교육 성과	1. 신입생 충원률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	지표 보완 필요. 출석관리를 보는 것이 좋겠음
	2.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지표 제거 필요. 학생이 이직할 권리를 막기 어려우며, 선배의 이직으로 후배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3. 재학생 만족도	

나. 일반대 교직과정 아동관련학과의 승인인원 규모: 현 10% 유지 vs. 보육교사 배출 수만큼 보존 학과정원의 50%

최근 교육부(2024. 3)는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학부

23) 정성평가로 사범대, 교육과, 교육대학원은 70점, 교직과정은 50점

24) 정성평가로서 사범대, 교육과는 30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40점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교직과정은 2025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2021. 12)’의 교원양성과정별 특성화 방향<sup>25)</sup>을 고려해 교원양성과정 정원 조정 등을 승인하는 방안이다. 초·중등 교원수급계획(교육부, 2023. 4. 3)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 현실화를 반영하여 양성정원 규모의 단계적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기본 원칙은 총 정원의 증원은 불가하며,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 양성규모, 임용수요, 설치기준을 고려해 학과 신설을 승인하나, 사범대학이 미설치된 대학의 교육과 신설은 불가함을 밝히고 있으며, 유사 전공 간 학부제 통합, 또는 이전 학과로 분리하는 경우 현재 정원 내에서 전임교원 확보 등을 고려해 승인함을 발표하였다.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육과는 학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학과 모든 학년 총 종원(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인정<sup>26)</sup>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교직과정에 대한 기본 원칙은 사범대학에서 양성되는 표시과목(유치원, 특수학교 포함)은 신설, 변경이 불가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비율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운영하고, 교직과정은 사범대 미개설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승인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함을 밝혔다.

다만 기존 교직과정을 폐지하고 신규분야로 전환하는 경우 교직과정의 승인을 입학정원의 30% 내 운영으로 허용해 제한적으로 신설을 승인함을 밝히고 있다<sup>27)</sup>. 이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로 정원이 10%만 평가받는 아동관련학과의 경우 교사자격통합 양성학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보육교사양성인원만큼의 인원을 승인해 주어 수업운영에 필요한 학생수가 확보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50%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안도 있었으나, 이와 반대로 전문대학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교 입시경쟁률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부

25) · 교육대학 : 초등학교 정교사 양성(수급계획 고려 정원 조정·관리)  
 · 사범대학(대학 등의 교육과 포함) : 유치원·중등·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공통과목 중심)  
 · 교직과정 : 사범대학(대학 등의 교육과 포함)에서 미양성되는 분야의 교원 양성(전문교과 정교사,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등)  
 · 교육대학원 : 재교육 기능 강화 유도

26) 변경정원 산출 산식 = 현 입학정원×(기존학제/변경된 학제)  
 (예시) 현 입학정원 60명,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변경의 경우 → 변경 입학정원은 40명

27)

구분	폐지 학과	입학정원	교직과정 승인정원	신설 학과	입학정원	교직과정 승인정원	비고
1	A	30명	3명	C	20명	2~6명	기존 승인 정원 7명 이내 20명의 30%인 6명 가능
	B	40명	4명				
2	A	30명	3명	C	40명	4~7명	기존 승인 정원 7명 이내
	B	40명	4명				
3	A	30명	3명	B	30명	~3명	기존 승인정원 3명 이내



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하였다.

#### 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학제변경으로 인한 정원감축 여부

현 체제에서는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로 변경할 때 “현 입학정원×(기존학제/변경된 학제)”의 적용을 받아 현 입학정원이 60명인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기존 3년제에서 4년제로 학제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 입학정원은 45명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수도권에서 조차 입시경쟁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신규교사의 약 50% 이상이 전문대졸 교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수도권 내 보육교사를 양성하던 4년제 아동관련학과에서도 동일한 영유아교사자격을 배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요인도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라.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양성기관평가 시 타 대학과의 지표 통일 vs. 초중등 교사를 준용해 양성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제5호는 방송대학, 통시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유아교육과로 교원양성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사이버대학교는 아동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보육교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제1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관련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보육교사 이수해야할 교과목과 대면교과목 9과목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출석수업과 1회 이상 출석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대면출석수업 소속지역대학에 출석하여 강의를 듣고 지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수업은 교과목당 3시간(유아교육과 전공 8시간)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사양성방안에서는 4년제와 함께 대면교육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교사 외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원격교육을 통해 양성된 바가 없으므로,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인 방송통신대학교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사이버대학교에 신규교원양성인원 승인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5주기 전문대학 평가지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수업운영의 적절성과 전임교원확보율의 기준 인원이 타 대학(25명 기준)과 다르게 300명을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마.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영유아교원관련 학과(전공)에 대한 포함 문제

현재 유치원교사양성기관평가는 5주기를 거치면서, 승인인원 조정과 함께 양성기관의 질 제고라는 성과도 함께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아동관련학과 중 10%의 교직과목을 운영해 유치원교사를 양성했던 대학 역시 5주기까지의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관련학과 중 보육교사만을 양성했거나, 2년제 유아교육과를 운영하며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원양성기관평가는 받고 유치원교사를 양성해온 일부 대학의 경우 신규 양성기관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학과로 규정하였을 때, 현재 학부제로 운영되며 그 안에서 영유아보육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승인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바. 신규 영유아교원 승인 학과를 위한 사전 인정 및 컨설팅 지원

현재, 기존 5주기 영유아교사 양성기관평가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5주기 평가 여부와 대면 여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6주기 지표를 기준으로 질 높은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여 사전 평가인정(가/부)을 한 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6주기 평가의 경우 신설, 또는 전환인 경우 평가를 유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승인 후 3년간의 시행을 통해 영유

아보육학과에 맞게 정비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영유아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5주기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업적정인원에 대한 기준이 타대학과 다른 비대면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교원양성기관을 위한 교육과정(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이 개정 중이므로, 기존 5주기 평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대학이라도 신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뒤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I-3-2〉 대학 유형별 사전인정 방식에 대한 전문가 제안

현 행	5주기 평가여부	사전 인정
유아교육과(사범대,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3년제)	평가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교직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 교수역량제고를 위한 노력 보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4년제, 비대면)	평가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수업운영 적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 보완
아동관련학과-영유아보육과(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10% 운영	평가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및 전임교원 전공일치도 제고 노력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지도 노력에 대한 개선 노력(복수전공, 부전공 학생 포함) (※ 지역 교원수급 분석 여건 및 학교여건에 맞게 사전승인 인원 신청 후 승인 인원 결정)
아동관련학과-보육교사만 양성 (2-4년제, 대면)	-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6주기 평가지표에 맞게 체질 개선 계획 수립 (※ 지역 교원수급 분석 여건 및 학교여건에 맞게 사전승인 인원 신청 후 승인 인원 결정)
신규신청학과-보육교사 과목 일부 운영 (4년제, 대면)	-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6주기 평가지표에 맞게 체질 개선 계획 수립 (※ 지역 교원수급 분석 여건 및 학교여건에 맞게 사전승인 인원 신청 후 승인 인원 결정) 또는 대상 불포함
사이버대 아동학과 (4년제, 비대면)	-	신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보완 6주기 평가지표에 맞게 체질 개선 계획 수립 (※ 지역 교원수급 분석 여건 및 학교여건에 맞게 사전승인 인원 신청 후 승인 인원 결정) 또는 대상 불포함

#### 4. 영유아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2024년은 6주기 평가 역량진단의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는 시기이며, 이와 동시에 신규 영유아교사의 대면 및 학과제 중심 개편의 일정이 발표되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유아교사 양성 대학의 혼란과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개선안 제안 시 고려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 역량진단 결과의 확정 일정보다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입학정원 확정 일정이 앞서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6주기 평가 일정과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의 일정을 고려한 업무 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사범대학 소속 유아교육과 등이 포함된 6주기 평가의 결과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당초 역량진단 평가 결과 C~E 등급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인원이 감축되지만, 전국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수급을 고려한다면, 6주기 평가결과에 따른 인원 감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표 VI-4-1〉 6주기 평가 일정 및 학과승인 일정

일정	6주기 평가 일정	학과승인 일정
2024	8~9 6주기 평가 역량진단 대상 확인 (8월) 및 확정(9월)	
	11	교육부 위탁 정책연구종료: 영유아 학과 개선방안, 영유아 학과교육과정 개선 방안 외
	12 역량진단지표 입력 및 제출 (~2025. 2.)	양성기관 온라인 설명회 최종실행안 포함
2025	1~2	학과 승인 방법 확정 *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대상 전환, 통합, 증원 논의
	3	각 대학 전환 승인 과정
	3~5	각 대학 관련 학칙 개정 완료(교무처) 학칙개정(2개월 소요)
	8	각 대학 입학정원 확정

일정	6주기 평가 일정	학과승인 일정	
2026	12	<b>역량진단 결과 확정</b> *유아교육(학)과, 일반대학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	
	12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역량진단지표 입력 및 제출	
	5		
	3		각 대학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입학정원 고시 영유아교육(학)과 편입생 숫자 확인 및 편입학 과정 진행
	12 (예정)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역량진단 결과 확정	
2027	3		각 대학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신입학 /특별편입과정 3학년 편입

주: 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6주기 평가일정과 2027년 신입생 입학에 위한 대학측의 준비일정을 역산한 연구진들이 검토한 내용임.

둘째, 영유아교사의 수급을 고려할 때, 6주기 평가 대상과 신규 영유아교육(학)과 진입학과의 정원인정을 현 10% 비율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관련학과에서 일반대 교직과정으로 평가 받는 학과는 정원의 10%에 해당된다. 2023년 기준 유치원교사(방통대제외) 총 6,437명, 어린이집교사(원격 및 유아교육과 배출 제외) 총 3,367명, 총 9,804명이 배출된 것으로 보이며, 시범 교사대아동비율로 신규 교사 수요 규모를 예측하면 최소 3,922명의 교사가 필요함이 추정된다(본 보고서의 5장 결과에 따름). 즉, 현재 유아교육(학)과 외 아동관련 학과에 부여하는 정원의 10% 수준으로는 신규교사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당초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로 변경정원이 산출되지만, 신규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당초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셋째, 6주기 평가지표 적용 시 영유아교육(학)과 신규 교육과정 및 교직이론의 변경으로 인해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 신설에 따른 교직이론 교과목 구성방안(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에서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6주기 평가 지표 중 교직과 관련된 지표는 ‘II. 교원 - 2.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에 해당된다.

〈표 VI-4-2〉 6주기 평가지표 중 교직원관련 지표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교직이론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전임교원: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사 양성학과, 보건교사 양성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통합하여 전체단위로 작성 1~300명~2명, 301~600명~3명 확보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디지털 교육)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교직이론과목 교수자의 전공이 실제 담당한 과목과 일치하는 수업 비율	교육학 전공자-교과교육, 유아교육, 비교과 전공 인정하지 않음 학문분야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강의시점 기준 최근 3년간 교수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된 논문 200% 이상 연구실적물

이상의 내용은 교직이론과목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가 있어서, 해당 분야 교육학 전공자를 학과내 또는 학교에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직과목에 대해 영유아교사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었으며, 최근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구소(2024)는 교직 중 기타이론과목으로서 전공 부합 교과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6주기 평가지표에서 교직과목과 교직과목 전공자의 전공 일치도 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가늠할 수는 없으나, 교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직과목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VI-4-3〉 영유아교원을 위한 교직이론 과목 제안

구분	하위범주	과목명
영유아교사 교육 관 및 전문성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전문성	영유아교사의 교직 윤리 영유아교사의 리더십
	영유아교사의 복지와 권익	영유아교사의 웰빙과 역량 강화 영유아교사를 위한 교육법과 정책
교육공동체의 소 통 및 협력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유초연계 교육과정의 이해와 전이 지원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구분	하위범주	과목명
	영유아교사의 교육 현장성 제고	영유아를 위한 정서적 지원의 실제
		영유아 교실 및 기관 운영과 행정의 실제
영유아교육의 사회적 동향: 미래 사회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미래사회와 글로벌교육의 동향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속가능성과 영유아 환경교육
		세계 영유아교육의 동향 이해
	문화적 다양성 이해 제고	영유아교육 내 다양성: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적용
교육 연구와 현장 연계	교육연구기반 현장실천의 이해	영유아교육과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현장과 현장: 이해와 실제
		영유아교육평가 및 데이터 기반 분석
영유아교육의 본질 및 철학	표용적 교육과 영유아의 이해	영유아 다양성의 이해와 포용적 교육
		영유아 뇌 발달의 이해
	영유아교육의 본질적 가치 탐색	민주시민으로서의 유아와 교사 교육과 돌봄, 놀이와 배움의 의미 탐색

주: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2024) pp. 158-159

넷째, 대면중심 영유아교육(학)과와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평가지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6주기 지표에서 전공과목은 25명, 교직과목은 30명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5주기 지표의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300명 기준으로 산정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은 대면 및 학과제라는 기초에 따라 양성학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산정기준 인원에 대해 통일성있게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표 VI-4-4〉 6주기 평가지표 중 산정기준 학생 수

지표 범주	산정 기준 인원
II. 교원 중 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기준(B): 학생 25명당 전임교원 1인으로 산정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III. 교육과정 중 2. 수업운영의 적절성: 수업규모의 적절성 기준	- 전공과목: 25명 이하 - 교직과목: 30명 이하

이상의 사안들을 고려해, 영유아교육(학)과 사전승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영유아교육(학)과 대상

<p>[유형 1] 5주기 평가 실시 학과: 사범대 유아교육학과, 일반대 유아교육학과 [교육과정 변경] 일반대 교직과정 운영 아동관련학과 [양성교원 비율 상향]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3→4년제 전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운영의 적절성 충족 도전]</p> <p>[유형 2] 신규 진입 신청 학과: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 아동관련학과 중 학과통합 및 전환을 통해 영유아교사 양성을 희망하는 학과</p>
--

### 나. 영유아교육(학)과 사전승인 기준

<p>[유형 1] 6주기 평가 실시 후, 결과 등급(A~E)은 부여받으나, C~E 등급에 대한 감원 조치 대상 제외 (교육부 담당자간 협의), 유형 2에 한해 사전승인 절차 진행</p> <p>[유형 2] 유형 1과 유형 2 모두, 영유아교육학과(유아교육과 포함) 전체 통합의 과정 중이므로, 6주 기 평가대상에서 일괄 제외. 단, 6주기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전승인 기준 제시</p>
---

단, 사전승인 신청 시, 영유아교육학과로 전면 개편한 학과에 대해서는 현 정원의 100% 기준 제출이 가능하며, 한 대학의 두 개 이상의 학과가 영유아교육학과 및 영유아교육전공 운영할 경우 한 학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 학과 내에 영유아교육전공을 운영하는 경우는 대학의 정원의 50% 이내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며, 역량진단지표에 따른 '1. 서류 심사 및 2. 현장실사단 방문 평가'를 통해 최종 승인 정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다. 영유아교육(학)과 사전승인 절차

- 2024. 9~10 교육부 교원양성과와 협의
- 2024. 11. 양성기관 설명회 및 사전승인 방식, 지표, 방식, 규모 발표(교육부)
- 2025. 2. 사전 승인용 역량진단지표 입력 및 제출(~2025. 2.) - KEDI 시스템 활용
- 2025. 3~5. 현장실사단 방문 평가
- 2025. 8. 사전승인 결과 발표 및 컨설팅단 파견(C~E 등급)



라. 영유아교육(학)과 사전승인 지표

- 모든 신청 대상에 동일기준 지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목적과 영유아교사양성의 취지는 교원의 질 제고이므로,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6주기 교원양성 평가지표를 사전승인 지표로 활용함은, 현재 6주기 평가지표 기준 평가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 대학들의 혼선은 막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대학에는 영유아교육(학)과에서 추구하는 교원양성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표 VI-4-5〉 6주기 교원양성 지표 중 사전승인 지표

진단 준거	지표	사전 승인 준거	지표	특성	내용
I. 기본	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I. 기본	1. 발전 계획	정성	1)수립 과정, 2) 내용, 3) 추진 실적 ※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비전, 목표, 교사상,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발전계 획간 연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추진과제 및 방법 설정, 추진을 위한 내외부 협력체제 확립 등(p.18-19 참조)
	2. 발전계획				
II. 교원	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II, 교원	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승인인원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 계획 포함(3년 이내), 학생 25명 당 전임교원 1명 산정.
	2.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3.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승인인원에 따른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 계획 포함. (교직부 공동운영 계획 가능), 300명 이하 2명	
	4.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5. 교과교육교육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 기준 3년, 200% 전임교원 현장연구실적 및 최소기준 충족, 3년 50%(P/F)	
	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7. 교수자 역량개발 지원의 충실성		정성	대학 및 교원양성기관 차원에서 학교현장 이해 제고, 강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교수자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운영 실적 또는 계획 수립 내용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III. 교육과정	1.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정성	영유아교사양성 교과목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편성 내용 ※미래소양, 거버넌스, 적인성, 현장성 강화 등 포함
	2. 수업 운영의 적절성		
	3.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IV. 실습형 교육 및 학생 지도	1. 교육실습체계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교육실습체제 운영 계획의 체계성, 운영 실적의 충실성 및 우수성, 교육실습체제 개선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정성	학생지도체제의 적절성 및 운영 실적의 우수성
	3.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개선 계획		
V. 적·인성	1. 교직 적격자 검증을 위한 노력	정성	교직적격자 선발의 적절성 적·인성 검증을 위한 교원양성기관 차원의 검증 체계 구축
	2. 성인지 교육 계획 및 운영 실적	정성	성인지 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서, 성인지 교육 운영 실적의 우수성
VI. 교육환경	1. 교육비 환원율	정량	등록금 대비 총교육비 투자 비율
	2. 행정지원의 충실성	정량	교직담당직원확보율, 교직담당전임·정규직원 확보 여부
	3. 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절성	정성	모의수업환경, 디지털수업환경, 실습수업환경, 토의토론수업 환경,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 환경 등 시설 확보 현황 및 활용 현황
	4. 장애 학생 선발 충족률 및 지원 노력		
VII. 교육성과	1. 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	정량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 만족도
	2.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3. 재학생 만족도		

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일반대학용).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동연구진 회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함.

# VII

---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

---

01 전문대 영유아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 특례 조항 신설

02 학사학위 운영 및 (가칭)영유아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 VII.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

### 1. 전문대 영유아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 특례 조항 신설

#### 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전문대 영유아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 신설

##### 1) (가칭)영유아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영유아 교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학과 개편 방향은 영유아 교사 양성은 학사 학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육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 영유아교원 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가칭)영유아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50조의5(영유아교원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5 신설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가칭)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영유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교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표 VII-1-1〉 고등교육법상 (가칭)영유아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현 행(고등교육법)	개 정 안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3.)	

현행(고등교육법)	개정안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 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 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 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 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 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 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 50조의 5 신설 제50조의5(영유아교원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 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칭)「영유아교 육법」 제0조제0항에 따른 영유아교원을 양성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 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 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 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교원자격 관련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

유치원 정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유아교육과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아동 또는 보육관련 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명칭을 단일화한다.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사범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범대학은 없으나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던 대학에서는 ‘교원양성대학 역량진단’을 통해 양성 가능 정원을 승인한다. 이때에는 ‘영유아교육전공’으로 운영한다.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아동보육관련 학과에서는 교직과정 운영 계획 수립 후 ‘영유아교육학과’ 또는 ‘영유아교육전공’을 운영한다.

기존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의 교원 자격 규정은 (가칭)영유아교육법의 교원 자격 규정으로 다음 표와 같이 개정된다.

유아교육법 제26조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은 「교원자격검정령」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도 「유아교육법」은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개정된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준교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서는 폐지한다.

〈표 Ⅶ-1-2〉 교원자격 관련 유아교육법 규정

현행(유아교육법)	개정안(가칭)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0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교원의 자격) 법 제00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4·제22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4·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2. 11. 6., 2021. 6. 23., 2024. 1. 23.>	교원자격검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4·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별표 2] <개정 2013.3.23.> <b>정교사(2급)</b>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가칭)「영유아교육법」 [별표 0] <b>정교사(2급)</b> 1. 대학에 설치하는 (가칭)영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영유아교육전공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가칭)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을

현행(유아교육법)	개정안(가칭)영유아교육법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b>준교사</b>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무시험검정에 관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도 (가칭)「영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개정된다.

〈표 VII-1-3〉 무시험검정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규정

현행	개정안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1. 10. 25.>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칭)「영유아교육법」 별표 0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2.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제0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가칭)「영유아교육법」 별표 0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1. 10. 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가칭)「영유아교육법」 별표 0·별표 00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제0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현행	개정안
11. 6., 2013. 3. 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에서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이수학점 기준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수학점 기준은 유치원 교사 뿐 아니라 초중등 교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통합되고, 영유아교원 양성과정이 (가칭)영유아교육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이수학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으로 규정될 것이다.

〈표 VII-1-4〉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1. 이수학점 기준	
구분	이수학점
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

1. 이수학점 기준	
구분	이수학점
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라.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36학점 이상
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과목 18학점 이상
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란 가목, 바목 및 사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li> <li>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li> <li>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li> <li>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li> </ol> </li> <li>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li> <li>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li> </ol> </li> <li>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li> <li>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li> </ol> </li> <li>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다만, 제1호사목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li> <li>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li> </ol>	

〈표 Ⅶ-1-5〉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9., 2006. 4. 1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칭)「영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은 유치원 정교사(2급)의 전공과목은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으로 규정하고,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으로 규정한다.

〈표 Ⅶ-1-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현행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개정안	(가칭) 영유아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교육부 고시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제2항은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 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4조제3항은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역시 (가칭)영유아교육법 및 (가칭)영유아학교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표 VII-1-7〉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가칭)영유아학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제0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칭)영유아학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② (가칭)영유아학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VII.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p>	<p>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p>
<p>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p> <p>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p> <p>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p> <p>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p> <p>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p> <p>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p> <p>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p> <p>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p> <p>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가칭)영유아학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p>
<p>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p> <p>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p> <p>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p> <p>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p>	<p>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p> <p>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조에 따른 (가칭)영유아학교</p> <p>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p> <p>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p> <p>1.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조에 따른 (가칭)영유아학교</p>
<p>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p> <p>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p>	<p>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p> <p>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중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가칭)영유아학교 교사, 특수학교(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p> <p>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p> <p>②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p>	<p>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p> <p>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p> <p>②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가칭)영유아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p>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에서는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영유아 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될 것이다. 해당 별표 역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표 VII-1-8〉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현행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 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 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 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아동권리와 복지, 유아건강 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 안전교육
개정안	(가칭)영유아학 교 정교사(2급)	(가칭)영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가칭)영유아 교육법 제정에 따라 영유아 교원 양성 및 자격 취득 방식이 정해지면 보육교사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규정도 이에 통합될 것이다.

〈표 VII-1-9〉 보육교사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규정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gt;</li> <li>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lt;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3. 12. 26.&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li> <li>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li> <li>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ol> </li> <li>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li>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1. 8. 4., 2023. 12. 26.&gt;</li> </ol>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gt;</li> <li>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lt;신설 2011. 6. 7., 2023. 12. 26.&gt;</li> <li>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lt;신설 2011. 6. 7., 2011. 8. 4., 2023. 12. 26.&gt;</li> <li>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gt;</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p>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1. 12. 8.&gt;</p>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li> <li>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lt;개정 2016. 1. 12.&gt;</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lt;개정 2010. 7. 9., 2021. 3. 30.&gt;</li> <li>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li> <li>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li> <li>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li> </ul> </li> <li>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9. 1.&gt;</li> <li>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li> </ul>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2016. 1. 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p>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12. 8., 2015. 1.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li> <li>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을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칭)영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영유아교원 양성 및 자격 취득 방식이 정해지면 보육교사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정도 이에 통합될 것이다.

<표 VII-1-1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p>가. 일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li> <li>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li> </ol>

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p>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p> <p>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p>
보육교사 2급	<p>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p> <p>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p>
보육교사 3급	<p>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p>

###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무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에서는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되고, 영유아교사 자격이 일원화되면 교원자격 검정령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것이다.

〈표 Ⅶ-1-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 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적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면 교과목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적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시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시한 시간을 인정한다.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학사학위 운영 및 (가칭)영유아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 가. 방향

학사학위 운영 및 (가칭)영유아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는 전환 유예 기간 동안 보육과목을 운영 중인 전문대·4년제 대학기 영유아 통합 양성 기관으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보육과목을 운영 중인 대학이 자격 전환 유예 기간 동안 영유아 통합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방법으로 학점교류와 심화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 나. 운영 방법

#### 1) 학점교류

학점교류는 교직과목 운영을 할 수 없는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직과목을 운영하는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교직과목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직과목을 운영할 수 없는 전문대와 교직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이 상호 학점 교류를 체결하고, 전문대 아동학과 학생들이 학점 교류를 체결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 후 해당 전문대에서 자격을 발급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은 학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학점교류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표 Ⅶ-2-1〉 학점교류 관련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내용
고등교육법 제22조 (수업 등)	<p>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p> <p>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0. 10. 20.〉</p> <p>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10. 20.〉</p>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p>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li> <li>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li> <li>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li> <li>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li> <li>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li> <li>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p>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p>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20.〉</p> <p>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 2. 20.〉</p>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p>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10. 25., 2018. 5.</p>

규정	내용
범위 및 기준 등)	<p>28., 2022. 2. 28., 2024. 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li> <li>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li> <li>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li> </ol> </li> <li>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li> <li>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lt;개정 2024. 2. 20.&gt;</li> <li>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lt;개정 2018. 5. 28., 2022. 2. 28., 2024. 2. 20.&gt;</li> </ol> </li> </ol>

## 2) 심화과정

심화과정은 전환 유예 기간 동안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재학생이 학사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제 과정으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전환 유예 기간 동안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제49조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은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4항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표 Ⅶ-2-2〉 심화과정 관련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내용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li> <li>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li> <li>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경력에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lt;신설 2011. 5. 19., 2021. 3. 23.&gt;</li> <li>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1. 5. 19., 2013. 3. 23.&gt;</li> <li>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신설 2011. 5. 19., 2013. 3. 23.&gt;</li> <li>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 5. 19.&gt;</li> </ol>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2023. 4. 18., 2024. 2. 20.&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설 학과등 및 형태</li> <li>2. 수업연한</li> <li>3. 모집인원</li> <li>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li> <li>5. 교육과정 운영계획</li> <li>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li> <li>7. 그 밖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gt;</li> <li>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24. 2. 20.&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li> <li>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li> </ol>

규정	내용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4. 2.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 4. 18., 2024. 2. 20.>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8., 2024. 2. 20.>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등: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등: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관련)은 설치 기준, 항목 및 확보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VII-2-3>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관련)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원확보율(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2.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학점교류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환 유예 기간 후에도 심화과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전환 유예 기간(10년 내외) 동안만을 교직 과목 운영 준비 기간(10년 후에는 교원양성기관 평가 후 승인)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 후에도 학점교류·공동학위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대학(전문대 포함)들 중에는 교직과목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고 전환 유예 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러한 대학들이 교직과목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전환 유예 기간이 경과해도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교류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은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등은 2년 이상,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등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은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총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고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전환 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3. 8. 30). 2013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광주보건대 간호학과 등 A등급, 2015학년도 교원양성정원 1,220명 감축 예정.
- 교육부(2016. 3. 23).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 교원양성 정원 3,220명 감축 예정.
- 교육부(2021. 12).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교육부.
- 교육부(202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부(2023. 4. 3). 미래교육수요를 반영한 증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 교육부(2024a).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선발 및 발령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2024b). 어린이집 신규교사 선발 및 발령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2024c). 유아교육과 정원. 내부자료
- 교육부(2024. 3). 2024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사범대학/교직과정/교육(전문)대학원/실기교사 양성과정)
- 교육부 내부자료(2022, 2023).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내부자료(2024, 2025, 2026)
- 교육부 보도자료(2017. 1. 24).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4주기 2차)
- 교육부 보도자료(2018. 3. 21).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우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기관 역량 강화 -
-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22).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교원양성기관 자율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양성 정원 감축 등에 기여.
- 교육부 보도자료(2024. 06. 27.).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4. 08. 20). 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5주기 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추진 계

- 획 및 운영방안(보완).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일반대학용).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욱(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27.
- 김보림(2015).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비교 연구: 교직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4, 391-415.
- 김은설, 문무경, 구자연, 권정윤, 이미정, 박소영, 김수현(202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영, 윤진주(2021). 그림책 중심의 비교과 교육과정 적용 이후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그림책에 대한 생각의 변화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10(2), 119-137.
- 나이스. 교원양성정원: 년도별 기준.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3). 202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 박소영·정제영(2021). 한국과 미국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31(4), 61-90.
- 박진아·도남희·조혜주(2015).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4). 사립유치원 연도별 신규가입자 및 퇴직자 수 현황. 내부자료
- 손승희, 손혜숙, 이승하, 김대욱, 신나리, 황성원, 이병래, 정효정, 임혜성, 조운주 (2023).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아이행복연구자문단, 육아정책연구소.

- 송태민, 서문희, 박지혜, 최진원(200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준 연구. 서울: 여성부.
- 신현석·김상철·장아름(2020). 한국의 대학평가. 학지사.
- 신혜원(2024). “교사양성과정이 왜 대면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유보통합 정책 공동포럼: 유아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대 쟁점. 발제문.
- 윤충식·정승렬(2022).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한 초등돌봄 수요예측 사례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3(6), 87-96.
- 이영학(2010). 한국과 일본의 기관평가인증제 비교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1), 1-21.
- 이재희, 양미선, 윤소정, 김종근, 구형모(2023).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II):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환(2018). 성별, 학년, 교수경험에 따른 예비과학교사의 교직인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785-797.
- 정기승인시스템. 교원양성정원 : 학년도별 기준.
- 정영근(2013).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양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한국 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63차 학술대회 자료집, 203-228.
-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2022.
-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2022,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5, 2026)
- 허은정, 김현수(2019). 4주기와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 46(2), 5-33.
- 허주, 이동엽, 이승호, 안소영, 김규태, 이석열 외(2019).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참고 사이트】**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홈페이지, <https://necte.kedi.re.kr/history.do#> (2024. 9. 1.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4. 7. 1. 인출)
-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main.do>). 내부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교육통계연보 유치원현황 직위별 교원수(2024. 7. 1. 인출).

### 【신문기사】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3.07.28).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 추진…유보통합, 3단계로 구분해 진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298#policyNews> (2024. 08. 01. 인출)

연합뉴스(2023.07.28.). “당정, 유보통합 위해 복지부→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8026900001> (2024. 08. 01. 인출)

한국교육신문(2023.12.10).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0615> (2024. 08. 01. 인출)

### 【참고법령】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7. 9.] [대통령령 제34669호, 2024. 7. 9., 일부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4. 1. 23.] [교육부령 제319호, 2024. 1. 23.,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670호, 2024. 7. 9.,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17. 3. 1.]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2016. 12. 23.,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4. 8. 1.]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 부록

### 부록 1.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개편 관련 설문 조사 문항

#### 유보통합 대응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관련 학과의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모두 연구진의 의견이며 확정된 시안이 전혀 아님을 밝힙니다. 이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 해당하는 것에 V표 해주십시오.

선문1. 대학 유형

① \_\_\_\_\_ 4년제 대학

② \_\_\_\_\_ 전문대학

선문2. 지역

\_\_\_\_\_ 시 도      대학명: \_\_\_\_\_ 대학교

선문3. 설립유형

\_\_\_\_\_국립대      \_\_\_\_\_사립대

선문4. 응답자

- 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 ② 유아교육학과 전임교수(학과장 아님)
- ③ 보육교사 양성 학과 학과장
- ④ 보육교사 양성 학과 전임교수(학과장 아님)
- ⑤ 대학 본부 보직자 또는 경영자(앞의 ①~④와 중복일 경우 ⑤가 우선)
- ⑥ 기타 교직원

선문5. 응답자 정보(경력)

- ① 해당 학과 근무 10년 미만
- ② 해당 학과 근무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③ 해당 학과 근무 20년 이상

<질문>

0. (선문 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유보통합 이후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학위자로 조건을 상향 조정한다면, 귀 대학에서는 교사 양성을 위해 해당 학과(또는 전공)를 4년제 학위 취득과정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 ① 전환할 것임      ② 전환하지 않을 것임      ③ 아직 알 수 없음

1. 2024년 현재 다음 중 귀 대학교에 대해 가장 적합한 설명은 어느 것입니까?

- ① 보육 관련 학과에서 보육교사만 양성(1-1)
- ② 유아교육(학)과에서 유치원교사 양성(1-2)
- ③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양성 학과 각각 모두 있음(1-3)

1-1.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또는 전공, 학부의 명칭은 무엇이고 자격 취득 대상 정원은 몇 명입니까?

\_\_\_\_\_학과/ 전공/ 학부      \_\_\_\_\_명  
 \_\_\_\_\_학과/ 전공/ 학부      \_\_\_\_\_명

1-2.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유아교육(학)과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1-3.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 또는 전공, 학부의 명칭은 무엇이고 자격 취득 대상(정원)은 몇 명입니까?

- 1) 보육교사 \_\_\_\_\_학과/ 전공/ 학부 정원\_\_\_\_\_명  
 \_\_\_\_\_학과/ 전공/ 학부 정원\_\_\_\_\_명
- 2) 유치원교사 유아교육학과 \_\_\_\_\_명  
 유아교육과 이외 학과에서 교직이수 \_\_\_\_\_명  
 교육대학원 유치원교사 자격 취득 \_\_\_\_\_명

2. (1번 문항의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귀 대학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2개 이상의 학과가 있는 학교는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범대학 소속 유아교육과
- ② 일반(비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 ③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교 내 비유아교육학과(교직이수과정)
- ④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교 내 비유아교육학과(교직이수과정)
- ⑤ 기타( \_\_\_\_\_ )

2-1. (2번 문항의 ②, ④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교직 과목은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학과 내 교직(교육학) 담당 전임 교수가 있음.
- ② 대학교 내 교육학과 또는 교직과가 설치되어 있음.
- ③ 교직 과목을 위한 겸임교수 또는 외부 강사를 학과 내에서 채용하고 있음.
- ④ 학교 단위에서 채용한 교직 과목 담당 겸임교수/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음.
- ⑤ 학점 교류를 통해 타 대학의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⑥ 기타 ( \_\_\_\_\_ )

3. (1번 문항에서 ① 응답 경우) 만일 유보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보통합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교사의 양성기관을 (가칭)영유아교육과로 변경하게 된다면, 귀 학교에서는 현재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하시겠습니까?

- ① 예(3-2)      ② 아니오(3-1)      ③ 모름

3-1. (가칭)영유아교육과로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비양성 일반 학과로 운영할 것임.
- ②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일부 인원을 통합교사로 양성할 것임 (예: 일반대학 교직이수)
- ③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타 학과와 통합하여 새로운 학과로 운영할 것임.
- ④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폐과할 것임.
- ⑤ 기타: \_\_\_\_\_

3-2. 기존 보육교사 양성학과를 신규로 유보통합영유아교원 양성을 위한 학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교원양성 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과정에 교직과목 설치가 요구된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 ① 교직 담당 교수 신규 채용
- ② (학교 내) 기존 교육학, 교직과, 사범대 등 관련 전공 교수진 활용
- ③ 외부 타 학교와의 학점교류를 통한 교직 이수 추진
- ④ 기타: \_\_\_\_\_

4. (1번 문항의 ③에 응답한 경우) 만일 유보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교사의 양성기관을 (가칭)영유아교육과로 변경하게 된다면, 귀 학교에서는 현재 보육교사 양성 학과와 유치원교사 양성학과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하시겠습니까?

- ① 예(4-2)    ② 아니오(4-1)    ③ 모름

4-1. (가칭)영유아교육과로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비양성 일반 학과로 운영할 것임.
- ②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일부 인원을 통합교사로 양성할 것임 (예: 일반대학 교직이수)
- ③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타 학과와 통합하여 새로운 학과로 운영할 것임.
- ④ (보육교사 양성) 학과를 폐과할 것임.
- ⑤ 기타: \_\_\_\_\_

4-2. 만일 귀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와 보육교사 양성학과를 유보통합교사 양성학과로 통합한다면, 정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 ① 통합 전 두 학과 정원 그대로 합친 수를 정원으로 유지함.
- ② 통합 전 두 학과 정원의 합계보다 증원될 것임.
- ③ 통합 전 두 학과 정원의 합계보다 감원될 것임.

5. 유보통합 이후 통합 기관에서 근무할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명칭으로는 “영유아교육학과(또는 영유아교육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대안적 명칭 제안: \_\_\_\_\_ )

6. 유보통합 이후 통합 자격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서 자유전공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7. 유보통합에 대응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의 개편 방안 전반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영유아 교사 양성 기관 현황(2024년 기준)

〈부표 1〉 유치원 교사 양성 전문대학

연번	학교명	정원	연번	학교명	정원
1	가톨릭상지대	25	41	서영대	66
2	강동대	40	42	서일대	64
3	강릉영동대	25	43	서정대	73
4	거제대(2)	30	44	선린대	24
5	경남정보대	50	45	송곡대	21
6	경민대	32	46	수성대	100
7	경북대	128	47	수원여자대	64
8	경북과학대	37	48	순천제일대	56
9	경북도립대	28	49	송의여자대	150
10	경북전문대	23	50	신구대	128
11	경인여자대	128	51	신성대	40
12	계명문화대	120	52	안산대	58
13	광양보건대(2)	20	53	연성대	108
14	광주보건대	41	54	영진전문대	80
15	구미대	60	55	오산대	64
16	국제대	40	56	용인예술과학대	50
17	김포대	32	57	우송정보대학	56
18	김해대	20	58	울산과학대	47
19	대구공업대	25	59	원광보건대	50
20	대구과학대	120	60	인천재능대	64
21	대구보건대	50	61	장안대	70
22	대덕대	44	62	전북과학대	25
23	대림대	49	63	전주기전대학	60
24	대원대	35	64	전주비전대	40
25	대전과학기술대	45	65	제주관광대	40
26	대전보건대	44	66	제주한라대	70
27	동강대	30	67	춘해보건대	25
28	동남보건대	64	68	충청대	26
29	동아보건대(2)	20	69	포항대	25
30	동원과학기술대	25	70	한림성심대	64
31	동의과학대	40	71	한양여자대	67
32	두원공과대	21	72	혜전대	35
33	명지전문대학	74			
34	배화여자대	64		72개 대학	3,794명
35	백석문화대	50			
36	부산경상대	40			
37	부산과학기술대	25			
38	부산보건대	35			
39	부산여자대	25			
40	부천대	80			



〈부표 2〉 유치원 교사 양성 4년제 대학

연번	학교명	정원	연번	학교명	정원	연번	학교명	정원
1	강릉원주대	60	31	덕성여대	37	61	제주국제대	20
2	강원대	14	32	동국대	30	62	중부대	40
3	경상국립대	18	33	동명대	40	63	중앙대	30
4	공주대	32	34	동신대	40	64	창신대	40
5	부경대	14	35	동양대	30	65	총신대	44
6	부산대	18	36	동의대	20	66	침례신학	35
7	전남대	15	37	목원대	26	67	호남대	40
8	창원대	14	38	목포가톨릭	14	68	호서대	40
9	한국교통대	27	39	백석대	70	69	호원대	40
10	한국교원대	19	40	배재대	35			
11	한국방송대	1890	41	상지대	38	[교직과정]		
12	인천대	20	42	삼육대	35	70	경북대	2
13	가야대	17	43	서울신학대	30	71	충북대	2
14	가천대	60	44	서원대	32	72	가톨릭대	3
15	강남대	45	45	세한대	35	73	건양대	2
16	건국대	40	46	성결대	40	74	나사렛대	5
17	건양대	20	47	성신여대	25	75	남서울대	9
18	경기대	19	48	송원대	50	76	대구한의대	3
19	경남대	37	49	순천향대	40	77	동덕여대	3
20	경동대	100	50	신라대	30	78	동아대	4
21	경성대	30	51	신한대	64	79	명지대	2
22	계명대	20	52	안양대	35	80	백석대	6
23	고신대	20	53	영남대	30	81	서울여대	5
24	광신대	10	54	유원대	20	82	성균관대	3
25	광주대	56	55	우송대	42	83	숙명여대	4
26	광주여대	40	56	원광대	32	84	연세대	2
27	김천대	14	57	위덕대	28	85	우석대	4
28	남부대	30	58	을지대	20	86	한국성서대	3
29	대구가톨릭	22	59	이화여대	29	87	협성대	2
30	대구대	40	60	인제대	21	소계		4,208

〈부표 3〉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대학원

순	대학원명	2022 재교육과정	2022 양성과정
1	가천대 교육대학원	29	14
2	경기대 교육대학원	8	28
3	경남대 교육대학원	17	10
4	경성대 교육대학원	0	0
5	경희대 교육대학원	19	54
6	계명대 교육대학원	10	12
7	군산대 교육대학원	5	2
8	대구기톨릭 교육대학원	1	9
9	대구대 교육대학원	0	2
10	동국대 교육대학원	10	6
11	명지대 교육대학원	7	2
12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19	16
13	수원대 교육대학원	14	8
14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12	29
15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12	11
16	신라대 교육대학원	7	5
17	연세대 교육대학원	21	14
18	우석대 교육대학원	4	3
19	원광대 교육대학원	45	3
20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2	1
21	인제대 교육대학원	16	4
22	인천대 교육대학원	46	9
23	전남대 교육대학원	17	1
24	전북대 교육대학원	4	14
25	조선대 교육대학원	2	2
26	총신대 교육대학원	7	27
27	충북대 교육대학원	3	2
28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17	17
29	한양대 교육대학원	1	11
	합 계	375	316

〈부표 4〉 보육교사 양성 4년제 대학

연번	학교명	학과명	인원	연번	학교명	학과명	인원
1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	36	부산대	아동가족학과	5
2	가톨릭대	아동학과	40	37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12
3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5	38	서경대	아동학과	25
4	간양대	아동보육학과	40	39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87
5	경북대	아동학전공	28	40	서울여자대	아동학과	16
6	경상국립대	아동가족학과	20	41	서울여자대	아동학전공	47
7	경일대	상담심리학과	5	42	서울한영대	유아특수재활과	20
8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7	43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20
9	고신대	아동복지학과	28	44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33
10	광신대	사회복지상담과	7	45	숙명여자대	아동복지학과	17
11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10	46	순천대	소비자·가족아동학	5
12	광주대	아동학과	16	47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	12
13	광주여자대	사회복지학과	15	48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45
14	광주여자대	어린이영어교육학	9	49	우송대	아동복지학과	32
15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15	50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	51
16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5	51	원광대	가정아동복지학부	24
17	나사렛대	아동학과	48	52	을지대	아동학과	13
18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79	53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7
19	대구가톨릭대	아동학과	53	54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29
20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39	55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9
21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26	56	전북대	아동학과	9
22	대전대	아동교육상담	27	57	중부대	아동보육학전공	6
23	대진대	아동학과	45	58	중원대	아동보육학전공	8
24	덕성여자대	아동가족학	19	59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14
25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22	60	총신대	아동학과	17
26	동덕여자대	아동학과	33	61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12
27	동신대	아동영양보육	6	62	칼빈대	아동보육학과	8
28	동아대	아동학과	52	63	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	6
29	동의대	아동가정환경	20	64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11
30	명지대	아동학과	6	65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8
31	명지대	아동학전공	40	66	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학과	38
32	목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12	67	한국침례신학	기독교교육학과	8
33	목포대	아동학과	34	68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43
34	백석대	아동복지학과	14	69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9
35	백석대	아동복지학	12	70	한신대	심리상담·아동보육	17
				71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47
					66개 대학	71개 학과	
						1,613명	

〈부표 5〉 보육교사 양성 전문대학

연번	지역	학교명	모집단위	계
1	경기	경민대학교	아동심리보육과	40
2	경기	김포대학교	아동보육과	40
3	경기	동서울대학교	아동보육과	40
4	경기	동원대학교	아동복지상담과	40
5	경기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	60
6	경기	수원여자대학교	보육과	20
7	경기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35
8	경기	신안산대학교	아동보육과	35
9	경기	안산대학교	언어치료아동보육과	28
10	경기	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37
11	경기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36
12	경기	연성대학교	아동심리보육전공	25
13	경기	유한대학교	아동보육전공	25
14	경남	경남도립거창대학	사회복지보육학부	34
15	경남	마산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	30
16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보육복지계열	74
17	경북	영남외국어대학	보육복지상담과	40
18	광주	동강대학교	보육복지과	55
19	대구	수성대학교	미술심리보육과	30
20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40
21	부산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아동보육과	65
22	부산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아동보육과	35
23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25
24	서울	배화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66
25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40
26	서울	송의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75
27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78
28	인천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보육학과	30
29	전남	고구려대학교	아동노인복지과	83
30	전남	전남과학대학교	아동복지재활과	30
31	전북	군장대학교	아동심리상담과	20
32	전북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30
		32개 대학	모집정원	1,341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